

최종보고서

「수산양식산업육성법」 제정 및 친환경양식 연구

2012. 6.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산양식산업육성법 제정 및 친환경양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연구책임자 : 류 정 곤

연구진 : 강 종 호

임 경 희

정 명 화

한 덕 훈

이 승 진

김 현 아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3
제2장 양식산업 제도 및 법률 분석	36
제1절 양식업 제도	36
제2절 양식산업 관련법률 검토	47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61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66
제1절 국내사례	66
제2절 해외사례	71
제4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93
제1절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	93
제2절 양식산업의 범위 및 개념 설정	97
제3절 양식산업발전법(안)	102
제5장 친환경 양식 도입 방안	228

제1절 사례 분석	228
제2절 친환경양식 정책방향	233
제6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237
제1절 법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237
제2절 양식산업발전법안 비용추계	23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1
참고문헌 및 부록	253
참고문헌	253
부록 1. 미국의 양식관련법제도	259
부록 2. 노르웨이의 양식관련법제도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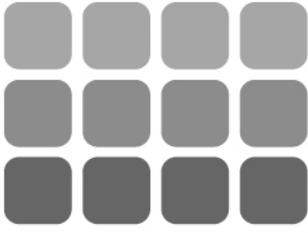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종류 및 처분권자	39
〈표 2-2〉 지역별 해수면 양식어업권 현황(2010년)	40
〈표 2-3〉 품종별 소유자별 해수면양식어업권 현황(2011년)	41
〈표 2-4〉 육상양식어업 허가 현황(2010년)	42
〈표 2-5〉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 현황(2010년)	43
〈표 2-6〉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 현황(2010년)	44
〈표 2-7〉 양식방법별 내수면양식어업 인허가 현황(2010년)	45
〈표 2-8〉 수산업법의 주요내용	48
〈표 2-9〉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별 내용	48
〈표 2-10〉 내수면어업법의 주요내용	55
〈표 2-11〉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별 내용	55
〈표 2-12〉 어장관리법의 주요내용	56
〈표 2-13〉 어장관리법의 조문별 내용	56
〈표 2-14〉 종자산업법의 주요내용	57
〈표 2-15〉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별 내용	57
〈표 2-16〉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58
〈표 2-17〉 원양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별 내용	59
〈표 2-18〉 양식시설 및 사료 관련법의 주요내용	60
〈표 2-19〉 자연재해 및 지원 관련법의 주요내용	61
〈표 2-20〉 질병, 품질, 위생 및 유통관련법의 주요내용	61
〈표 3-1〉 1차 산업의 산업법 개요	67

〈표 3-2〉 1차 산업의 진흥법 개요	68
〈표 3-3〉 1차 산업의 육성지원법 개요	70
〈표 3-4〉 일본의 양식어업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72
〈표 3-5〉 양식어업권의 정의(일본 어업법 제6조)	73
〈표 4-1〉 우리나라 어가 및 어가인구	94
〈표 4-2〉 우리나라 어가소득	94
〈표 4-3〉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	95
〈표 4-4〉 양식산업발전법	105
〈표 5-1〉 IFOAM의 유기 양식수산물의 가이드라인	229
〈표 5-2〉 EU 유기수산물 규칙의 주요 내용	230
〈표 5-3〉 친환경 수산물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	234
〈표 6-1〉 법안비용추계와 비용편익비용과의 비교	238
〈표 6-2〉 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2014~2018년)	245
〈표 6-3〉 제정안에 따른 국가지자체 재정소요(2014~2018년)	246
〈표 6-4〉 기초조사 비용 구성	246
〈표 6-5〉 기초조사 실시 재정소요(2014~2018년)	247
〈표 6-6〉 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248
〈표 6-7〉 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재정소요	248
〈표 6-8〉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의 업무 및 인력 분장	249
〈표 6-9〉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의 설치 재정 소요: 2014~2018년	250

그림 목 차

〈그림 2-1〉 우리나라 수산업의 종류 및 해수면양식어업	37
〈그림 2-2〉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종류 및 내수면양식어업	38
〈그림 2-3〉 우리나라 양식관련 법체계도	46
〈그림 4-1〉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추이	93



연 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2001년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제정·공포를 배경으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크게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이후 양식어업 생산량이 연근해 어업 생산을 넘어설 만큼 수산업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 그러나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양식어업은 어장의 육상오염원 유입과 자가 오염에 따른 환경 악화, 장기 연작에 따른 노후화, 어장의 환경수용능력 초과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빈도 증가 및 질병 확산이 순환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기에 이른 실정으로, 양식어업의 발전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우리나라는 양식어업과 관련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의 본격 시행과 관련해 제도·법률과의 괴리 문제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한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양식어업에 대해 우리나라도 양식어업의 신산업화에 본격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양식분야에 대한 육성·지원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정비함으로써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시점임
 - 동시에 양식어업이 직면해 있는 양식어장의 제문제(어장 노후화, 수산질병 발생 및 확산, 수산물의 위해 발생 빈도 증가 등)와 친환경 식품에 대한 소비 선호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화된 친환경적 양식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양식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 마련의 기
틀이 되는 법률·제도적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현을 위해 필수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친환경 양식의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가칭 「양식산업육성법」 제정과 친환경 양식 도입 방안 검토로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조성함
 - 양식산업육성법과 관련해 수산업법 등으로 다기에 걸쳐 있는 양식 관련
법률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는 수산
양식 환경의 변화와 법률·제도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양식어
업의 품종별 면허의 시설방법별 면허로의 개선 등)의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

제2장 양식산업 제도 및 법률 분석

제1절 양식업 제도

1. 수산업과 양식업

-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업법」에서 크게 어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인허가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산업의 명칭이 정해짐
- 「수산업법」 제2조제5호 기르는어업 정의에서 양식품종에 따른 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조 제7호에서는 양식에 대한 저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함
 -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일컫음
- 「수산업법」에서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동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바다, 바닷가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인허가 방법에 따라 면허어업과 신고어업의 범주에 양식어업이 포함됨
- 양식어업의 인허가 처분에 따른 구분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농림수산식품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됨
 - 해수면양식업의 경우 면허 중 외해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사항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권자임

- 반면 내수면양식업의 경우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다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처분권자임
- 해수면양식어업의 양식면허어업의 면허 건수는 2010년 기준 총 9,815건, 면적은 141,015ha임
 - 지역별로는 전남이 건수 및 면적면에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남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대부분의 해수면 양식어업이 이뤄지고 있음
 - 품종별로는 건수면에서는 패류가 58%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해조류가 28%를 점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해조류가 58%인 반면 패류는 35%를 점하고 있음
-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서 크게 수조식과 축제식으로 구분되고, 2010년 말 현재 1,329건에 1,416ha가 허가되었음
- 종묘생산어업은 육상과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해상종묘생산어업은 2010년말 현재 총 927건에 2,957ha가 허가되어 있고, 육상종묘생산어업은 2010년말 현재 1,357건에 341ha가 허가되어 있음
- 내수면양식어업권은 2005년 117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 28건에 불과하나, 대부분의 내수면양식어업은 신고어업으로 행해지고 있어 2010년 현재 총 2,373건임

2. 양식업 관련 법체계

- 우리나라 양식업 관련 법체계는 양식시설 및 사료, 생산, 자연재해 및 지원, 질병/품질/위생/유통으로 구분되고 약 17개 법률이 있음
- 양식생산에 관련된 법률은 양식업의 인허가 및 양식어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양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임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은 해수면과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의 인허가 및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어장관리법은 대부분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장관리에 관한 규제법이자 양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임

- 종자산업법은 식물종자에 대한 품종개발, 생산 및 유통과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
- 원양산업발전법에서는 해외에서의 양식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자연재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과 양식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률임
- 질병, 품질, 위생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양식수산물에 관한 위생 및 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임

제2절 양식산업 관련법률 검토

1. 양식생산 관련법

- 수산업법은 우리나라 수산법률의 종합법으로서 양식어업의 경우 동법에서 정의, 양식어업의 종류 및 인허가 등 관련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시 가장 많은 부분을 이관하여야 할 법률임
- 내수면어업법에서는 양식어업 중 내수면에서 행하는 양식에 대한 종류 및 인허가 사항을 취급하고 있으며, 양식산업발전법을 별도 제정할 경우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관되어야 할 법임
- 어장관리법에서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및 구획어장의 관리를 위한 규제사항과 어장정화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산업발전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양식어장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관되어야 할 법임
- 종자산업법은 식물종자에 대한 신품종 개발, 품종 등록, 종자생산 및 판매,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수산종자산업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식물종자 외에 어패류의 종묘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원양산업발전법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양식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양산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양식산업발전법 제정과는 큰 관련이 없으나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과 양식산업발전법이 별도법으로 존치되어야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2. 양식 전후방 관련산업

- 양식시설 및 사료에 관련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사료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임
 - 사료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들은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양식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더라도 이관이 곤란함
 - 다만 사료관리법은 양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관이 필요하나 현재의 양식사료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연재해 및 양식경영체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등 총 4개이며, 신용보증관련법만 금융지원에 관한 법임
 - 동 법률들은 양식산업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법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과는 큰 관련이 없음
- 수산물 질병, 품질, 위생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 있는데, 양식산업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닌 공통법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시 이관할 사항이 거의 없음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 양식업 관련 법률 분산에 따른 법운용 효율성 저하
- 수산생물의 양식생산에서 소비판매에 이르는 양식관련 모든 산업을 포함한 법률 부재

- 수산업 기본제도인 수산업법에서의 양식어업 취급 한계
- 양식어업 개념 정의 문제
- 양식업의 산업적·정책적 중요성 반영의 한계
- 수산생명산업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양식체제 미비

2. 개선방향

- 현행 양식업 관련 제도는 대단히 규제 중심적이고, 다수의 법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양식업의 도입, 자본과 기술의 진입 제약 등으로 인해 산업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식법 체계의 문제점과 양식산업의 산업적 정책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 양식관련 법체계의 통폐합
 -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양식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정책실효성 제고
 -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현행 양식면허 및 우선순위 제도 개선
 - 새로운 양식기법 도입 기반 조성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1) 산업법

- 1차 산업의 산업법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법, 석탄 산업법, 종자산업법, 인삼산업법 등이 있음
- 산업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 산업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산업법과 개별 단위산업에 대한 산업법이 있음
- 대부분의 1차 산업법은 개발과 육성, 보호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 이후 개별산업에 대한 법은 진흥법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2) 진흥법

- 1차 산업의 진흥법은 소금산업진흥법, 김치진흥법, 낙농진흥법, 식품산업 진흥법이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 1차 산업 진흥법의 특성은 기존에 상당 규모로 존재하던 산업이지만,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3) 육성지원 관련법

- 1차 산업에 관련된 육성지원 관련법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있음

- 1차 산업과 관련된 육성지원 관련법은 기존에 시장이 크지 않았지만, 환경 변화로 새로이 육성할 필요가 생긴 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육성과 함께 지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 대부분이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기술개발 등 기반조성, 세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곤충산업, 기능성 양잠산업, 낚시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법은 산업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침체된 산업에 대해 새로운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며, 이 또한 수출산업으로서의 육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산업을 둔 산업이 아닌 개별산업에 대한 법률은 산업법으로 출발하여, 점차 목적에 따라 진흥법과 육성지원법으로 나누어 제·개정되고 있음
- 양식산업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진흥하고, 이를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진흥법의 성격이 적절할 수도 있으나, 기존 양식 품종 이외에도 새로운 양식품종 및 기술의 개발과 육성도 포함되므로 육성지원법의 성격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제2절 해외사례

1) 일본

- 일본의 수산관련 법률 중 양식어업에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음
 - 양식어업의 발전, 진흥은 ‘수산기본법’에서, 어업권은 ‘어업법’이, 어장환경 개선은 ‘지속적 양식생산 확보법’, ‘어항어장정비법’, 양식어장의 개발은 ‘어항어장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양식어업 관련 법률 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통합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는 구조임
 - 각 법률의 성격별로 세부 규정 사항에 차이를 지니고 있음
- 일본의 수산 관련법률 내에 양식어업 전체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입어권의 정의에서 일부 양식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2) 미국

- 1980년 국가양식법은 양식에 관한 연방차원의 단일법으로 농무부장관이 국가양식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미국 양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양식산업 전반에 대한 R&D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무부장관이 의장이 된 양식조정연방위원회의 설립, 격년의회보고서 발간하도록 의무사항 규정함
 - 특별히 본법이 적용되는 적용수면, 양식업 관련 인허가기간, 인허가조건 등에 대한 내용과 친환경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은 미비함
- 2007년 국가외해양식법(안)은 상무부장관이 양식업에 대한 허가(Permit)를 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세부적인 하위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상무부장관이 양식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관련 조사와 연구를 진행시킬 의무를 부담함
 - 양식업 허가 절차 전반에서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며, 허가 후 양식업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3) 노르웨이

- 1985년 이후 양식업이 발전하면서 소유권/구조, 규모, 생산 기술, 지역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음
 -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장법만으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양식업의 가치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양식업 발전을 위한 현대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신규 제정될 노르웨이 양식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양식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연안지역에서의 양식업 가치 창출에 기여함
 - 양식 면허제를 의무화하고, 면허 가격은 면허할당 대상자를 상대로 경매 혹은 입찰에 의해 결정됨

- 양식법은 양식업체의 소유 주체가 아니라 양식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초점이 전환됨
- 양식 면허제에서 양도권과 담보권을 도입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상업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예상 가능한 규범적 체계를 확립함

제4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제1절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

1. 산업적 관점

- 양식수산물의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비중 계속 증가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4% 점유
- 양식어가 및 어가인구 30% 이상 점유
 - 양식어가는 33% 이상, 어가인구는 32% 점유
- 양식어가소득이 전체어가 소득보다 상회
 - 양식어가 소득은 전체어가 소득보다 절대적으로 높고 양식업에 대한 선호도 높음
- 양식수산물 수출비중 23%로 계속 증가할 추세로 전망
- 수산물 공급, 소득 및 수출 등 산업적 관점에서 양식업의 중요 증대
 -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은 양식업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
 - 국민들의 식량공급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그리고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식업의 발전 필요

2. 정책적 관점

- 양식산업은 미래생명산업시대의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
- 우리나라도 양식산업을 식량공급, 수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채택
- 법과 집행조직의 통일성 유지
 - 현행 우리나라 양식관련법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등에 산재해 있고, 관련부서도 어업정책과,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에 분산되어 있어 법과 정책집행력이 떨어짐

3. 제도적 관점

- 양식산업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 법체계 필요
 - 양식산업은 종묘생산→양식→판매와 양식을 위한 관련산업이 연관된 종합적인 산업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법에 산재된 양식 관련법을 통합하여 업계 편의성 제고 및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간편한 법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기존의 양식관련제도는 어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양식업 발전에 한계
 - 양식업을 어업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공유수면에서의 양식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새로운 양식 방법의 개발 및 도입, 젊은 인력과 자본의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양식업 발전을 저해함
- 양식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보다는 규제중심의 제도
 - 양식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법정계획 수립 및 집행, 새로운 양식의 도입에 대한 유연성, 양식관련산업의 육성지원, 양식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및 글로벌산업화에 대한 제도 미비
- 수산선진국 양식단독법 제정 추세
 - 노르웨이, 미국 등 수산선진국에서는 양식산업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2절 양식산업의 범위 및 개념 설정

1. 목적 및 범위

- 이 법의 목적은 양식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임

- 양식업을 어업의 한 범주로 간주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양식업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것으로서 채포의 의미를 가진 어업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양식업과 어업을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법에서는 양식업 범위를 단순한 사업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국민경제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고, 양식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전체적인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산업화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따라서 양식관련산업을 포함한 양식산업의 범위 재설정이 필요함

2. 개념 및 용어정의

- 양식
 - 양식 대상 환경에 대한 개념 정의와 수산종묘 생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립 필요
- 양식산업
 - 양식산업을 양식업, 수산종자업, 수산종묘업, 양식관련사업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용어의 정의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식장
 - 수산업법상 양식을 하는 장소는 면허어업의 대상인 양식어업에 대해서만 어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육상양식장, 수산종묘생산지에 대한 장소적 개념 설정이 부재하므로 양식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 양식시설
 - 양식에 필요한 요건은 양식장, 어선 및 어구, 기타 시설물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양식장, 어선 및 어구 외에 시설물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 양식물과 양식수산물
 - 양식물과 양식수산물을 구분하여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양식수산물의 경우 용도를 다양하게 하여야 할 것임
- 양식업자와 종사자
 - 양식업을 어업과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양식업자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수산종묘업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양식의 개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별도의 사업인 만큼 수산종자업자 및 수산종묘업자에 대한 구분도 필요함
 - 또한 종사자의 경우도 어업종사자가 아닌 양식업종사자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식관련사업
 - 양식산업의 전후방산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양식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양식관련사업에 대한 규정과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함

3. 적용수면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양식이 가능한 수면으로 규정
 - 「수산업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면
 - 양식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수면

4. 주요 용어 정의

○ 양식

- "양식"이란 통제되거나 선정된 수생생태 환경 하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 또는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산동식물을 번식하고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함
- 기존의 양식업의 종류는 품종기준과 장소기준, 소유자기준 등 일관성이 부족함. 따라서 새로운 법에서는 장소기준을 원칙으로 정리함
- "연안양식"이란 바닷가로부터 제8호 외해 내측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외해양식"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육상해수면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빌딩양식"이란 육상의 빌딩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양식수를 재활용하여 집약적으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양식산업 및 관련산업

- "양식산업"이란 양식업, 수산종자업, 수산종묘업 및 양식관련사업을 말함
- "양식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하천·댐·호수·늪·저수지·인공적으로 조성한 담수나 기수(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수산종자업"이란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수산종묘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 간 육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산업으로서 양식장 정화정비업, 양식사료업, 수산질병관리업, 양식기자재업, 양식시설물설치업, 양식수산물 운반·가공·유통·판매업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함
- 양식장정화정비업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양식장의 피해를 막고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양식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
- 양식장 및 양식시설
 - 양식장 : 양식을 하는 해수면 및 내수면을 포함한 모든 장소
 - 해수면양식장 : 연안 및 외해 양식을 하는 장소
 - 양식시설 :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
- 양식물과 양식수산물
 - 양식물 : 양식장에서 양식중이거나 수산종묘생산시설에서 생산중인 수산동식물
 - 양식수산물 : 양식을 통하여 생산된 식용·공업용·레저용·교육용 등 모든 수산물
- 양식업 및 관련산업 경영자와 종사자
 - "양식업자 등"이란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양식업자), 수산종자업을 영위하는 자(수산종자업자), 수산종묘업을 영위하는 자(수산종묘업자)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짐
 - ※ 어업인과 구별될 경우 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함
 -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자 등을 위하여 양식업, 수산종자업 또는 수산종묘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짐
 - "양식기업"이란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법인
 - "양식관련업자"란 양식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 "양식관련업종사자"란 양식관련업자를 위하여 종사하는 자

제3절 양식산업발전법(안)

1. 개요

- 본 법은 기존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장관리법 중 양식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양산업발전법안에 있는 해외양식업은 국내법에서 인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동법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법 제정시 통합법에서 제외함
- 법안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3개안을 마련함
 - 제1안(개혁안) : 면허제도 폐지, 우선순위 전면개편, 유효기간 전면개편,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 양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대폭 확대하는 법안으로서 가장 개혁적인 법안임
 - 제2안(통합개혁안) : 면허제도 유지, 우선순위 전면개편, 유효기간 전면개편,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 양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대폭 확대 등을 담은 법안으로 개혁적이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것임
 - 제3안(통합안) : 면허제도·우선순위·유효기간 유지,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고, 개혁적이지는 못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법안임
- 법안의 제목은 여러 가지가 검토되었으나 「양식산업발전법(가칭)」으로 설정함
 - 수산양식산업발전법, 수산양식산업육성법, 수산양식산업육성발전법, 수산양식산업법 등이 검토되었으나, 수산이란 용어는 이미 양식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
 - 육성과 발전 중 발전이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육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육성을 삭제
 - 따라서 법안의 가제목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정함
- 법안은 크게 7장으로 구성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의 준용 및 적용범위를 포함함

- 기존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장관리법의 내용을 수용하되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재조정함
- 제2장 양식산업 발전정책 등에서는 동법이 양식산업발전법이므로 이를 위한 양식산업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회 설치, 양식장 이용개발 계획 수립 등을 담음
 - 기존 수산업법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을 수용하고, 기르는어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폭 확대 수정함
 -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 방향 수립, 산업구조개선 및 전환에 관한 촉진 근거 그리고 양식산업발전심의회 설치근거를 마련 하는 등 전면 재편함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에서는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혁안에서는 면허제도를 허가제도로 전환하고, 개혁안과 통합개혁안에서는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제 도입, 유효기간 조정과 우선순위를 개편
 - 통합법에서는 기존의 면허,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그대로 수용함
- 제4장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에서는 양식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장정화 및 환경개선 사업실시 근거를 마련함
 - 기존의 어장관리법중 양식장에 관련된 법 규정을 전면 수용함. 다만 현행 어장관리법이 현실과 괴리가 많아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추후 개정시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함
- 제5장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서는 양식산업 육성지구, 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조세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기존 수산업법에서도 기르는어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동법에서는 이를 확대개편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과 조세 특례사항을 전면 확대보완함
 - 공단설립, 양식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신설하여 양식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코자 함

- 제6장 보칙에서는 손실보상, 포상, 권한의 위임과 위탁, 청문, 수수료 등을 규정함
 - 대부분 기존의 법률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포상의 범위를 확대함
- 제7장 벌칙에서는 벌칙, 몰수,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함
 - 기존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벌칙간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함
- 3개 법안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은 각 각 68개, 70개 및 69개로 구성되어 있음

양식산업발전법의 세 가지 시나리오

장제목	1안(개혁안)	2안(통합개혁안)	3안(통합안)
7개장	68개 조문	70개 조문	69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조(적용범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조(적용범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양식산업 발전정책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제3장 양식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제12조(양식업의 허가) 제13조(수산종자 및 종묘업의 허가) 제14조(양식업 등의 신고) 제15조(허가의 결격사유) 제16조(허가 및 신고의 금지) 제17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18조(양식업허가의 우선순위) 제19조(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제20조(양식업의 심사·평가) 제21조(한정양식업 허가) 제22조(허가의 변경·폐업 등) 제23조(양식장 등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24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25조(휴업 신고 및 허가 포기의 신고) 제26조(양식산업의 개시 등) 제27조(다른 사람에게 의한 지배 금지) 제28조(임대차의 금지) 제29조(허가·신고의 취소) 제30조(허가 또는 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제31조(어촌계 등의 양식장관리)	제12조(양식업의 면허) 제13조(어업권의 준용규정) 제14조(양식업 등의 허가) 제15조(양식업 등의 신고) 제16조(면허 및 허가의 결격사유) 제17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금지) 제18조(면허 및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19조(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제20조(양식업 등 허가의 우선순위) 제21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제22조(양식업의 심사·평가) 제23조(한정양식업면허) 제24조(면허, 허가의 변경·폐업 등) 제25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26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27조(휴업 신고, 면허 및 허가 포기의 신고) 제28조(양식업 등의 개시 등)	제12조(양식업의 면허) 제13조(어업권의 준용규정) 제14조(양식업 등의 허가) 제15조(양식업 등의 신고) 제16조(면허 및 허가의 결격사유) 제17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금지) 제18조(면허 및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19조(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제20조(양식업 등 허가의 우선순위) 제21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제22조(한정양식업면허) 제23조(면허, 허가의 변경·폐업 등) 제24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25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26조(휴업 신고, 면허 및 허가 포기의 신고) 제27조(양식업 등의 개시 등) 제28조(다른 사람에게 의한

	제32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33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34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0조(임대차의 금지) 제31조(면허·허가·신고의 취소) 제32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제33조(어촌계 등의 양식장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35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36조(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배 금지) 제29조(임대차의 금지) 제30조(면허·허가·신고의 취소) 제31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제32조(어촌계 등의 양식장 관리) 제33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35조(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	제36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37조(양식장환경의 조사) 제38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제39조(허가동시갱신) 제40조(양식장휴식) 제41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제42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43조(양식장의 관리의무) 제44조(양식업자의 양식장 관리 의무)다. 제45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제46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39조(양식장환경의 조사) 제40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제41조(면허·허가동시갱신) 제42조(양식장휴식) 제43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제44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45조(양식장의 관리의무) 제46조(양식업자의 양식장 관리 의무)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제49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제51조(양식장정화·정비업 영입의 승계) 제52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제37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38조(양식장환경의 조사) 제39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제40조(면허·허가동시갱신) 제41조(양식장휴식) 제42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제43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44조(양식장의 관리의무) 제45조(양식업자의 양식장 관리 의무) 제46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제49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영입의 승계) 제51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1조(양식산업 육성지구) 제52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제53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제54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5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53조(양식산업 육성지구) 제54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제55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제56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52조(양식산업 육성지구) 제53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제54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제55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6조(조세에 대한 특례)

<p>제6장 보칙</p>	<p>제56조(손실보상) 제57조(과징금 처분) 제58조(포상) 제5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0조(수수료) 제61조(청문)</p>	<p>제58조(손실보상) 제59조(과징금 처분) 제60조(포상) 제6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2조(수수료) 제63조(청문)</p>	<p>제57조(손실보상) 제58조(과징금 처분) 제59조(포상) 제6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1조(수수료) 제62조(청문)</p>
<p>제7장 벌칙</p>	<p>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몰수)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p>	<p>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몰수)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p>	<p>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몰수)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p>

제5장 친환경 양식 도입 방안

제1절 사례 분석

1) EU

- 세계 친환경 양식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특정 어종을 중심으로 한 유기양식이 진행되고 있음
- EU의 오가닉농업상무위원회는 친환경양식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결정함
- EU의 친환경양식 규정은 국제유기농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IFOAM)에서 발표한 기준안을 초안으로 삼고 있음
- COMMISSION REGULATION(EC)No710/2009은 유기수산양식동물 및 해조류 생산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항목은 다음과 같음
 - 본 규칙은 2013년까지 관련 규정의 재검토·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2) 일본

- 일본 정부 차원의 친환경(유기)수산물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민간인증기관에 의해 친환경 양식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JAS법을 통해 유기식품에 대한 규격기준 마련·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유기식품과 관련된 규격은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의해 마련되어 있음
 - 당 법에서는 유기식품에 대한 표시규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유기축산물의 4종으로, 수산물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의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의 농림규격 내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으나, 원료에 대해 농산물과 축산물에

별도의 항목이 마련된데 비해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제도나 규정은 현 시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본의 친환경 수산물 민간인증기관은 JONA(JAPAN ORGANIC&NATURAL FOODS ASSOCIATION), 日本有機水産物認証協会(NPO법인) 등임
- 참고로 일본 JONA의 친환경(유기) 수산물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원칙적으로 양식수산물이어야 하며, 인공증식, 생육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
 -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적어야 하는 만큼 어장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수나 투기를 해서는 안되며, 문제 방지를 위해 적정 처리시설을 보유하던지 자연환경 정화기능의 허용범위 내에서의 배수를 위해서는 자연정화능력에 대한 측정·평가가 있어야 함
 - 자연내에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수산용의약품의 사용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적정 사용방법 준수, 부하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사료의 경우 자연내에서 생산되었으나 화학처리나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단, '지속적 생산' 원칙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식품폐기물, 비식용 수산물 등을 활용해야 함
 - 가공은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되 신속한 처리, 적절한 온도관리, 물리적인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약품 처리를 피하기 위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임
- 일본 민간기관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도 양식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3) 시사점

- 친환경 양식은 친환경 농업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수산물의 경우 농업의 경작·사육 개념에 근사한 양식수산물에 대해 친환경의 개념이 도입·검토되었음
 - 자연산 수산물의 경우 '자원의 지속적 생산'에 초점을 둔 에코라벨링(Ecolabelling) 제도의 규범화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친환경 양식은 그 기원으로 인해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 요건이 양성환경, 투입물 등으로 농업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
- 친환경 수산업, 수산물에 대한 범세계적 공통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기준 설정시 IFOAM의 가이드라인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유럽, 일본의 경우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 방식,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약간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인증 기준의 경우 IFOAM이 발표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고 있어 유사함
 - 국가 또는 기관간에 친환경 수산물의 관리 항목은 유사한 분류체계를 가짐

제2절 친환경양식 정책방향

- 친환경 수산물인증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기준은 양식장의 수질환경 기준, 종묘의 건전성 및 출처 관리 등임(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우리나라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 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근거로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 친환경 어업(양식업)의 육성·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법령상 우리나라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은 여타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인증기준에 비해 수질환경, 종묘로 단순한 편임
 - 국내 인증은 현실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국제기준의 즉각적 도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향후 농축산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양식어업의 육성 및 양식수산물에 대한 통합 인증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어업 및 수산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이 추진될 예정임
 - 법률에 의거해 친환경 어업에 대해서도 종합 육성계획이 마련되며, 지자체도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육성계획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시범단지 육성 방안, 제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국제협력 강화 방안, 자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친환경 농축수산업과 관련해 법률이 통합되면서 친환경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된 실정임
- 향후 육성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친환경 양식어업과 관련된 기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에서는 세계적인 친환경 수산물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친환경 식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선진국가에 대한 국내 양식수산물의 수출 가능성 확대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임

제6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제1절 법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 법안비용추계란 재정수반법안(Budget-related Bills)에 대해 당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비용, 연도별 소요비용, 부담주체별 소요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함
- 법안비용추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짐
 - 법안비용추계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에 수권액 또는 지출상한선을 규정할 경우에는 입법에 의한 국가재정의 악화 자체뿐만 아니라, 예산에 의한 국가재정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음
 - 비용추계 정보를 토대로 국가재정부담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법률안에 집중하거나,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입법행위를 방지하고 희소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을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함. 또한 비용추계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입법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입법을 방지하고,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소요비용을 과학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법률과 연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법안의 소요비용을 제대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 등을 정책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안내용을 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음

제2절 양식산업발전법안 비용추계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39조(양식장환경의 조사)
- 제53조(양식산업 육성지구)
- 제54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 제55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 제56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는 앞서 제시된 세 가지 양식산업발전법(안) 가운데 통합개혁법안인 제2안을 근거로 추계함
- 이 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되어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양식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할 경우 2014년 약 612억.5억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2,91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양식산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미래 생명경제시대에 각광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임
 - 그러나 기존의 양식관련 법체계를 보면 다수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고, 행정과 법률의 일치성이 없어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한계를 가져왔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분석함과 아울러 양식관련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여 단일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밝힘
-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양식관련법의 제목은 「양식산업발전법(가칭)」으로 하였고, 개혁안, 통합개혁안 및 통합안 등 3개 안을 제시함
 - 공통사항으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제시 의무화, 양식산업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식산업의 범위 확대,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과 공단 설립 근거를 규정함
 - 개혁안 면허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우선순위 전면개정, 양식업 심사 평가제 도입 및 유효기간의 단축 등을 규정함
 - 통합개혁안에서는 면허제만을 유지하고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함
 - 통합안에서는 면허제, 우선순위제 및 유효기관을 종전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용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장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의 정의를 어업, 양식업, 수산물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으로 개정하고, 동법중 양식업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
 - 내수면어업법은 양식업에 관한 사항은 전면 삭제하고,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 어장관리법은 양식어장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하고 어로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적용대상으로 함과 아울러 수산자원 생태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어장 및 수산자원 생태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양식산업발전의 제정은 단순한 기존법률의 통폐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법 제정과 동시에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아울러 동법 제정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작성함과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마지막으로 동법 제정을 위한 민관학연 TF를 양식산업과 주관으로 구성·운영하고 법제정과 더불어 정부조직의 개편방안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현재 양식산업과, 어업정책과 및 자원환경과에 산재된 양식산업 관련 업무가 통합되어야 함
 - 또한 업무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가칭 양식산업국을 신설하고, 양식산업정책과,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과 등 3개 정도의 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2001년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제정·공포를 배경으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크게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이후 양식어업 생산량이 연근해어업 생산을 넘어설 만큼 수산업의 주요 부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음
- 그러나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양식어업은 생산의 근간이 되는 어장과 관련해 육상오염원 유입과 자가 오염에 따른 환경 악화(생산성 저하, 질병 빈발 등), 장기 연작에 따른 노후화, 어장의 환경수용능력 초과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빈도 증가 및 질병 확산이 순환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기에 이른 실정으로, 양식어업의 발전과 관련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양식 내만 적지의 개발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로 신규어장 개발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해양생태계 및 어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양식수산물의 서식조건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면허·허가어업제도에 기반한 현재 어장의 이용·관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양식 방법도 생산성의 제고와 양식수산물의 품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한편 최근 발표된 OECD와 FAO의 공동보고서(OECD-FAO Agriculture Outlook 2011-2020)에 따르면 수산업 중에서도 양식업은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세계 각국은 미래 식량산업으로서 양식산업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OECD와 FAO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어업 생산량은 양식어업의 성장에 힘입어 2008~2010년 평균에 비해 15% 증가한 1억 6,400만 톤에 이르고, 식용 수산물 중 양식어업의 비중도 2008~2010년 47%에서 2015년에는 51%, 2020년에는 54%로 어선어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 일본, EU의 주요 수산국은 양식어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추진하고 있는데, 자국내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해외의 양식어장 확보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 대한 주요 국가의 양식어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어업과 관련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의 본격 시행과 관련해 제도·법률과의 괴리 문제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차세대 신 성장동력으로서 추진 중인 친환경 갯벌어업의 산업화는 지금까지 산업적 이용 측면에서 대상외로 다루어지던 갯벌이라는 해양공간을 친환경적인 양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한 신규 산업화가 도입·추진되고 있으나, 이용·관리와 관련해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국내의 경우 개발가능한 양식적지가 포화상태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해외시장의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해외 양식업 진출이 모색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양식기법도 기존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또는 첨단기법을 채용한 새로운 방법(예 : 빌딩양식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기존 제도·법률에는 이 같은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양식어업의 신산업화에 본격 개입할 시점이며, 이와 관련해 양식분야에 대한 육성·지원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정비함으로써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시점임
- 동시에 양식어업이 직면해 있는 양식어장의 제문제(어장 노후화, 수산질병 발생 및 확산, 수산물의 위해 발생 빈도 증가 등)와 친환경 식품에 대한 소비 선호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화된 친환경적 양식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양식업의 새로운 발전 방안 마련의 기틀이 되는 법률·제도적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현을 위해 필수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친환경 양식의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가칭 「수산양식산업육성법」 제정과 친환경 양식 도입 방안 검토로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조성함
 - 수산양식산업육성법과 관련해 수산업법 등으로 다기에 걸쳐 있는 양식 관련 법률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는 수산양식 환경의 변화와 법률·제도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양식어업의 품종별 면허의 시설방법별 면허로의 개선 등)의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

제2장 양식산업 제도 및 법률 분석

제1절 양식업 제도

1. 수산업과 양식업

-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업법」에서 크게 어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인허가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산업의 명칭이 정해짐
 -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어업은 동조 제2호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어로어업과 양식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음
 - 동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어획물운반업을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하고,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법」 제2조제5호 기르는어업 정의에서 양식품종에 따른 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조 제7호에서는 양식에 대한 저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함
 -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일컫음

- 「수산업법」에서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동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바다, 바닷가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수면양식업의 장소는 바다, 바닷가 및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수면이라 할 수 있음
-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양식어업을 수산업과 비교해 보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업-어업-양식어업으로 구분되고 다시 인허가 방법에 따라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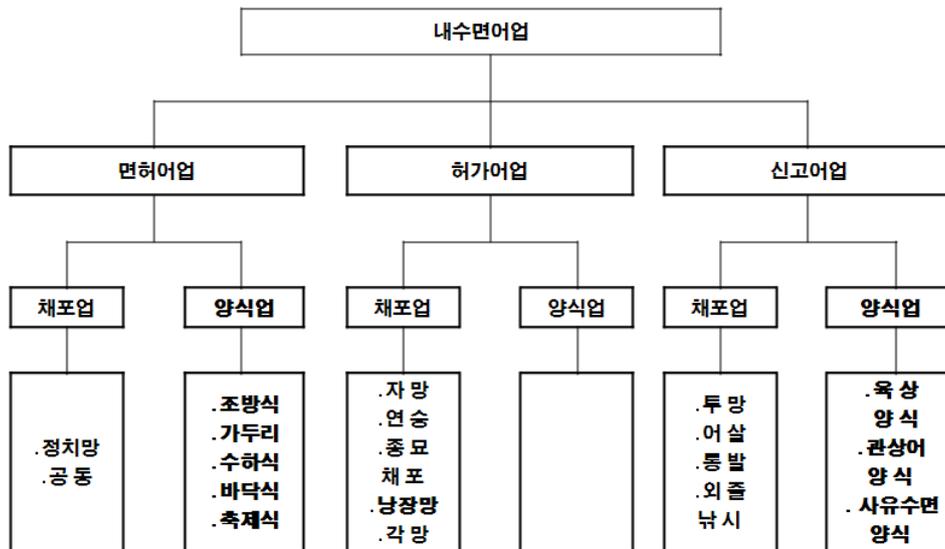


자료 :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그림 2-1> 우리나라 수산업의 종류 및 해수면양식어업

- 한편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인허가 방법에 따라 면허어업과 신고어업의 범주에 양식어업이 포함됨

- 내수면에서의 양식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공공용 수면과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수면이 원칙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유수면도 동 법의 적용을 받음
- 공공용 수면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하고, 내수면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함
- 사유수면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일컫음
- 따라서 자연적인 내수면 외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모든 내수면이 양식업의 적용수면이 될 수 있음



〈그림 2-2〉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종류 및 내수면양식어업

- 양식어업의 인허가 처분에 따른 구분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농림수산식품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됨
 - 해수면양식업의 경우 면허 중 외해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사항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권자임
 - 반면 내수면양식업의 경우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처분권자임

〈표 2-1〉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종류 및 처분권자

구 분	어업종류	처분권자	근거법
해수면 양식어업	면허어업		
	1. 해조류양식어업	시장·군수·구청장	수산업법 제8조
	2. 패류양식어업	"	"
	3. 어류등양식어업	"	"
	4. 복합양식어업	"	"
	5. 협동양식어업	"	"
	6. 외해양식어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허가어업		
1. 육상해수양식어업	시장·군수·구청장	수산업법 제41조	
2. 종묘생산어업	"	"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어업		
	1. 양식어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내수면어업법 제6조
	신고어업		
	1. 육상양식어업 2. 관상어양식어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해수면양식어업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양식면허어업의 면허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총 9,815건에 141,015ha가 면허처분되어 있음
 - 지역별로는 전남이 건수 및 면적면에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남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대부분의 해수면 양식어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품종별로는 건수면에서는 패류가 58%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해조류가 28%를 점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해조류가 58%인 반면 패류는 35%를 점하고 있음
 - 지역별 어업별로 보면 전남은 건수면에서는 패류가 많으나 면적으로는 해조류가 많고, 경남은 패류와 어류 등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같은 남해안이라도 해역특성에 따라 양식업 종류가 다를 수 있음

〈표 2-2〉 지역별 해수면 양식어업권 현황(2010년)

단위 : 건, ha, %

구 분		합 계	해조류	패류	어류 등
합계	건수	9,815	2,709	5,669	1,437
	면적	141,015	82,019	49,988	9,008
부산	건수	130	127	1	2
	면적	1,666	1,654	6	7
인천	건수	274	64	161	49
	면적	2,735	908	1,563	264
울산	건수	60	45	10	5
	면적	404	286	99	19
경기	건수	88	31	47	10
	면적	1,842	1,093	717	33
강원	건수	169	11	27	131
	면적	3,659	73	277	3,309
충남	건수	663	47	490	126
	면적	9,940	4,102	4,464	1,374
전북	건수	463	80	312	71
	면적	8,456	4,809	3,109	538
전남	건수	5,278	2,262	2,791	225
	면적	96,372	68,947	26,410	1,015
경북	건수	475	17	179	279
	면적	3,279	33	2,465	781
경남	건수	2,172	24	1,617	531
	면적	11,671	112	9,907	1,652
제주	건수	43	1	34	8
	면적	991	3	971	17
비율	건수	1.00	0.28	0.58	0.15
	면적	1.00	0.58	0.35	0.0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11.

- 한편 해수면양식어업권의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재 어촌계 등 공동체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음
 - 건수면에서는 어촌계가 59%, 수협이 6%로 65%이고, 면적으로는 어촌계가 69%, 수협이 15%로 전체 84%를 보유하고 있음
 - 품종별 어촌계 및 수협의 어업권 보유 현황을 보면 해조류가 건수면에서 93%를 차지한 반면 패류는 59%, 어류 등은 36%로 주로 자본과 기술투자가 많은 양식은 개인경영이 많은 것을 파악됨

〈표 2-3〉 품종별 소유자별 해수면양식어업권 현황(2011년)

단위 : 건, ha, %

품종별	합 계		어촌계		수 협		개인·협업		영어조합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9,795	139,811	5,768	96,604	577	20,504	3,349	22,396	169	1,472
	100	100	59	69	6	15	35	16	2	1
해조류	2,758	81,837	2,157	60,796	385	18,989	192	1,567	24	486
	100	100	79	75	14	24	7	2	1	1
패 류	5,698	49,848	3,178	31,340	156	1,387	2,313	17,443	119	842
	100	100	56	63	3	3	41	35	2	2
어류 등	1,339	8,126	433	4,468	36	128	844	3,386	26	144
	100	100	33	55	3	2	63	42	2	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서 크게 수조식과 축제식으로 구분되고, 2010년말 현재 1,329건에 1,416ha가 허가되었음
 - 수조식은 총 999건으로 절대 다수이나, 면적으로 축제식이 1,160ha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은 어류 789건과 전복 178건으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지만, 면적으로 볼 때는 어류가 256ha중 240ha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축제식양식어업은 새우와 어류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최근 들어 해삼이 4건 허가된 것이 특징적임
- 종묘생산어업은 육상과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해상종묘생산어업은 2010년말 현재 총 927건에 2,957ha가 허가되어 있고, 육상종묘생산어업은 2010년말 현재 1,357건에 341ha가 허가되어 있음

〈표 2-4〉 육상양식어업 허가 현황(2010년)

단위 : 건, ha

구 분	합 계	수조식				축제식					
		소 계	어류	전복	기타	소 계	어류	새우	해삼	기타	
합 계	건수	1,329	999	789	178	32	330	78	232	4	16
	면적	1,416	256	240	13	4	1,160	234	861	4	61
부산 시	건수	18	18	18	0	0	0	0	0	0	0
	면적	4	4	4	0	0	0	0	0	0	0
인천 시	건수	24	0	0	0	0	24	5	14	1	4
	면적	76	0	0	0	0	76	6	68	1	1
울산 시	건수	12	12	11	1	0	0	0	0	0	0
	면적	4	4	4	0	0	0	0	0	0	0
경기도	건수	40	12	12	0	0	28	15	13	0	0
	면적	48	1	1	0	0	47	5	42	0	0
강원도	건수	19	19	5	3	11	0	0	0	0	0
	면적	2	2	1	0	1	0	0	0	0	0
충남도	건수	103	3	2	1	0	100	22	66	3	9
	면적	364	0	0	0	0	364	95	218	3	48
전북도	건수	34	8	8	0	0	26	12	14	0	0
	면적	82	3	3	0	0	79	44	35	0	0
전남도	건수	545	404	253	136	15	141	24	115	0	2
	면적	657	90	77	10	3	567	84	474	0	9
경북도	건수	83	83	80	1	2	0	0	0	0	0
	면적	17	17	17	0	0	0	0	0	0	0
경남도	건수	113	102	89	11	2	11	0	10	0	1
	면적	38	11	10	0	0	27	0	24	0	3
제주도	건수	338	338	311	25	2	0	0	0	0	0
	면적	125	125	123	2	0	0	0	0	0	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2-5〉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 현황(2010년)

단위 : 건, ha

구 분	합 계	굴	피조개	가리비	새고막	미역	우렁챙이	기타	
합 계	건수	927	249	201	25	153	205	58	36
	면적	2,957	619	926	95	492	549	123	154
부산시	건수	0	0	0	0	0	0	0	0
	면적	0	0	0	0	0	0	0	0
인천시	건수	2	0	0	1	0	0	0	1
	면적	10	0	0	5	0	0	0	5
울산시	건수	0	0	0	0	0	0	0	0
	면적	0	0	0	0	0	0	0	0
경기도	건수	3	0	0	0	0	0	0	3
	면적	8	0	0	0	0	0	0	8
강원도	건수	26	0	0	23	0	0	3	
	면적	99	0	0	88			11	
충남도	건수	26	0	0	0	0	2	0	24
	건수	123	0	0	0	0	3	0	120
전북도	건수	0	0	0	0	0	0	0	0
	면적	0	0	0	0	0	0	0	0
전남도	건수	396	32	7	1	151	203	0	2
	건수	1,133	73	15	2	489	546	0	9
경북도	건수	2	0	0	0	0	0	1	1
	면적	8	0	0	0	0	0	5	3
경남도	건수	472	217	194	0	2	0	54	5
	면적	1,576	546	911	0	3	0	107	9
제주도	건수	0	0	0	0	0	0	0	0
	면적	0	0	0	0	0	0	0	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2-6〉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 현황(2010년)

단위 : 건, ha

구 분	합 계	굴	어류	전복	감·미역	새우	우렁챙이	해삼	기타	
합 계	건수	1,357	16	394	545	95	23	127	32	125
	면적	341	1	179	51	12	15	2	3	77
부산시	건수	2	0	0	0	2	0	0	0	0
	면적	0	0	0	0	0	0	0	0	0
인천시	건수	36	0	5	4	0	2	0	4	21
	면적	2	0	1	0	0	0	0	0	1
울산시	건수	12	0	0	7	5	0	0	0	0
	면적	1	0	0	1	0	0	0	0	0
경기도	건수	9	0	8	0	0	0	0	0	1
	면적	4	0	1	0	0	0	0	0	3
강원도	건수	24	0	2	7	0	1	4	10	0
	면적	2	0	0	1	0	0	0	1	0
충남도	건수	142	1	74	9	11	15	0	7	25
	건수	113	0	88	1	6	14	0	1	3
전북도	건수	23	0	23	0	0	0	0	0	0
	면적	16	0	16	0	0	0	0	0	0
전남도	건수	665	0	96	456	73	4	0	0	36
	건수	173	0	56	45	6	0	0	0	66
경북도	건수	29	0	19	6	0	0	3	0	1
	면적	3	0	3	1	0	0	0	0	0
경남도	건수	327	15	117	18	4	1	120	11	41
	면적	18	1	8	1	0	0	2	1	4
제주도	건수	88	0	50	38	0	0	0	0	0
	면적	8	0	6	2	0	0	0	0	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반면 내수면양식어업권은 2005년 117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 28건에 불과하나, 대부분의 내수면양식어업은 신고어업으로 행해지고 있어 2010년 현재 총 2,373건이 있음

〈표 2-7〉 양식방법별 내수면양식어업 인허가 현황(2010년)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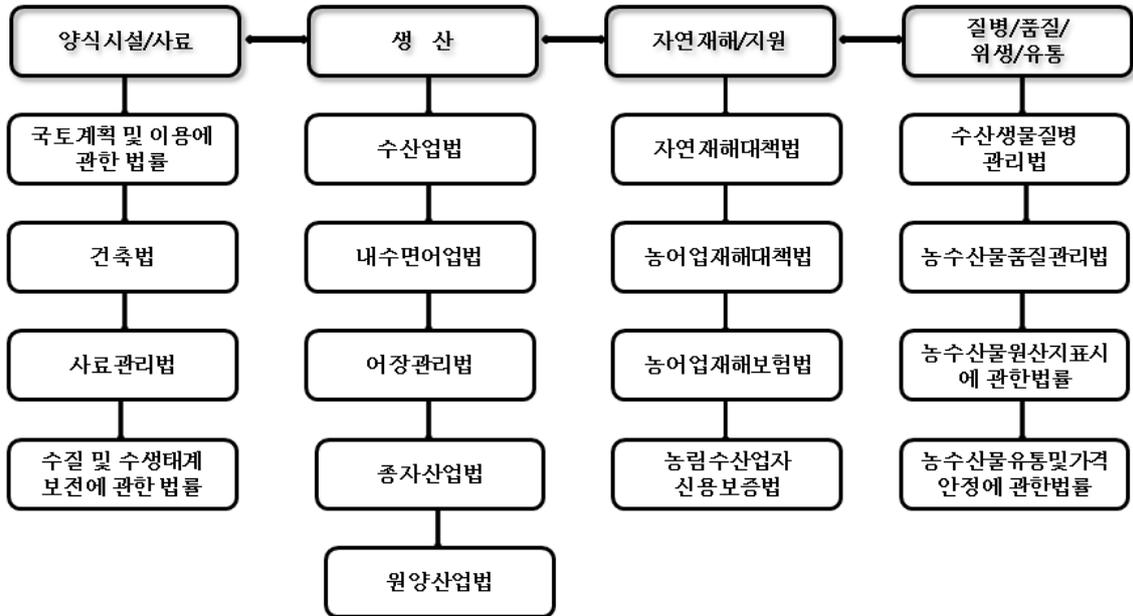
구 분	합 계	면허어업							신고어업
		합 계	조 방	가 두 리	수 하 식	바 닥 식	축 제 식	육 상	육 상
합 계	2,401	28	12			10	2	4	2,373
부 산	45								45
인 천	33	1	1						32
대 구	3								3
광 주	4								4
대 전	2								2
울 산	4								4
경 기	255	6							249
강 원	139								139
충 북	205	1						1	204
충 남	282	28	4					3	254
전 북	682	16	5						666
전 남	481	11				1	2		470
경 북	137	1	1						136
경 남	168	10				9			158
제 주	8	1	1						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 양식업 관련 법체계

- 우리나라 양식업 관련 법체계는 양식시설 및 사료, 생산, 자연재해 및 지원, 질병/품질/위생/유통으로 구분되고 약 17개 법률이 있음
- 양식시설/사료 관련법 중 사료관리법을 제외하고는 양식업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하는 법률임
 - 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식시설물의 설치 및 양식수에 관한 규제법임

- 사료관리법은 양식용 사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료급이용 양식에 대단히 중요한 법률임



〈그림 2-3〉 우리나라 양식관련 법체계도

- 양식생산에 관련된 법률은 양식업의 인허가 및 양식어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양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임
 -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은 해수면과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의 인허가 및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어장관리법은 대부분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장관리에 관한 규제법이자 양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양식어장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임
 - 종자산업법은 식물종자에 대한 품종개발, 생산 및 유통과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
 - 원양산업발전법에서는 해외에서의 양식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자연재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과 양식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률임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질병, 품질, 위생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양식수산물에 관한 위생 및 품질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임
 - 수산질병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제2절 양식산업 관련법률 검토

1. 양식생산 관련법

1) 수산업법

- 수산업법은 우리나라 수산법률의 기본법이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 종합 법으로서 양식어업의 경우 동법에서 정의, 양식어업의 종류 및 인허가 등 관련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산업법 제정시 가장 많은 부분을 이관하여야 할 법률임
 - 동법에서는 특히 해수면양식어업 중 어업권어업인 면허어업에 대한 양식 면허 대상자,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과 관련한 지원사항으로는 기르는어업발전계획 수립, 기르는어업 지구지정 및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기도 함
 -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식업을 어업의 관점에서 취급하고 있고, 양식업 면허 규정은 양식업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 보다는 다수 공동체 이익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음

〈표 2-8〉 수산업법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수산업 기본제도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
정의	수산업, 어업, 양식, 어장, 기르는어업, 어업권, 어업인, 어업자, 어업종사자 등
면허어업	면허양식어업 종류, 면허절차, 면허우선순위, 유효기간, 양식시설 기준, 어업권 등
신고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시설기준, 유효기간 등
지원육성	기르는어업발전계획,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조세감면 등
제한금지	각종 면허 및 허가 제한금지
어업보상	제한금지에 따른 어업보상 근거

〈표 2-9〉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별 내용

조 문	내 용
법1조	목적 : 수산업 기본제도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
법2조1호	수산업 :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법2조2호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법2조5호	기르는어업 :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 생산어업
법2조7호	양식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법2조8호	어장 :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법2조9호	어업권 :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법2조12호	어업인 : 어업자와 어업종사자
법2조13호	어업자 : 어업을 경영하는 자
법2조14호	어업종사자 :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법3조	적용수면 :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법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수면의 종합적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법5조	·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령에서 정하는 어업면허나 허가를 할 경우 장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 투자비율이 50% 이상 또는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 포함
령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망어업,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양식어업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법8조1항	<p>지자체 면허어업 :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양식어업 장관면허어업 : 외해양식어업</p>
령6조	면허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개발계획 공고 30일 이내에 면허받으려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제출
법8조2항	어업면허는 개발계획 범위안에서 실시
법8조3항	면허어업의 종류, 협동양식어업 수심한계령에서 규정
령8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조류양식어업 종류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령8조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류양식어업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뜬·밧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령8조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등양식어업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뜬·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령8조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양식어업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령8조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해양식어업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
령9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양식어업 어장이 수심 한계: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법8조4항	1.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면척10조1항	양식어장 시설기준 : 별표 2 양식어업종류별 양식방법, 양식물, 시설규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면척10조2-3항	종묘살포계획 신고, 확인 및 기술지도
면척12조3항	패류양식업중 키조개양식어업자 잠수기 사용 규정
면척47조	어업권자는 어장관리실태조사서 작성·관리지자체장은 이를 확인하여 어업권관리대장에 기록·관리
법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결격사유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다를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만 해당한다) 4.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령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결격사유 어장면적 기준 1.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단,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완화) 2. 지자체장은 일반인에 대하여 어장 면적 범위에서 어업별·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지자체장은 면척에서 정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하여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 4. 어장면적은 지분 취득어장,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포함
면척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면적기준 완화 1991년 2월 개정된 시행령 이전에 면허된 어류등양식어업의 축제식양식어업중 유효기간이 끝난 후 동일면적 동일범위 동일품종 양식할 경우
령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결격사유 기업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회사
법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의 금지 1. 공익상 사유(법34조) 2. 면허취소가 2년 제한(법35조)
법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상 면허어업 제한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 보위 3. 국방상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 항행·정박·계류, 수저전선 부설 5. 폐기물 배출해역 수산동물 위생관리상 6. 공특법에 의한 공익사업 7. 안전사고의 예방 등 8. 수산관련법 및 국제법 위반자
법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제한조건 1. 어업조정 2. 공익상 사유
법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및 지구별수협에만 면허 - 협동양식어업 - 해조류·바다식패류·어류등양식어업(마을어업내, 만조때 해안선 500이내(서해안 1천미터) 수면
법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우선순위(외해양식어업 제외)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기술자중 동일어업 경험자 또는 5년 이상 동종어업 경험자 -수산기술자중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경험자 또는 5년 동종 어업 경험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권 유효기간 만료자 -수산기술자중 신청어장에서 동일 어업 경험자 또는 5년 동일어업 경험자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에 1년 전부터 주소를 둔 자 -인접지역에서 1년 전부터 주소를 둔 자
법13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우선순위(외해양식어업) 1. 장관이 승인한 외해양식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내만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내만의 가두리어류양식어업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법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유효기간 10년에 총연장 10년
법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어업면허 -공익상으로 어업이 제한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수면에 관계기관장 협의 또는 승인하에 어업면허 -물권이 아니고 이전분할변경이 불가하며 보상대상이 안됨
법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 어업권 취득 -물권으로서 민법 토지규정 준용 -민법의 질권 배제 -어촌계 취득어업권은 공유
법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과 다른 법률관계 -어업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행위 허용 -공유수면 매립 소유권 불인정
법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 이전·분할·변경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변경시, 어업개시 1년 후 지자체장 인가시 법인의 합병 및 상속가능
법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지자체장 지정받은 후 해당 목적으로만 어장관리선 사용가능

법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동구역 및 월하구역 지정 -양식어업 필요한 월동장 및 월하장 지정관리
법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신고 및 어업권 포기 신고 -어업권자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시 신고 -어업권 등록후 어업개시 이전 및 2년이상 휴업 불가 - 단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 휴업기간 연장
법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의 개시 -어업권 취득후 1년 이내에 어업개시 의무
법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 타인지배 금지 -타인의 어업경영 사실상 지배 금지
면칙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 타인지배 범위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허칙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및 신고어업 타인지배 범위 1.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 2. 어업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
법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 임대차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어업권을 구성원이 행사하는 것을 임대차 아님
법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어업권 행사 -어촌계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어촌계원이 행사 -마을어업권은 계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어촌계 총회 의결시 행사 가능 · 지구별수협 어업권 행사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인근어촌계 업무구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 · 어업권 행사방법, 우선순위 등은 부령으로 정함
면칙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 행사 우선순위 -동일어장 어업권 행사실적자 -타어장 동일어업 행사실적자 -타어장 다른어업 행사실적자 -어업권 행사실적이 없는자 등
법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관리규약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어업권은 어업권 행사자의 자격, 입어방법, 입어료, 행사료 등을 규정하여야 함
법41조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 허가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41조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의 종류 -시행령에서 규정 · 양식물,종묘 및 시설기준 -허가규칙에서 규정 · 우선순위는 행정관청이 정함
령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류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p>2.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종묘생산어업 종류</p> <p>1.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어업</p> <p>2.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p> <p>3. 밧줄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밧줄을 설치하여 채묘연(採苗漚)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p> <p>4. 말목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p> <p>5. 뗏목식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p>
허칙3조	<p>·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류별 양식물 종류 및 시설기준(별표4)</p> <p>· 종묘생산어업 종류별 종묘 종류 및 시설기준(별표5)</p>
허칙4조	<p>· 어업허가 신청대상</p> <p>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 시설</p>
법50항	<p>·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p> <p>-장관은 5년마다 기르는어업 육성·발전 기본계획 수립</p> <p>1. 기르는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p> <p>2.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p> <p>3.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p> <p>4.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p>
법51조	<p>·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p> <p>-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p> <p>1. 어장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p> <p>2.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p> <p>3.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p> <p>4.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사항</p> <p>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법52조	<p>·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초조사</p>
법53조	<p>· 기르는어업 개발지구</p> <p>-일정한 해역·지역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로 지정</p> <p>-기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자금 우선 지원</p> <p>-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시 고시</p> <p>-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부령으로 정함</p>
법54조	<p>·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 지원</p> <p>-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사업</p> <p>-기르는어업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p> <p>-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p> <p>-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p>
법56조	<p>·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p> <p>「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p>
령32조	<p>· 기르는어업 지원대상 기술</p> <p>1. 양식용 사료의 제조·개발 기술</p> <p>2. 바이러스 백신 등 수산용 약제의 제조·개발 기술</p> <p>3.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양식 또는 종묘생산 기술</p> <p>4. 양식품종 개량 및 육종 기술</p>

	5.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기술 · 연구개발 및 보급자 자금 융자 및 보조
법61조	·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유지나 어업조정 위한 명령 -양식한 어획물 및 제품 처리에 관한 제한 및 금지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외국과의 어업협정, 국제법규, 외국수산물법령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
령38조	·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장관은 위생관리를 위하여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령39조	· 양식물 및 그 제품 처리 제한 금지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생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이나 수산동식물로 제한·금지 필요시
령41조	· 어업협정 등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양식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하거나 옮겨 실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령42조	· 수산물 포장 및 용기 제한(장관)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포장 또는 용기 사용의 제한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제한
령43조	· 위관장 지정(시도지사) 양식수산물 및 제품 매매장소로 지정 -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 「항만법」에 따른 항만 -어획물 양륙시설을 갖춘 선착장 또는 물양장
법68조	· 시설물의 철거 등 -어업이 끝나면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의무를 면제 -미철거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면칙45조 허칙33조	· 철거의무기간 -30일 이내

주) 법 : 수산업법, 령 : 수산업법시행령, 면칙 : 어업면허규칙, 허칙 : 어업허가규칙

2) 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어업법에서는 양식어업 중 내수면에서 행하는 양식에 대한 종류 및 인허가 사항을 취급하고 있으며, 양식산업법을 별도 제정할 경우 양식업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관되어야 할 법임

〈표 2-10〉 내수면어업법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정의	내수면, 공공용수면, 사유수면, 내수면어업
면허어업	면허양식어업 종류, 면허절차, 면허우선순위, 유효기간, 어업권 양식시설 기준 등
신고어업	신고대상 양식어업 종류, 시설기준 유효기간 등

〈표 2-11〉 내수면어업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별 내용

조 문	내 용
법1조	목적 -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법2조1호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물흐름 또는 수면
법2조2호	공공용수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내수면
법2조3호	사유수면 :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
법2조5호	내수면어업 :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법3조	적용수면 : 공공용 수면과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적용. 단,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유수면에도 적용
법6조1항	면허어업(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규칙4조	양식명칭·방법 및 규모(별표2)
법11조	신고어업 : 공공용수면에서 하는 어업과 사유수면에서의 모든 어업
령9조	신고어업 -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관상어양식어업 :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법13조	어업의 유효기간 : 면허양식어업 10년, 기타어업 5년

주) 법 : 내수면어업법, 령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3) 어장관리법

- 어장관리법에서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및 구획어장의 관리를 위한 규제사항과 어장정화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산업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양식어장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관되어야 할 법임

〈표 2-12〉 어장관리법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과 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정의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을 하고 해역
어장관리	어장관리해역·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어장환경조사, 어장휴식, 어장환경기준 설정, 양식 제한 및 금지
어장정화·정비	어장관리의무화, 어장정화 및 정비 등록업

〈표 2-13〉 어장관리법의 조문별 내용

조 문	내 용
목적	목적
법1조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
법2조1호	어장 :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을 하고 해역
법5조	어장관리해역 지정 지자체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어장
법6조	어장환경조사 장관은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 조사
법7조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어장환경 조사 결과 어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어장
법8조	면허·허가 동시갱신 지자체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경우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 실시
법9조	어장휴식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 가능
법10조	어장면적 조정 등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면허·허가 갱신시 어장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어장면적 조정 가능 자정능력 초과어장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허가 불허
법11조	어장환경 기준 설정, 양식 제한 및 금지
법12조	어장의 관리의무 어업면허 및 허가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종묘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

4) 종자산업법

- 종자산업법은 식물종자에 대한 신품종 개발, 품종 등록, 종자생산 및 판매,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양식업과 관련하여 수산식물이 이 법에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농작물 중심으로 제정된 법률임
 - 향후 수산종자산업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양식산업법에서 식물종자 외에 어패류에 대한 종묘에 대해서도 보강되어야 할 것임

〈표 2-14〉 종자산업법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
정의	종자산업, 종자, 품종, 종자업, 육성자 종자관리사 등
육성자의 권리보호	품종보호 요건 및 출원, 품종보호, 심판
품종 관리	품종명칭, 등록, 명칭 사용, 품종목록 등재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재정금융 지원

〈표 2-15〉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별 내용

조 문	내 용
법1조	목적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
법2조	- 종자산업 :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사업 - 종자 :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영양체 또는 포자 - 종자관리사 :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 - 종자업자 : 종자의 생산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
법11조	품종보호대상 작물
법12조	품종보호 대상요건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명칭
법55조	품종보호권 설정
법109조	품종명칭 등록 요건
법124-125조	종자보증 구분 및 보증 대상

법127조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법137-138조	종자업 등록 및 판매
법143-145조	유통종자 품질표시, 유통종자 제한 및 종자의 유통조사
법157조의2	종합계획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관련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 8.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방안
법157조의8	재정 및 금융지원 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종자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3. 종자생산 농어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

주) 법 : 종자산업법

5) 원양산업발전법

- 원양산업발전법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양식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양산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양식산업법 제정과는 큰 관련이 없으나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과 양식산업법이 별도법으로 존치되어야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표 2-16〉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원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 이바지
정의	원양산업, 원양어업, 원양어업관련사업, 원양산업자
원양어업 관련사업	관련사업계획 신고, 조사 및 보완·조정·권고, 용자·보조, 세제혜택 등

〈표 2-17〉 원양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별 내용

조 문	내 용
법1조	목적 - 원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책임있는 어어의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 이바지
법2조1호	원양산업 :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
법2조4호	원양산업자 :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
법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 신고 : -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에게 사업계획 신고. 중요사항 변경시에도 동일 - 장관은 조사후 보완, 조정 및 권고
령11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 중요변경사항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령12조	조사사항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정, 권고대상 1. 자금조달 능력대비 부적절한 투자규모 2. 기술적·경제적으로 낮은 실현 가능성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 우려시
법25조	원양어업관련회사 지원 - 중소기업 수준 원양회사가 관련회사 설립시 지원 - 시설우선 입주권 : 항만배후단지 물류시설,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단지
령13조	지원대상 사업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보관·배송·포장 등 물류사업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법26조	보조 및 융자
법27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주) 법 : 원양산업발전법, 령 :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2. 양식 전후방 관련산업

1) 양식시설 및 사료 관련법

- 양식시설 및 사료에 관련된 법률은 모두 4개로서 다음 <표 2-18>과 같이 양식장의 시설 및 수질관리 그리고 사료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들은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양식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양식산업법을 제정하더라도 이관이 곤란함
 - 다만 사료관리법은 양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관이 필요하나 현재의 양식사료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18> 양식시설 및 사료 관련법의 주요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육상양식장 시설가능 용도 지정
건축법	육상양식시설물 관련
사료관리법	어류양식용 사료생산업 등록 및 사료수급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육상양식어업 수질관리기준

2) 자연재해 및 지원 관련법

- 자연재해 및 양식경영체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총 4개로 대부분은 재해에 관련된 법률이고 신용보증관련법만 금융지원에 관한 법임
 - 동 법률들은 양식산업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법으로서 양식산업법 제정과는 큰 관련이 없음

〈표 2-19〉 자연재해 및 지원 관련법의 주요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시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상
농어업재해보험법	양식수산물 자연재해 보험에 의한 보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대출시 신용보증

3) 질병, 품질, 위생 및 유통 관련법

- 수산물 질병, 품질, 위생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는 5개 법률이 있는데, 이는 양식산업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닌 공통법으로서 양식산업법 제정시 이관할 사항이 거의 없음

〈표 2-20〉 질병, 품질, 위생 및 유통관련법의 주요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산생물질병 발생시 관리, 양식의 경우 대부분 양식과정상 질병관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수산물, 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 등 양식생산후 품질 관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 양식업관련 법률 분산에 따른 법운영 효율성 저하
 - 현행 양식어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령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등 3개 법에 분산되어 있음
 - 동법의 정부조직상 취급부서는 수산업법은 어업정책과, 내수면어업법과 어장관리법은 자원환경과에서 다루고 있고, 양식산업과는 실질적으로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님

- 이처럼 동일한 양식산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주무부서에서는 법률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실효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수행이 어려움
 - 특히 정책과 법 등 제도가 일체감 있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3개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배제되어 있음
- 수산생물의 양식생산에서 소비판매에 이르는 양식관련 모든 산업을 포함한 법률 부재
- 현행 양식관련법은 양식생산에 한정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양식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후방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가 되는 산업 외에 전후방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때 해당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양식업의 경우 양식시설, 기자재, 용품, 약품 및 사료와 같은 후방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료관리법을 제외하고는 양식정책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 또한 생산된 양식수산물의 품질, 위생 관리와 유통과 판매에 관한 전방산업의 발전은 양식산업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양식수산물 유통에 관한 시설, 장비는 물론 관련업의 발전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 수산업 기본제도인 수산업법에 양식어업 취급 한계
- 양식어업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양식산업의 환경변화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법률개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양식어업을 마을어업 및 정치망어업과 함께 어업권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권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특히 면허우선순위라든가 유효기간과 같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을 변경하려 할 경우 모든 어업권 어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은 어려운 실정임
 - 더욱이 수산업법은 우리나라 수산의 기본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률 내용도 종합적이고 조문도 많아서 필요시 법률개정이 대단히 곤란한 실정임

○ 양식어업 개념정의 문제

-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양식업을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양식업과 어업이 구분되는 것을 간과한 일제잔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즉, 일본의 어업제도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수산업법이 제정된 것에 기인하는데, 국제적으로 어업은 Fisheries로 양식업은 Aquaculture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수산에 관하여 가장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FAO의 통계에서도 Fisheries와 Aquaculture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양식업은 어업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

○ 양식업의 산업적·정책적 중요성 반영 한계

- 수산업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양식업 제도는 대부분 규제중심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는 공유수면을 이용하여 양식을 하고자 할 경우 양식장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배분이라는 명분하에서 규정된 것임
-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양식업은 공유수면보다는 사유수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욱 더 많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양식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이미 미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양식산업의 발전측면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음

○ 수산생명산업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양식체제 미비

- 현행 우리나라 양식물은 암묵적으로 식품으로 간주한 양식기준이 대부분임. 하지만 미래 생명시대에는 식품 외에 에너지, 신물질 등 생명산업 원료로서의 기능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수산생명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식물의 용도를 식품 외에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양식생산 체제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외해양식, 빌딩양식 및 갯벌양식과 같은 새로운 양식시스템을 수용하고, 용도 또한 식품 외의 용도로 양식할 수 있는 유연한 법의 제정이 필요함

2. 개선방향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양식업 관련 제도는 산업의 발전보다는 대단히 규제중심적이고, 다수의 법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양식업의 도입이라든지 자본과 기술의 진입에 제약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식법 체계의 문제점과 양식산업의 산업적 정책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 양식관련 법체계의 통폐합
 - 기존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장관리법에 산재해 있는 양식관련 법률을 단일법으로 통폐합하는 것임
- 수요자 중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법 제정
 - 새로운 양식산업법 제정은 과거의 행정규제적 요소보다는 양식업자, 새로운 양식기술, 양식수산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실현하는 법률로 제정하는 것임
- 양식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정책실효성 제고
 - 현재의 식품생산 위주, 내만 중심의 양식업을 수산생명산업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양식물의 생산, 양식생산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양식장소의 다양화 그리고 양식생산 뿐만 아니라 양식 전후방 산업까지도 포용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식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새로운 통합법에서는 단순히 법률의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방향으로서 양식산업을 미래 수산업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현행 양식면허 및 우선순위 제도 개선
 - 현행 양식어업의 가장 큰 한계는 어업권어업으로서 양식어업 면허제도와 우선순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 새로운 양식기법 도입 기반 조성

- 미래의 양식업은 내만이나 내수면이 아닌 EEZ, 육상의 빌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고, 양식기술 또한 종묘의 생산 및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양식기술이 아닌 6T(IT, BT, NT, ET, CT, ST)와 융복합한 새로운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새로운 양식산업법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장소 및 기법을 활용한 양식업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임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1) 산업법

- 1차 산업의 산업법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법, 석탄 산업법, 종자산업법, 인삼산업법 등이 있음
- 산업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 산업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산업법과 개별 단위산업에 대한 산업법이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법은 해당 산업 전반의 기본 정책방향과 제도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 다양한 하위 법률을 두고 있음
 - 석탄산업법, 종자산업법, 인삼산업법 등은 규모가 크지 않은 특정 산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1차 산업법은 개발과 육성, 보호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 이후 개별산업에 대한 법은 진흥법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표 3-1〉 1차 산업의 산업법 개요

구분	내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2005. 9. 27, 법률 제9717호 ■ 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구성 : 전문 63조와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 제2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3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수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1953. 9. 9, 법률 제295호 ■ 목적 :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함 ■ 구성 : 전문 102조와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석탄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1986. 1. 8, 법률 제3807호 ■ 목적 :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46조와 부칙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1995. 12. 6, 법률 제5024호 ■ 목적 : 식물 신종에 대한 육성자 권리보호, 주요작물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 생산·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176조와 부칙
인삼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1995. 12. 6, 법률 제5022호 ■ 목적 :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구성 : 전문 33조와 부칙

2) 진흥법

- 1차 산업의 진흥법은 소금산업진흥법, 김치진흥법, 낙농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이 있음
 - 이 진흥법들은 낙농진흥법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에 제정되었음

〈표 3-2〉 1차 산업의 진흥법 개요

구분	내용
소금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1963. 10. 28, 법률 제1419호, 염관리법 ■ 개정 : 2011. 11. 21,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진흥법으로 개편 ■ 목적 :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66조와 부칙
김치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2011. 7. 21, 법률 제10884호 ■ 목적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27조와 부칙
낙농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1967. 1. 16, 법률 제10884호 ■ 목적 :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19조와 부칙
식품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2008. 3. 21, 법률 제8974호 ■ 목적 :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38조와 부칙

-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의 1차 산업 진흥법의 특성은 기존에 상당 규모로 존재하던 산업이지만,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소금산업진흥법은 염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기존에 광물로 분류되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되고, 천일염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임
 - 김치산업진흥법은 국내와 교포시장에 머물던 김치시장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
 - 식품산업진흥법은 세부 산업이 아닌 큰 범위의 산업이지만, 기존의 유통·가공의 개념을 벗어나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

3) 육성지원 관련법

- 1차 산업에 관련된 육성지원 관련법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있음

- 1차 산업과 관련된 육성지원 관련법은 기존에 시장이 크지 않았지만, 환경 변화로 새로이 육성을 할 필요가 생긴 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육성과 함께 지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 대부분이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기술개발 등 기반조성, 세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기존에 있던 산업에 대해 새로운 이용 및 유통촉진 등에 관해 지원 및 육성 함으로써 기존에 산업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산업적으로 진흥 시키기 위한 것임
- 곤충산업, 기능성 양잠산업, 낚시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법은 산업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침체된 산업에 대해 새로운 산업발전의 전기를 마련 해주기 위한 것이며, 이 또한 수출산업으로서의 육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

〈표 3-3〉 1차 산업의 육성지원법 개요

구분	내용
<p>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 제정 : 2011. 7. 25, 법률 제10931호 ■ 목적 :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17조와 부칙 - 주요 내용 :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등,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4조 재정 및 기술지원 등</p>
<p>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 제정 : 2009. 5. 27, 법률 제9726호 ■ 목적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 ■ 구성 : 전문 11조와 부칙 - 주요 내용 :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 등,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제10조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p>
<p>낙시 관리 및 육성법</p>	<p>■ 제정 : 2011. 3. 9, 법률 제10458호 ■ 목적 :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55조와 부칙 - 주요 내용 : 제2장 낙시의 관리, 제3장 낙시터업, 제4장 낙시어선업, 제5장 미끼의 관리, 제6장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p>
<p>말산업 육성법</p>	<p>■ 제정 : 2011. 3. 9, 법률 제10451호 ■ 목적 :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31조와 부칙 - 주요 내용 : 제2장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4장 말산업특구</p>
<p>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p>	<p>■ 제정 : 2011. 11. 22, 법률 제11098호 ■ 목적 : 낱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구성 : 전문 31조와 부칙 - 주요 내용 :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 경영개선 지원, 제8조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제9조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제10조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 추진, 제16조 통계조사, 제17조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20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제21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22조 품평회 개최, 제23조 세계화 촉진 등</p>
<p>친환경농업육성법</p>	<p>■ 제정 : 2011. 7. 21, 법률 제10893호 ■ 목적 :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 ■ 구성 : 전문 27조와 부칙 - 주요 내용 :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제3장의2 친환경농자재 등의 유통관리, 제4장 국제협력 등</p>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산업을 둔 산업이 아닌 개별산업에 대한 법률은 산업법으로 출발하여, 점차 목적에 따라 진흥법과 육성지원법으로 나누어 제·개정되고 있음
- 양식산업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진흥하고, 이를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진흥법의 성격이 적절할 수도 있으나, 기존 양식 품종 이외에도 새로운 양식품종 및 기술의 개발과 육성도 포함되므로 육성지원법의 성격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제2절 해외사례

1) 일본

(1) 개요

- 일본의 수산관련 법률 중 양식어업에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음
 - 각 법률은 양식어업과 관련해 각각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의 발전, 진흥은 ‘수산기본법’에서, 어업권은 ‘어업법’이, 어장환경 개선은 ‘지속적 양식생산 확보법’, ‘어항어장정비법’, 양식어장의 개발은 ‘어항어장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3-4〉 일본의 양식어업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법률명	기본방향	세부내용
수산기본법	◦ 양식어업 발전 기본 방향	- 양식개발의 기본 방향,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의 추진,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 보전 및 개선 시책 수립, 양식어장의 기반 정비 시책 마련 등
어업법	◦ 양식어업권 관련 제반 사항	- 정의, 조합원의 권리, 면허사항, 해구어업조정위원회 자문, 면허 적격성, 우선순위, 기간, 성질, 등
지속적 양식생산 확보법	◦ 양식어장 환경 및 질병 관리	- 어장개선계획의 수립 - 어장개선계획 ; 대상수역 및 양식수산동물의 , 양식어장 개선 목표, 개선 조치 및 실시 시기, 필요 시설 및 체제 정비, 기타 사항 - 양식물 질병 : 관리를 위한 이종 제한, 손실보상, 증명서 교부 등
어항어장정비법	◦ 어장 개발 및 어장 퇴적물 관리 등	- 어항어장정비기본방침, 장기기본 계획 등

- 일본의 양식어업 관련 법률 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통합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는 구조임
 - 각 법률의 성격별로 세부 규정 사항에 차이를 지니고 있음

(2) 양식어업의 정의

- 일본의 수산 관련법률 내에 양식어업 전체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입어권의 정의에서 일부 양식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어업법에서는 어업을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어업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또한 양식업은 어업법 내 입어권의 정의(7조)에서 살필 수 있는데, 수하식양식업은 “뱃줄, 철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물속에 드리워서 하는 수산동물의 양식업(진주양식 제외)”으로, 가두리양식업은

“그물 가두리 및 기타 가두리를 사용하여 행하는 수산동물 양식업”으로 정의됨

- 어업법 제7조(입어권의 정의) 이 법에서 「입어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근거하여 타인의 공동어업권 또는 허비타테양식업, 해조류양식업, 수하식 양식업(밭줄, 철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물속에 드리워서 하는 수산동물의 양식업을 말하며 진주양식업을 제외한다), 가두리양식업(그물 가두리 및 기타 가두리를 사용하여 행하는 수산동물의 양식업을 말한다) 또는 제3종 구획어업인 패류양식업을 내용으로 하는 구획어업권(이하 「특정구획어업권」이라 한다)에 속하는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내용인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권리를 말함
- 단, JAS법률에 관련된 농림수산성 고시 ‘수산물품질표시기준’에서 양식업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음
 - ‘수산물품질표시기준’에서는 “양식이란 유어(幼魚) 등을 중량 증가 또는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하할 때까지 급이함으로써 육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수산물품질표시기준(농림수산성 고시 제516호) 제2조(정의) : 양식이란 유어 등을 중량 증가 또는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하할 때까지 급이함으로써 육성하는 것을 말함

(3) 양식어업의 어업권 명칭

- 일본에서 양식어업권은 어업법에서 구획어업권으로 정의하고 있음
 - 3개 구획어업권(제1종, 제2종, 제3종)과 공동어업권(제5종)으로 구분함
 - 즉, 양식대상지나 품목별 분류가 아닌 권종별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3-5〉 양식어업권의 정의(일본 어업법 제6조)

일본의 양식어업권	내 용
제1종 구획어업	일정한 구역내에서 돌, 기와, 대나무, 나무 등을 부설하여 영위하는 양식업
제2종 구획어업	흙, 돌, 대나무, 나무 등으로 둘러싸인 일정한 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양식업
제3종 구획어업	일정한 구역내에서 영위하는 양식업으로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양식업
제5종 공동어업	내수면(농림수산성 장관 지정 호수·늪 제외) 또는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하는 호수·늪에 준하는 해면에서 영위하는 어업

- 구획어업권(진주양식 등 일부 제외)의 대부분은 특정어업권의 범주에 포함(어업법 제8조)되는 것으로, 어업협동조합이 권리자가 되어 조합원에게 행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어업권은 어협 조합원으로, 어협이 작성한 어업권(입어권)행사규칙의 자격 해당자에게만 부여됨
 - 어업법 제8조(조합원의 어업을 경영하는 권리) ①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어업자 또는 어업종사자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어업협동조합 또는 당해 어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그 가지는 각 특정구획어업권, 공동어업권 또는 입어권별로 제정한 어업권행사규칙 또는 입어권행사규칙에서 규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가지는 특정구획어업권, 공동어업권 또는 입어권의 범위 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가짐

(4) 양식어업권의 인허가 관련 사항

- 어업권의 설정·분할·변경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에게 면허의 발급 요구(어업법 제10조, 제22조)해야 함
 - 이 때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또는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제67조)는 어업권 행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장의 사용에 관한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어업법 제67조)
 - 어업법 제10조(어업면허) 어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함
 - 어업법 제11조(면허내용 등의 사전결정) ① 도도부현 지사는 그 관할하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상의 종합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생산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어업권의 내용인 어업의 면허를 할 필요가 있으며, 어업의 면허를 하여도 어업조정 및 기타 공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어업의 면허에 대하여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어업종류, 어장의 위치 및 구역, 어업시기 및 기타 면허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사항, 면허예정일, 신청기간, 정치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그 지역지구(자연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당해 어업의 어장이 속한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말한다), 공동어업에 대하여는 그 관계지구를 정해야 함

- 어업법 제22조(어업권의 분할 또는 변경) ①어업권을 분할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함
- 어업법 제67조(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 ①해구어업조정위원회 또는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도모하고, 어업권 또는 입어권의 행사를 적절히 하며, 어장의 사용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하며,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업자의 수에 관한 제한, 어장의 사용에 관한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단, 광역해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성 장관이 일부 사항에 대한 설정 또는 변경 지시가 가능함(면허내용, 면허예정일, 신청기간 및 지역지구/관계지구)
 - 이 때 광역어업조정위원회(제68조)가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또는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함
 - 어업법 제11조 ⑥농림수산성 장관은 도도부현의 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견지에서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도모하고, 어업권 및 입어권의 행사를 적절히 하며, 어장의 사용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하며,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사항, 면허예정일, 신청기간 및 지역지구 또는 관계지구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68조(광역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 ① 광역어업조정위원회는 도도부현의 구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견지에서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도모하고, 어업권 또는 입어권(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성 장관이 직접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을 행하는 어장과 관련된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한정한다)의 행사를 적절히 하며, 어장(동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성 장관이 직접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사용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하며,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업자의 수에 관한 제한, 어장의 사용에 관한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②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또는 연합해구어업조정

위원회의 지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에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③ 농림수산성 장관은 광역어업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의 지시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대하여는 제67조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 중 「도도부현 지사」는 「농림수산성 장관」으로, 동조제8항 중 「해구어업조정위원회 또는 연합해구어업조정위원회」는 「광역어업조정위원회」로 봄

- 면허 취득 요건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 제14조의 적격성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 제14조(면허에 대한 적격성) ① 정치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면허에 대한 적격성을 가지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함
 - 공시한 어업면허 내용과 다른 신청이 있는 경우
 - 어업권의 과도한 집중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 면허어장 부지 또는 수면의 타인 소유에 대한 점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면허의 우선순위의 경우 어업자 또는 어업종사자(어민-기타), 기타의 순서로 정하고 있음
 - 어업법 제17조
- 어업권의 기간은 면허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 구획어업권(특정구획어업권 및 진주양식 구획어업권 제외) 및 공동어업권의 기간은 면허일로부터 10년임
 - 어업법 제21조(어업권의 존속기간) ①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면허일부부터 기산하여 진주양식업을 내용으로 하는 구획어업권, 제6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내수면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의 양식업을 내용으로 하는 구획어업권(특정구획어업권 및 진주양식업을 내용으로 하는 구획어업권을 제외한다) 또는 공동어업권은 10년, 기타 어업권은 5년으로 한다.
 - ② 도도부현 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제1항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어업권은 물권으로 토지에 관한 규정 준용함
 - 어업법 제23조(어업권의 성질) ① 어업권은 물권으로 보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②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2편제9장(질권)의 규정은 정치어업권 및 구획어업권(특정구획어업권으로서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가지는 어업권을 제외한다.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같다)에, 동법 제8장 내지 제10장(선취특권, 질권 및 저당권)의 규정은 특정구획어업권으로서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가지는 어업권 및 공동어업권에 적용하지 아니함

(5) 양식어업의 개발·육성

- 양식어업의 진흥·발전과 관련해서는 수산기본법에 의거해 양식업 육성에 관련된 기본 방침이 설정되어 있음
 - 수산기본법은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률로, 기본계획의 수립(10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조정)을 통해 수산정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에 의거해 정부는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개발 기본방향을 설정(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시책을 국가가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수산시책에 관한 기본이념 및 그 실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여 수산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수산물 안정공급의 확보) ② 수산물 공급은 수산자원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고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지속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확실한 실시를 취지로 하여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수산 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해야 함
 - 제3조(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① 수산업에 관하여는 국민에 대하여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명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서 고도화함은 물론 다양화된 국민의 수요에 입각한 어업생산,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육성되고, 어업, 수산가공업 및 수산유통업의 연대가 확보되고, 그리고 어항, 어장 그 밖의 기반이 정비되어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수산시책에 관한 기본이념 (이하 「기본이념」 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및 실시할 책무를 가진

○ 수산기본법에 의거, 수산기본계획 내에 ‘수산물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및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시책’ 에 양식어업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수산물의 안정공급 확보에 관한 시책 : 수산동식물의 양식 추진(제16조) 및 생육환경 보전·개선 시책(제17조)

· 수산기본법 제16조(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의 추진) 국가는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수산 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 동물의 종묘생산 및 방류추진, 양식어장의 개선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제17조(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 보전 및 개선) 국가는 수산동식물의 생육 환경 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질보전, 수산 동식물의 번식지 보호 및 정비, 삼림 보전 및 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시책 : 어장이용 합리화, 재해에 대한 손실 보전, 기반정비 시책 규정(제22조, 24조, 26조)

· 수산기본법 제22조(어장이용의 합리화 촉진) 국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의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장이용의 합리화 촉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제24조(어업재해에 의한 손실보전 등) ①국가는 재해로 인하여 어업의 재생산이 저해될 것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제26조(수산업의 기반정비) 국가는 수산업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고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취지로 하여 어항 정비, 어장 정비 및 개발 기타 수산업기반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6) 질병관리, 어장개발 등

- 한편 양식어장 생산성에 관련된 양식어장 개선 및 질병관리는 ‘지속적양식생산확보법’에 근거해 관련 계획인 어장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지속적양식생산확보법에서는 농림수산대신이 기본방침으로 양식어장 개선목표, 양식어장 개선 및 특정질병 만연방지를 위한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양식어장 개선 및 특정질병 만연방지를 위한 체제정비에 관한 사항, 기타 양식어장의 개선 및 특정질병 만연방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양식어장의 개발은 ‘어항어장정비법’에 근거, 어항어장정비사업에 의해 추진할 수 있음
 - 동법에서는 양식장·증양식장의 개발 이외에도 어장 생산성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퇴적물 제거, 어장 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항어장정비법 제4조(어항어장정비사업의 의의) 이 법률에서 ‘어항어장정비사업’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말함
 - 뛰어난 어장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상당규모의 수면에 대해 실시하는 어초 설치, 수산동식물 증양식장 및 양식장 조성, 기타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및 어장으로서 효용이 저하되고 있는 수면에 있어 그 효용을 회복하기 위한 퇴적물 제거, 기타 어장 보전을 위한 사업
 - 제6조의3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어장정비사업기본방침에 근거해 어항어장정비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됨
 -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은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개선 동향 및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 추진 동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2) 미국

(1) 1980년 국가양식법 (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

○ 법의 특징

- 2012년 현재까지도 양식에 대한 연방차원의 모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양식관련 단일법임

○ 양식 관련 정의

- 양식의 개념을 제한된 환경에서 수중생물류를 번식하고 키우는 것으로 정의함 (Section 3(1): The term "aquaculture" means the propagation and rearing of aquatic species in controlled or selected environ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cean ranching (except private ocean ranching of Pacific salmon for profit in those States where such ranching is prohibited by law).
- 양식시설은 미국의 각주에 소재하며 양식에 사용되는 특정 토지, 구조물, 또는 부속물을 의미함. 양식에 사용되는 실험실, 부화장, 연못, 어로, 인큐베이터 등의 설비를 지칭함 (Section 3(2): The term "aquaculture facility" means any land, structure, or other appurtenance that is used for aquaculture and is located in any State. Such term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y laboratory, hatchery, rearing pond, raceway, pen, incubator, or other equipment used in aquaculture.)
- 수중생물류는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양서류, 파충류 및 수중식물을 포함하는 개념임 (Section 3(3): The term "aquatic species" means any species of finfish, mollusk, crustacean,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 amphibian, reptile, or aquatic plant.)

○ 국가양식법(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 법의 취지 (Section 2)

- 주로 양식수입물에 의존하는 미국의 수산물시장을 고려할 때 미국양식업의 발전가능성이 큼. 미국의 여러 지역이 양식에 적합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양식발전을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어떤 경우는 양식발전을 가로막는 국토해양정책에 의하여 결정됨

- 따라서 미국 내에서 양식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함
 - Section 2(b)에서 (1)국가양식정책을 선언, (2)국가양식개발계획을 수립, (3)농무부 내에 국가양식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농무부장관이 그 의장이 되며 양식관련 정보를 관할하고 농무부가 연방정부 내에서 국가양식관련 선도적인 기관이 됨, (4)경제의 공사영역에서 양식활동과 관련프로그램을 장려함이 각각 본법의 취지임을 규정함)
- 국가양식개발계획 (Section 4)(양식업 육성방안 및 관련 국가프로그램, R/D방안, 정책)
- 본법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농무부장관은 상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및 기타 적절한 연방공무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국가양식발전계획(National Aquaculture Development Plan)을 수립할 의무를 가짐
 - 국가양식발전계획 내용
 - (a) 양식발전에 적합한 어종의 특정
 - (b) 기술 지원, R/D, 교육의 연장, 훈련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공사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권유
 - (c) 양식어종에 적합한 양식시설, 수질관리, 쓰레기의 처리, 경제적 사료의 개발과 영양, 시장개발, 종묘의 공급과 개발 등을 포함
 - (d) 본 계획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포함
 - (e) 양식업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사
 - (f) 타 연방기관의 기존조치와 제도와 충돌 없이 이루어지도록 농무부장관이 조치할 의무
 - 관련 장관들은 본 계획의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의무가 있음
 - 양식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여 기록유지하며, 상업적 양식에 적합한 어종을 조사하며, 양식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연방프로그램과 활동을 조사, 양식발전을 저해하는 경제, 법, 사회의 제도를 조사하도록 함
- 격년보고서 제출의무 (Section 5)
- 농무부장관은 격년으로 의회에 미국의 양식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보고서에는 위의 국가양식개발계획이 수정된 경우 해당 내용과 농무부장관의 언급과 권고사항이 포함됨

- 양식관련연방조정협의위원회 설립 (Section 6)
 - 농무부장관이 의장으로서 기관간 양식관련 협의조정 연방위원회를 설립함
 - 본 위원회의 목적은 양식조사업무에 대한 국가의 수요를 검토, 연방정부의 양식에 대한 노력이 효율적이며 적합한 지 검토, 양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 연방기관간의 합동프로그램을 장려, 연방정부에 양식관련 이슈에 대한 권유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 양식업 자본요건의 검토 (Section 8)
 - 관련장관들은 본법 제정 후 12개월 이내에 미국 양식산업의 자본요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의무를 가짐
 - (a) 본 조사에는 양식업발전을 억제하는 자본요건을 포함
 - (b) 연방재정보조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
 - (c) 또한 정상적인 자금공급채널이나 연방정부의 재정보조프로그램을 통한 것이 아닌 양식업계의 자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양식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 조사 (Section 9)
 - 본법 제정후 12개월 이내에 관련 장관들은 미국의 양식산업을 저해하는 연방과 주의 제도에 대한 조사를 행할 의무를 부담함
 - 특히, 상업적인 발전을 막는 연방규정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양식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어떠한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10 곳의 상업적 양식업체를 사례조사 하도록 함

(2) 국가외해양식법(안)(National Offshore Aquaculture Act of 2007)

- 도입 논의 배경과 특징
 -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대체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 3해리이상 200해리까지의 연방수역에서 연방정부의 양식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물수입대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친환경 양식업의 촉진을 위하여 본 법안이 제안됨

- 본 법안은 환경론자의 반대 등을 이유로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법으로 성립되지는 못하였으나¹⁾ 친환경양식법에 대한 일종의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양식 관련 정의

- 근해양식 (offshore aquaculture)이란 근해양식시설의 운영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즉, 미국의 EEZ지역 내에서 해양 생물류를 번식, 육성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것을 포함함

(Section 3(f): The term “offshore aquaculture” means all activities, including the operation of offshore aquaculture facilities, involved in the propagation and rearing, or attempted propagation and rearing, of marine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Exclusive Economic Zone.)

- 고래와 새를 제외한 해양생물류로 양식의 대상을 정의함

(Section 3(e): The term “marine species” means finfish, mollusks, crustaceans, marine algae, and all other forms of marine life, excluding marine mammals and birds.)

- 양식시설은 근해양식을 위하여 설치 또는 사용되는 구조물 및 정착생물의 양식을 위한 해저의 토양도 포함함

(Section 3(g): The term “offshore aquaculture facility” means: 1) an installation or structure used, in whole or in part, for offshore aquaculture; or 2) an area of the seabed or the subsoil used for offshore aquaculture of living organisms belonging to sedentary species.)

○ 법의 취지 (Section 2)

- 근해양식업을 지원함으로써 식량과 소중한 부산물을 생산을 고취시킴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을 위하여 어족자원의 보호와 해양생태계를 보존을 고려한 입법을 지향함
- 사적인 투자의 촉진을 유도하여 근해양식업을 진흥시키고자 함

1) The Library of Congress website, <http://thomas.loc.gov/home/thomas.php>

- 미국인이 소비하는 수산물의 80%이상이 수입에 의한 것이고 그 수입물의 50% 이상이 양식 수산물임을 감안하여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연방정부의 과제를 반영함
- 적용수면 (Section 3)
 - 해안선에서 3해리이상 200해리까지의 연방수역에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내수면과 3해리까지는 주의 관할사항)
- 근해양식 허가(Permit)의 기간 (Section 4)
 - 상무부장은 일반적으로 20년의 허가기간을 허용함 (Section 4(b)(2)(C)) (단, 양식과학에 대한 파일럿테스트 등의 경우에는 예외)
 - 상무부장의 재량으로 각각 최대 20년씩 갱신 가능
 - 미국 국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인간의 안전이나 해양생태계나 해양생물류,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긴급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무부장의 취소, 정지, 수정요구 가능함 (Section 4(d)(7))
- 인허가 조건 (Section 4)
 - 허가의 인적 요건: 근해양식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미국의 법률상 거주자, 2) 미연방이나 주법 하에서 설립된 회사, 파트너십, 사업체, 또는 3) 앞의 1)과 2)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미국법과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를 한 뒤 법적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가능 (Section 4(b)(2)(A))
 - 양식허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가능(Section 4(b)(2)(E))
 - 상무부장이 허가증의 발행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발행을 거절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설정가능 (Section 4(b)(3))
 - 상무부장은 허가료나 허가기간 종료후 양식설비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미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Section 4(c)(3))

- 만약 연안의 주정부에서 새로운 양식업허가와 관련한 반대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안의 주의 해안선에서 12해리이내에 신규 양식시설에 대한 허가 금지(Section 4(d)(2))

- 허가절차 (Section 4)
 - 상무부장은 바다를 관장하는 주정부와 다른 연방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근해양식업의 허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허가절차와 본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함 (Section 4(a)(1))
 - 그 규정에는 본 법하에서의 허가를 발행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절차와 기준 (Section 4(a)(1)(A))
 - 허가된 양식사업이 그 허가된 기준을 준수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하는 절차(Section 4(a)(1)(F))
 - 원허가권자가 허가를 이전하는 경우에 허가를 양수받는 자가 Section 4(b)(2)(A)에서 요구하는 허가권자의 인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Section 4(a)(1)(F))
 - 양식허가신청자는 상무부장관에게 원하는 장소와 사업의 종류, 어종 등 허가절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시하여 신청(Section 4(b)(1)(A))
 - 양식허가신청이 완료된 이후 120일 이내에 상무부장관은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허가과 불허가를 결정할 의무 부담함
 - 만약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무부장관은 연기되는 이유와 향후의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의무 부담 (Section 4(b)(1)(B))

- 허가절차에 있어서의 친환경적 조건 (Section 4)
 - 양식허가절차에는 있어서 요구되는 환경적 조건은 다음의 예시적 사항을 고려하여 적시되어야 함 (Section 4(a)(4))
 - (a) 자연어류자원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즉, 전염병 전이의 방지, 환경적인 악영향을 가져오는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
 - (b) 양식업의 장소에서 양식업의 누적적인 효과
 - (c) 환경감시, 관련 데이터의 축적, 허가권자에 의한 보고내용

(d) 양식 어종들에 대한 기록이나 양식 생산 어종들에 대한 재고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체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 다른 친환경 법률들과의 충돌 방지

- 허가된 양식사업의 활동이 미국수산자원보존관리법상의 수산자원보존조치와 충돌하지 아니함을 상무부장관이 확인할 의무 존재함(Section 4(d))

○ 양식업 육성방안 국가프로그램 및 R&D 정책 (Section 5, 조사와 연구)

- 상무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해양양식기술의 개발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 보유함

- 상무부장관은 양식사료로서 야생어류의 사용을 감소하도록 연구를 진행시킬 의무를 가지며 인간의 건강과 영양에 악영향을 미치는 양식수산물, 수산물 처리쓰레기 대체를 위하여 연구할 의무 부담함

(3) 시사점

○ 1980년 국가양식법의 특징과 시사점

- 양식에 관한 연방차원의 단일법으로 농무부장관이 국가양식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미국 양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양식산업 전반에 대한 R&D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무부장관이 의장이 된 양식조정연방위원회의 설립, 격년의회보고서 발간하도록 의무사항 규정함

- 특별히 본법이 적용되는 적용수면, 양식업 관련 인허가기간, 인허가조건 등에 대한 내용과 친환경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은 미비함

○ 2007년 국가외해양식법(안)의 특징 및 시사점

- 상무부장관이 양식업에 대한 허가(Permit)를 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세부적인 하위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상무부장관이 양식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관련 조사와 연구를 진행시킬 의무를 부담

- 양식업 허가 절차 전반에서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며, 허가 후 양식업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3) 노르웨이

(1) 양식법 제정배경

- 양식법(Fish Farming Act)이 도입되었던 20년 전에는 기존의 양식회사를 면허제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양식 활동이 보다 책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러나 양식법 개정의 목적과 범위 등이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임
- 1985년 이후 양식업은 상당히 발전을 하면서 소유권/구조, 규모, 생산 기술, 지역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음
 - 더불어 양식산업은 미개척의 생산기회를 기반으로 보다 다각적인 개념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식품 안전성, 건강, 수산자원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 연안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고찰, 시장 접근성이 추후 양식업을 다루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
 -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장법만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양식업의 가치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낙관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새로운 법령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미래 지향적인 양식업 발전 및 공공행정활동을 위한 보다 현대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노르웨이 수산연안부 (Ministry of Fisheries and Coastal Affairs)는 다음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양식법을 제정함
 - **양식산업의 성장과 혁신:** 노르웨이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양식업의 수익성 증대 및 혁신
 - **양식산업 및 공공행정업무의 단순화:** 효율성 극대화 및 사용자 편의성 추구

- 환경: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제도
- 연안지역에서 타 토지이용자와의 이해관계: 토지이용의 효율화

(2) 양식법의 주요 특징

- 신규 제정될 양식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양식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연안지역에서의 양식업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경제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수익성 있는 활동을 통해 양식업자들의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수단인 양식법은 연안지역의 환경 및 토지이용과 같은 국익을 책임있게 관리함으로써 양식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
 - 이를 통해 양식업의 목적이 달성될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 및 지역사회 의 이익 또한 실현될 수 있음
- 양식업의 면허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어장법(Fish Farming Act)과 바다목장법 (Sea Ranching Act)에 따르면, 양식업 및 바다목장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양식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 금지 행위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면허를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제반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수산당국이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가능함. 즉, 해양환경보호와 연안지역의 적합한 사용, 양식업 시설의 설치, 운영 및 폐업 등이 보장되어야 할 요소임
- 면허의 주요 내용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어종을 정해진 양만큼 생산하도록 함
 - 특정 장소에서 특정 어종에 대한 생산 면허는 하나의 동일한 의사결정을 통해 할당되는 것이 일반적임
 - 면허가 두 개 이상의 다른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할당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하나의 면허로 취급됨
- 연어와 송어 양식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면허할당이 이뤄지고 있음
 - 연어와 송어에 대한 양식면허는 ‘할당라운드’라고도 하는데, 이는 연어 및 송어 면허가 실제 할당될 면허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면허 신청자들은 경쟁적으로 할당을 받게 됨

- 2002년부터 면허 취득시 면허가격을 지불하는데, Nord-Troms와 핀마르크 지역의 건당 면허가격은 4백만 크로네(NOK), 나머지 지역은 5백만 크로네 수준임
- 면허 가격은 면허할당 대상자를 상대로 경매 혹은 입찰에 의해 결정됨
 - 면허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간 추첨을 통해 이뤄짐
 - 면허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을 통해 신청자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면허가 할당됨
- 이 때 신청자 우선순위는 2단계 추첨을 통해 결정됨
 - 1단계에서는 신청자가 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받음. 이 기준에는 대표적으로 자금조달능력, 실행방안, 전문성 등이 포함됨. 만약 신청자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2단계에 참여할 수 있음
 - 2단계에서 신청자는 추첨이나 입찰에 참여하게 됨. 동일한 신청자 단체로부터 지정신청인을 추첨하는 방안과 신청자들을 특정 카테고리 분류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이 있음. 만약 입찰을 통해서도 면허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허할당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됨
- 양식법은 양식업체의 소유 주체가 아니라 양식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초점이 변환됨
 - 즉, 수산연안부의 양식업 소유권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반면, 양식업 운영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함으로써 양식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최적의 산업구조를 모색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수산연안부가 연어와 송어에 대한 면허할당을 규제하고 면허의 지역할당을 규정하는 조항은 양식법에 그대로 유지되지만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새로 개정될 양식법에는 면허의 양도와 담보권이 도입됨
- 양식 면허제에서 양도권과 담보권을 도입하게 된 목적은 양식업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업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질서정연하고 예상 가능한 규범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임

- 면허의 양도 및 담보권 도입으로 양식업계는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고, 자본 접근성도 향상됨. 이로 인해 일반적인 상업거래를 유연하게 영위하기 위한 양식업계의 요구가 제도로 폭넓게 반영됨
- 특히 담보권으로 인해 양식업 회사의 신용도 개선 자본차입의 용이, 대출 조건 완화, 대출약정 기간 또한 단기에서 장기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음
- 양식업체가 파산할 경우 면허의 가치가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도 면허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이 자사의 선취특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더불어 면허양도권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투자 의지 강화 효과 및 자산 매각이 더욱 용이해지고 투자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3) 양식법의 주요 내용

- 양식법의 목적
 - 지속 가능한 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양식업의 수익성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연안지역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양식법의 대상 범위
 - 양식법은 수중유기물 생산과 관련된 법률임
 - 수중 유기물이라 함은 수중, 수면 혹은 해안가에 서식하는 해양 동식물을 일컫음. 이러한 수중 생물의 종량, 크기, 개체수, 특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양식업으로 규정함
 - 단, 양식을 목적으로 한 소하성 연어와 담수어류 생산은 연어 및 담수어 등에 관한 법 (Act of 15 May 1992 no. 47)에 따라 규제됨
- 양식법의 지리적 범위
 - 육상영토 및 영해
 - 노르웨이 경제수역 관련법 (Act of 17 December 1976 no.91) 관할지역
 - 대륙붕²⁾

2) 이 법은 스발바르 제도 및 안마웬섬에는 적용되지 않음. 노르웨이 국왕은 이 법의 전부 혹은 일부가 스발바르제도 및 안마웬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식법 적용 조항과는 차별화된 지역사정을 고려한 세부 조항도 마련할 수 있음

○ 양식면허

- 수산연안부는 제6장과 제7장에 따라 양식면허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 19장에 의거하여, 양도에 의한 면허취득도 가능함
- 양식면허등기부에 면허등록절차 없이는 양식업에 종사할 없음
- 양식면허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어종의 생산을 허용하며 이 장소는 면허의 범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함

○ 면허할당을 위한 일반적 조건

- 수산연안부는 다음의 신청자에 한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있는 양식활동
-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보호방안 관련 (제15절) 요구 사항의 충족여부
- 제16절에 따라 토지이용 이해관계 고려
- 아래 법과 관련한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 식품생산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법 (Act of 19 December 2003 no. 124)
-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련법 (Act of 13 March 1981 no. 6)
- 항만 및 항로 관련법 (Act of 8 June 1984 no. 51)
- 수로 및 지하수 관련법 (Act of 24 November 2000 no. 82)

○ 환경문제 고려

- 양식어장 시설은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설치, 운영, 철거되어야 함
- 수산연안부는 양식면허보유자 혹은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평가실시를 의무화함
- 양식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올바른 설계, 정확한 작동이 요구되며, 사용자는 사용상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함
- 양식업종사자는 수중 유기물과 양식어장시설 및 장비의 철거 등 양식업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될 경우, 해당 양식지역 및 인근 지역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방류된 어류를 재포획해야 함. 이와 관련해 수산연안부는 원상회복 및 재포획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수산연안부는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양식업을 금지하거나 양식업 활동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양식면허는 아래 내용과 배치될 경우 면허 발급이 금지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법(Act of 14 June 1985 no. 77)에 따라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배치될 경우
 - 자연보호관련법 (Act of 19 June 1970 no. 63)에 따라 해양환경보존방안이 확정되었을 경우
 - 문화유산보존관련법 (Act of 9 June 1978 no. 50)에 따른 해양환경보존방안이 확정되었을 경우
 - 단, 위와 같은 면허발급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획관리청 및 환경당국이 동의할 경우에는 면허발급이 가능함
- 양식면허의 등록, 양도 및 담보
 - 양식면허는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함
 - 양식업 면허는 양도 가능함
 - 양식면허는 담보물이 될 수 있으며 담보권은 양식등기부 면허 기록부에 기재되는 즉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됨
 - 노르웨이 주정부가 담보권을 확보할 경우, 이행강제금(제28절), 실행비용의 변제(제29절), 및 위반시 벌금 (제30절) 등 면허에 대한 모든 채무관계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보장받게 됨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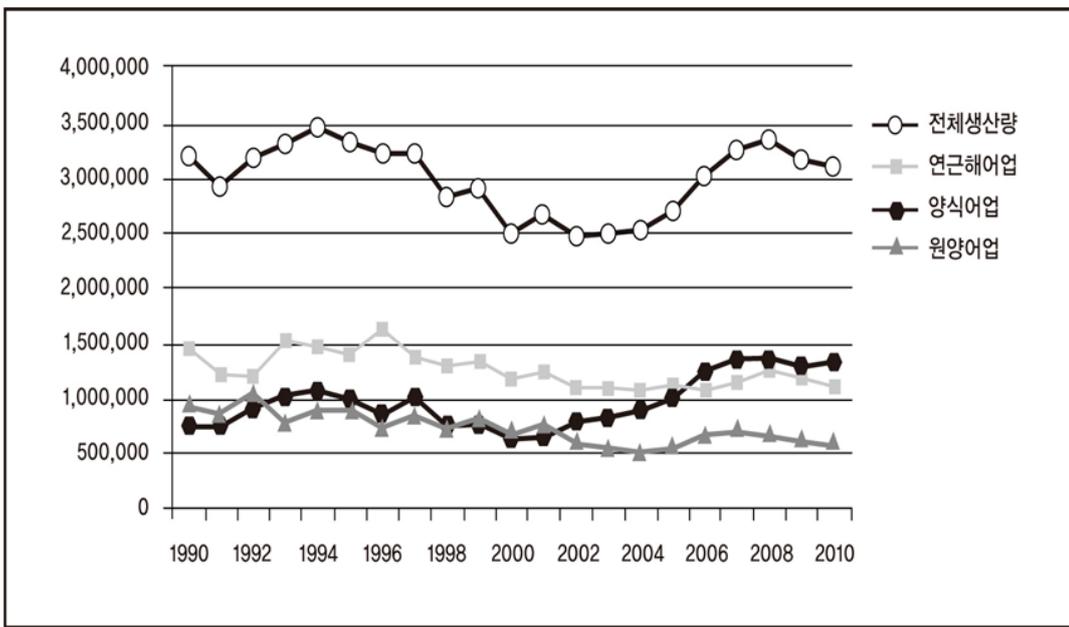
- 노르웨이 양식법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특징을 지님
- 동법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양식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양식업 인허가 처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조달능력, 실행방안,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고 있음

제4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제1절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

1. 산업적 관점

- 양식수산물의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비중 계속 증가
 - 2006년 양식생산량이 연근해산을 추월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4% 점유



〈그림 4-1〉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 추이

- 양식어가 및 어가인구 30% 이상 점유
 - 양식어가는 33% 이상, 어가인구는 32% 점유
 - 어가수와 어가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양식어가 및 인구의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보다 낮음

〈표 4-1〉 우리나라 어가 및 어가인구

단위 : 천가구, 천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감율
전체 어가	어가수	82	80	77	74	71	69	△1.8
	어가인구	251	221	212	202	192	184	△3.4
양식 어가	어가수	25	24	24	23	22	23	△1.0
	어가인구	75	64	64	62	59	59	△2.6
비율	어가수	30.5	30.0	31.2	31.1	31.0	33.3	
	어가인구	29.9	30.0	30.2	30.7	30.7	32.1	

- 양식어가소득이 전체어가 소득보다 상회
 - 양식어가 소득은 전체어가 소득보다 절대적으로 높고 양식업에 대한 선호도 높음

〈표 4-2〉 우리나라 어가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율
전체어가 평균(A)	23,916	28,028	31,176	33,945	35,696	5.9
양식어가(B)	25,477	34,221	31,674	35,243	37,405	5.6
비중(B/A)	1.07	1.22	1.02	1.04	1.05	-

- 양식수산물 수출비중 23%로 계속 증가할 추세로 전망
 - 향후 수산물 수출의 가장 중요한 품목은 양식산일 능성이 높음

〈표 4-3〉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율
수출	수산물 전체(A)	1,194	1,090	1,228	1,448	1,511	1,798	8.5
	양식 수산물(B)	324	306	260	312	334	418	5.2
	비중(B/A)	27.1	28.0	21.2	21.6	22.1	23.3	-
수입	수산물 전체(A)	2,387	2,774	3,060	3,078	2,894	3,457	7.7
	양식 수산물(B)	230	269	294	354	234	331	7.6
	비중(B/A)	9.6	9.7	9.6	11.5	8.1	9.6	-

- 수산물 공급, 소득 및 수출 등 산업적 관점에서 양식업의 중요 증대
 -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은 양식업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
 - 국민들의 식량공급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그리고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식업의 발전 필요

2. 정책적 관점

- 양식산업은 미래생명산업시대의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
 - 양식산업은 다가올 생명시대에 전망있는 산업으로 평가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량공급원으로서 양식산업 발전을 중요 정책으로 채택
- 우리나라도 양식산업을 식량공급, 수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채택
 - 갯벌양식, 빌딩양식, 수출용 양식단지 조성 등 우리나라 주요 수산정책이 양식과 연관되어 있음
- 법과 집행조직의 통일성 유지
 - 현행 우리나라 양식관련법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등에 산재해 있고, 관련부서도 어업정책과,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에 분산되어 있어 법과 정책집행력이 떨어짐

3. 제도적 관점

- 양식산업 전반을 다루는 법체계 필요
 - 양식산업은 종묘생산→양식→판매와 양식을 위한 관련산업이 연관된 종합적인 산업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양식관련법은 다수의 법에 양식관련 내용이 분산돼 있고, 양식산업과 관련산업을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다수의 법에 산재된 양식관련법을 통합하여 업계 편의성 제고 및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간편한 법체계 필요

- 기존의 양식관련제도는 어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양식업 발전에 한계
 - 양식업을 어업의 하나로 간주하여 공유수면에서의 양식에 대한 수많은 규제중심의 제도의 한계 노출
 - 새로운 양식방법의 개발 및 도입, 젊은 인력과 자본의 유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인한 양식업 발전 저해
 - 특히 공유수면에서의 면허제 및 기존 양식업자 우선권제도로 인한 양식장의 효율적 이용의 한계

- 양식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보다는 규제중심의 제도
 - 양식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법정계획 수립 및 집행, 새로운 양식의 도입에 대한 유연성, 양식관련산업의 육성지원, 양식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및 글로벌산업화에 대한 제도 미비

- 수산선진국 양식단독법 제정 추세
 - 노르웨이, 미국, 일본 등 수산선진국에서는 양식산업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양식법 제정을 추진중임

제2절 양식산업의 범위 및 개념 설정

1. 목적 및 범위

- 기존의 양식업은 수산업법에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목적 기술
 - 수산업의 기본제도라 할 수 있는 수산업법에서 포괄적으로 법률의 목적을 기술함에 따라 양식산업 관련 법률제정의 목적 기술에 한계
 - 양식산업관련 제도를 제정하는 분명한 목적을 기술할 필요성 제기
 - 따라서 양식산업에 관한 법률제정은 양식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 및 목표가 분명하게 표명되는 목적 재정립 필요
 - 목적 : 이 법은 양식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 양식업을 수산업중 어업의 한 범주로 간주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동일시
 - 양식업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것으로서 채포의 의미를 가진 어업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됨
 - 양식업은 이미 판매의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한 수산물을 채포하는 것은 이미 양식업이란 의미 속에 포함됨
 - 따라서 양식업과 어업을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법에서는 양식업을 수산종묘생산업과 양식업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양식산업의 범위를 축소
 - 기존의 양식업의 정의는 양식어업과 기르는어업으로 구분하고, 기르는어업에는 양식어업과 종묘생산업을 포함시키고 있어 일반적인 양식산업의 개념과 상이함

- 양식업 범위를 단순한 사업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국민경제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음
- 또한 양식산업을 둘러싼 전후방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전체적인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산업화에 한계 노출
- 따라서 양식관련산업을 포함한 양식산업의 범위 재설정 필요

2. 개념 및 용어정의

○ 양식

- 수산업법상 양식의 정의는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
- 일반적으로 양식이란 종자 및 종묘생산과 양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종자 및 종묘생산을 제외하고 있음
- 양식을 할 생태환경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 학술적으로나 외국법의 사례를 보면 자연적인 상태의 양식장소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통제된 환경생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됨
- 따라서 양식 대상 환경에 대한 개념 정의와 수산종묘 생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립 필요

○ 양식산업

- 수산업법에서는 기르는어업을 일반적인 양식업 또는 양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편적인 개념에 어긋남
- 또한 어업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과 불일치하고 있으며,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포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이라고 막연하게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양식산업을 양식업, 수산종자업, 수산종묘업, 양식관련사업으로 개념을 재분류하고 용어의 정의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식장
 - 수산업법상 양식을 하는 장소는 면허어업의 대상인 양식어업에 대해서만 어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육상양식장, 수산종묘생산지에 대한 장소적 개념설정이 부재하므로 양식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필요함
- 양식시설
 - 양식에 필요한 요건은 양식장, 어선 및 어구, 기타 시설물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념정의를 없으므로 양식장, 어선 및 어구 외에 시설물에 대한 개념정의를 필요함
- 양식물과 양식수산물
 - 양식중인 수산동식물에 대해서는 양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양식을 완료하여 출하하는 양식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통상적으로 수산물로 간주됨
 - 또한 양식한 수산물의 용도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여 미래의 양식이 추구하는 식량 이외의 용도로 양식하는 경우를 간과하고 있음
 - 따라서 양식물과 양식수산물을 구분하여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양식수산물의 경우 용도를 다양하게 하여야 할 것임
- 양식업자와 종사자
 - 수산업법상 양식을 경영하는 자는 어업자로 분류하고 있고 그 종사자는 어업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양식업을 어업과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양식업자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수산종묘업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양식의 개념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별도의 사업인만큼 수산종자업자 및 수산종묘업자에 대한 구분도 필요함
 - 또한 종사자의 경우도 어업종사자가 아닌 양식업종사자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식관련사업
 - 양식산업의 전후방산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양식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양식관련사업에 대한 규정과 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함

3. 적용수면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양식이 가능한 수면으로 규정
 - 「수산업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면
 - 양식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수면

4. 주요 용어 정의

- 양식
 - "양식"이란 통제되거나 선정된 수생생태 환경 하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 또는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산동식물을 번식하고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함
 - 기존의 양식업의 종류는 품종기준과 장소기준, 소유자기준 등 일관성이 부족함. 따라서 새로운 법에서는 장소기준을 원칙으로 정리함
 - "연안양식"이란 바닷가로부터 제8호 외해 내측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외해양식"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육상해수면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빌딩양식"이란 육상의 빌딩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양식수를 재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양식하는 것을 말함
- 양식산업 및 관련산업
 - "양식산업"이란 양식업, 수산종자업, 수산종묘업 및 양식관련사업을 말함

- "양식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하천·댐·호수·늪·저수지·인공적으로 조성한 담수나 기수(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수산종자업"이란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수산종묘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
-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산업으로서 양식장 정화·정비업, 양식사료업, 수산질병관리업, 양식기자재업, 양식시설물설치업, 양식수산물 운반·가공·유통·판매업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함
- 양식장정화·정비업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양식장의 피해를 막고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양식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
- 양식장 및 양식시설
 - 양식장 : 양식을 하는 해수면 및 내수면을 포함한 모든 장소
 - 해수면양식장 : 연안 및 외해 양식을 하는 장소
 - 양식시설 :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
- 양식물과 양식수산물
 - 양식물 : 양식장에서 양식중이거나 수산종묘생산시설에서 생산중인 수산동식물
 - 양식수산물 : 양식을 통하여 생산된 식용·공업용·레저용·교육용 등 모든 수산물
- 양식업 및 관련산업 경영자와 종사자
 - "양식업자 등"이란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양식업자), 수산종자업을 영위하는 자(수산종자업자), 수산종묘업을 영위하는 자(수산종묘업자)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짐
 - ※ 어업인과 구별될 경우 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함

-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자 등을 위하여 양식업, 수산종자업 또는 수산종묘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짐
- "양식기업"이란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법인
- "양식관련업자"란 양식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 "양식관련업종사자"란 양식관련업자를 위하여 종사하는 자

제3절 양식산업발전법(안)

1. 개요

- 본 법은 기존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장관리법 중 양식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양산업발전법안에 있는 해외양식업은 국내법에서 인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동법에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법 제정시 통합법에서 제외함
- 법안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3개안을 마련함
 - 제1안(개혁안) : 면허제도 폐지, 우선순위 전면개편, 유효기간 전면개편,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 양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대폭 확대하는 법안으로서 가장 개혁적인 법안임
 - 제2안(통합개혁안) : 면허제도 유지, 우선순위 전면개편, 유효기간 전면개편,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 양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대폭 확대 등을 담은 법안으로 개혁적이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것임

- 제3안(통합안) : 면허제도·우선순위·유효기간 유지,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고, 개혁적이지는 못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법안임
- 법안의 제목은 여러 가지가 검토되었으나 「양식산업발전법(가칭)」으로 설정함
 - 수산양식산업법, 수산양식산업육성법, 수산양식산업육성발전법, 수산양식산업법 등이 검토되었으나, 수산이란 용어는 이미 양식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삭제
 - 육성과 발전중 발전이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육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육성을 삭제
 - 따라서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법안의 가제목을 정함
- 법안은 크게 7장으로 구성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의 준용 및 적용범위를 포함함
 - 기존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장관리법의 내용을 수용하되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재조정함
- 제2장 양식산업 발전정책 등에서는 동법이 양식산업발전법이므로 이를 위한 양식산업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회 설치, 양식장 이용개발 계획 수립 등을 담음
 - 기존 수산업법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을 수용하고, 기르는어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폭 확대 수정함
 -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 방향 수립, 산업구조개선 및 전환에 관한 촉진 근거 그리고 양식산업발전심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면 재편함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에서는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개혁안에서는 면허제도를 허가제도로 전환하고, 개혁안과 통합개혁안에서는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제 도입, 유효기간 조정과 우선순위를 개편
 - 통합법에서는 기존의 면허, 허가 및 신고제도를 그대로 수용함

- 제4장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에서는 양식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장정화 및 환경개선 사업실시 근거를 마련함
 - 기존의 어장관리법중 양식장에 관련된 법 규정을 전면 수용함. 다만 현행 어장관리법이 현실과 괴리가 많아 개정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추후 개정시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
- 제5장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서는 양식산업 육성지구, 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조세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기존 수산업법에서도 기르는어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동법에서는 이를 확대개편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과 조세 특례사항을 전면 확대보완
 - 공단설립, 양식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신설하여 양식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코자 함
- 제6장 보칙에서는 손실보상, 포상, 권한의 위임과 위탁, 청문, 수수료 등을 규정함
 - 대부분 기존의 법률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포상의 범위를 확대함
- 제7장 벌칙에서는 벌칙, 몰수,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함
 - 기존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벌칙간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함
- 3개 법안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은 각 각 68개, 70개 및 69개로 구성되어 있음

〈표 4-4〉 양식산업발전법의 세 가지 시나리오

장제목	1안(개혁안)	2안(통합개혁안)	3안(통합안)
7개장	68개 조문	70개 조문	69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조(적용범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조(적용범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양식산업 발전정책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제3장 양식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제12조(양식업의 허가) 제13조(수산종자 및 종묘업의 허가) 제14조(양식업 등의 신고) 제15조(허가의 결격사유) 제16조(허가 및 신고의 금지) 제17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18조(양식업허가의 우선순위) 제19조(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제20조(양식업의 심사·평가) 제21조(한정양식업 허가) 제22조(허가의 변경·폐업 등) 제23조(양식장 등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24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25조(휴업 신고 및 허가 포기의 신고) 제26조(양식산업의 개시 등) 제27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28조(임대차의 금지) 제29조(허가·신고의 취소) 제30조(허가 또는 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제31조(어촌계 등의 양식장관리)	제12조(양식업의 면허) 제13조(어업권의 준용규정) 제14조(양식업 등의 허가) 제15조(양식업 등의 신고) 제16조(면허 및 허가의 결격사유) 제17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금지) 제18조(면허 및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19조(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제20조(양식업 등 허가의 우선순위) 제21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제22조(양식업의 심사·평가) 제23조(한정양식업면허) 제24조(면허, 허가의 변경·폐업 등) 제25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26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27조(휴업 신고, 면허 및 허가 포기의 신고) 제28조(양식업 등의 개시 등)	제12조(양식업의 면허) 제13조(어업권의 준용규정) 제14조(양식업 등의 허가) 제15조(양식업 등의 신고) 제16조(면허 및 허가의 결격사유) 제17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금지) 제18조(면허 및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19조(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제20조(양식업 등 허가의 우선순위) 제21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제22조(한정양식업면허) 제23조(면허, 허가의 변경·폐업 등) 제24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제25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제26조(휴업 신고, 면허 및 허가 포기의 신고) 제27조(양식업 등의 개시 등) 제28조(다른 사람에 의한

	제32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33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34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0조(임대차의 금지) 제31조(면허·허가·신고의 취소) 제32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제33조(어촌계 등의 양식장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35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36조(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배 금지) 제29조(임대차의 금지) 제30조(면허·허가·신고의 취소) 제31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제32조(어촌계 등의 양식장 관리) 제33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35조(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	제36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37조(양식장환경의 조사) 제38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제39조(허가동시갱신) 제40조(양식장휴식) 제41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제42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43조(양식장의 관리의무) 제44조(양식업자의 양식장 관리 의무)다. 제45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제46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39조(양식장환경의 조사) 제40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제41조(면허·허가동시갱신) 제42조(양식장휴식) 제43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제44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45조(양식장의 관리의무) 제46조(양식업자의 양식장 관리 의무)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제49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제51조(양식장정화·정비업 영입의 승계) 제52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제37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38조(양식장환경의 조사) 제39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제40조(면허·허가동시갱신) 제41조(양식장휴식) 제42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제43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44조(양식장의 관리의무) 제45조(양식업자의 양식장 관리 의무) 제46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제49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영입의 승계) 제51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1조(양식산업 육성지구) 제52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제53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제54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5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53조(양식산업 육성지구) 제54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제55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제56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52조(양식산업 육성지구) 제53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제54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제55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6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56조(손실보상) 제57조(과징금 처분) 제58조(포상) 제5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0조(수수료) 제61조(청문)	제58조(손실보상) 제59조(과징금 처분) 제60조(포상) 제6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2조(수수료) 제63조(청문)	제57조(손실보상) 제58조(과징금 처분) 제59조(포상) 제6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1조(수수료) 제62조(청문)
제7장 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몰수)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몰수)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몰수)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2. 양식산업발전법 1안(개혁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통제되거나 선정된 수생생태 환경 하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 또는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산동식물을 번식하고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식산업"이란 제3호의 양식업, 제4호 수산종자업, 제5호의 수산종묘업 및 제6호의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하천·댐·호수·늪·저수지·인공적으로 조성한 담수나 기수(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종자업"이란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산종묘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산업으로서 양식장정화·정비업, 양식사료업, 수산질병관리업, 양식기자재업, 양식시설물설치업, 양식수산물 운반·가공·유통·판매업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7. "연안양식"이란 바닷가로부터 제8호 외해 내측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해양식"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이하 "외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9. "육상해수면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0. "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1. "빌딩양식"이란 육상의 빌딩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양식수를 재활용하여 집약적으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2. "관상어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해수 및 담수 관상용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3. "양식장"이란 양식을 하는 해수면 및 내수면을 포함한 모든 장소를 말한다.
14.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15. "양식수산물"이란 양식을 통하여 생산된 식용·공업용·레저용·교육용 등 모든 수산물을 말한다.
16. "양식물"이란 양식장에서 양식중이거나 수산종묘생산시설에서 생산 중인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7. "양식업자 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식업자"라 한다), 제4호에 따른 수산종자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산종자업자"라 한다), 제5호에 따른 수산종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산종묘업자"라 한다)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18. "양식업종사자"란 제17호의 양식업자 등을 위하여 양식업, 수산종자업 또는 수산종묘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19. "양식기업"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이하 "양식업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법인을 말한다.
20. "양식관련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양식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4. "양식관련사업종사자"란 양식관련업자를 위하여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5. "갯벌"이란 연중 최고만조시(最高滿潮時)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연중 최저간조시(最低干潮時)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갯벌구역과 「수산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이내의 구역 중 제2호의 갯벌양식어업 대상품종의 양식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양식산업의 허가, 보상 및 재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금지, 처리·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면
2. 양식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수면

제2장 양식산업 발전정책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전·이용, 양식산업의 규모화·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개선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식산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양식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국가 목표와 전략
3.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양식을 위한 양식장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양식산업 발전에 관한 연간 목표와 전략
 2.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을 위한 양식장 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 개발지구 지정 및 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양식장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양식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양식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6.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예산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양식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또는 민간인 조사위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양식장·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출입·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그 토지·양식장·어장 등에 한시적으로 출입·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해수면 및 내수면을 양식장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식업의 허가 및 신고

제12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연안양식업 : 연안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협동양식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외해양식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육상해수면양식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 내수면양식업 :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6. 빌딩양식업 : 도시 또는 도시근교 빌딩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동일 또는 복수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 그 양식수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거나 레저관광에 활용하는 사업
7. 복합양식업 :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양식업 외의 양식업으로서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수면 및 내수면의 동일 양식장에서 2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8. 혼합양식업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 이외의 동식물과 결합하여 양식하는 사업

9. 갯벌양식업 : 법 제2조제25항의 갯벌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10. 관상어양식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해수 및 담수 관상용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허가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양식업의 종류와 협동양식업 양식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양식장의 수심,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수산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해수면양식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허가에 필요한 사항
 - ⑤ 제1항의 동일 종류란 어류, 연체동물,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및 담수조류를 말한다.

제13조(수산종자 및 종묘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수산종자업 및 종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산종자업 :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수산종묘업 : 일정하게 구획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묘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수산 종자 및 종묘의 종류
2. 수산 종자 및 종묘생산 시설기준

제14조(양식업 등의 신고)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양식업, 수산 종자 및 수산종묘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양식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허가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식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허가 및 신고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식업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식업 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양식업 등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양식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12조제1항제1호(연안양식업)·제9호(갯벌양식업) 및 연안양식업 대상수면에서 행하는 제12조제1항제7호(복합양식업) 및 제8호(혼합양식업)의 양식업의 허가를 최초로 하는 경우의 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양식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능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
2. 수산기술자로서 해당 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5.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각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한다.

② 제12조제1항제1호(연안양식업)·제9호(갯벌양식업) 및 연안양식업 대상수면에서 행하는 제12조제1항제7호(복합양식업) 및 제8호(혼합양식업)의 양식업 중 양식업의 허가가 만료되어 새로이 허가하는 경우의 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양식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중 제20조의 양식업 등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자
2. 해당 양식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능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
3. 수산기술자로서 해당 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자
4. 해당 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6.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각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한다.

③ 제12조제1항제5호(내수면양식업) 및 내수면양식업 대상수면에서 행하는 제12조제1항제7호(복합양식업) 및 제8호(혼합양식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양식업의 허가를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양식업 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각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한다.

④ 제12조제1항제3호(외해양식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행정관청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연안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연안양식업 허가를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5.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각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한다.
- ⑤ 제12조제1항제4호(육상해수면양식업)·제6호(빌딩양식업) 및 사유수면 또는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행하는 복합양식업 및 혼합양식업과 제13조제1항(수산 종자 및 종묘업)의 허가의 우선순위는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허가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양식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양식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양식업 허가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식업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양식업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⑧ 협동양식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허가하고, 우선순위는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전·분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의 순서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양식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양식업의 양식장에서 양식장관리 및 양식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양식업의 허가를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허가가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양식업 허가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식업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제19조(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에 따른 양식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식장의 환경, 양식업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7조제7항,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이 법 제20조에 따른 양식업 등의 심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외에는 양식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총 유효기간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3조에 따른 수산 종자 및 종묘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묘생산 환경, 종묘생산업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4조에 따른 신고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지방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0조(양식업의 심사·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 및 양식생산을 위하여 제12조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 등의 심사·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식업 등의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를 연장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양식업의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평가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심사·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양식장의 관리 실태
2. 투입 및 산출
3. 양식 생산 및 매출액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양식업의 심사·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한정양식업 허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3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양식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양식업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허가기간 등을 정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이하 "한정양식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양식업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의 변경·폐업 등) ① 제12조·제13조에 따라 양식업, 수산종자 및 종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3조에 따라 해당 양식업, 수산종자 및 종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업을 폐업하거나 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양식장 등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자 등은 그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자 등이 기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 및 양식업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자 등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양식업자 등은 그 지정받은 양식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4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2조에 따른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휴업 신고 및 허가 포기의 신고) ①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양식업 등을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양식장 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⑤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양식업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양식산업의 개시 등) ① 양식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휴업하여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양식장 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27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양식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임대차의 금지) 양식업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이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장을 행사하는 경우

2. 인공적으로 조성한 개인 또는 법인소유의 해수면 및 내수면

제29조(허가·신고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양식업자 등이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양식업자 등이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양식업자 등이 제28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의 허가 및 신고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권의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허가 또는 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양식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어촌계 등의 양식장관리) 어촌계 및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수산업법」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한다.

제32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그 업의 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자 등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양식업 등의 허가를 받은 양식장,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양식업 등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
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

제36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양식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양식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양식장을 양식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해역(이하 "양식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의 수면 등 양식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양식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양식장환경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식장관리해역별로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양식장 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양식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양식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식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인(이하 "양식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양식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식장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시료의 채취
2. 시설물의 사용
3. 시설물의 제거

⑥ 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양식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양식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양식장휴식이나 새로운 양식업허가의 금지 등 양식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을 양식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양식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양식산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허가동시갱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양식장관리해역별로 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양식장관리해역 중 제18조제9항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장은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양식장관리해역 안에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양식장이 제31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장이 양식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양식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양식장이 제29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양식장이 양식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양식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양식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

하도록 양식업 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양식장휴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이 있는 양식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양식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양식장 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양식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에 따라 양식장휴식을 실시하는 양식장의 휴식기간 중에 양식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중에 양식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하여는 그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양식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장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양식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양식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양식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식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양식장면적 및 양식장위치를 조정하여 양식업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양식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양식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양식장의 관리의무)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양식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양식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청소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양식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양식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양식장청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양식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47조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양식업자의 양식장관리 의무)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이하 “양식업자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 양식 활동 중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식업자 등이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양식업자 등이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양식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양식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양식장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양식장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양식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7조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4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양식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양식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47조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9조(양식장정화·정비업 영업의 승계)** ①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6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양식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1조(양식산업 육성지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양식산업 육성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사업
2. 수산종자의 보존·육종·신품종 개발 및 보급사업
3. 수산종묘의 생산·육성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4. 양식수산물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양식시설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6. 양식사료, 양식수산질병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7. 외국으로부터의 양식산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8. 양식산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9.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① 정부는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양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식산업 동향 및 통계에 관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
2. 양식업 심사·평가업무 대행
3. 양식산업 실태조사
4.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양식장의 개발 및 건설
6. 양식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수출
7. 새로운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양식경영의 컨설팅 및 교육·훈련·홍보
9. 국내 양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교류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양식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②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기업의 집단화와 양식장 및 양식용 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양식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양식기업이 생산한 양식수산물의 가공·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 진출 양식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른 양식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양식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
3.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 징수 유예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다음 해 육성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양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식산업 및 양식관련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6조(손실보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이 법,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포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한국양식산업진흥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1조(청문) 행정관청은 제29조 및 제50조에 따른 허가·신고 및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44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3조 및 제47조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3.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양식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사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양식업 등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6. 제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한 자, 처리·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7. 과실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한 자
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경영한 자

- 제66조(몰수)** ① 제62조에서부터 제65조까지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양식물·양식수산물·수산동식물·제품·어선·어구·양식시설물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에서부터 제6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상태로 둔 자
5. 제31조에 따른 양식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와 위반을 도운 자

6. 제32조를 위반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식장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8. 제34조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선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49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및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③ 제1항에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양식산업발전법 2안(통합개혁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통제되거나 선정된 수생생태 환경 하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 또는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산동식물을 번식하고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식산업"이란 제3호의 양식업, 제4호 수산종자업, 제5호의 수산종묘업 및 제6호의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하천·댐·호수·늪·저수지·인공적으로 조성한 담수나 기수(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종자업"이란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산종묘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산업으로서 양식장정화·정비업, 양식사료업, 수산질병관리업, 양식기자재업, 양식시설물설치업, 양식수산물 운반·가공·유통·판매업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7. "연안양식"이란 바닷가로부터 제8호 외해 내측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해양식"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이하 "외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9. "육상해수면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0. "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1. "빌딩양식"이란 육상의 빌딩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양식수를 재활용하여 집약적으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2. "관상어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해수 및 담수 관상용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3. "양식장"이란 양식을 하는 해수면 및 내수면을 포함한 모든 장소를 말한다.
14.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15. "양식수산물"이란 양식을 통하여 생산된 식용·공업용·레저용·교육용 등 모든 수산물을 말한다.
16. "양식물"이란 양식장에서 양식중이거나 수산종묘생산시설에서 생산 중인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7. "양식업자 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식업자"라 한다), 제4호에 따른 수산종자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산종자업자"라 한다), 제5호에 따른 수산종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산종묘업자”라 한다)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18. "양식업종사자"란 제17호의 양식업자 등을 위하여 양식업, 수산종자업 또는 수산종묘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19. “양식기업”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이하 “양식업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법인을 말한다.
20. "양식관련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양식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4. "양식관련사업종사자"란 양식관련업자를 위하여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5. “갯벌”이란 연중 최고만조시(最高滿潮時)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연중 최저간조시(最低干潮時)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갯벌구역과 「수산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이내의 구역 중 제2호의 갯벌양식어업 대상품종의 양식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양식업의 면허, 허가, 보상 및 재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수산업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금지, 처리·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면
2. 양식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수면

제2장 양식산업 발전정책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전·이용, 양식산업의 규모화·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개선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식산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양식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국가 목표와 전략
3.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양식을 위한 양식장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는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양식산업 발전에 관한 연간 목표와 전략
 2.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을 위한 양식장 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 개발지구 지정 및 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양식장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양식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양식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예산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양식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제55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또는 민간인 조사위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양식장·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출입·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그 토지·양식장·어장 등에 한시적으로 출입·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해수면 및 내수면을 양식장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식업 등의 면허, 허가 및 신고

제12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연안양식업 : 연안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협동양식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외해양식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내수면양식업 :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 복합양식업 :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양식업 외의 양식업으로서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수면 및 내수면의 동일 양식장에서 2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6. 혼합양식업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 이외의 동식물과 결합하여 양식하는 사업
7. 갯벌양식업 : 법 제2조제25항의 갯벌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양식업의 종류와 협동양식업 양식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양식장의 수심,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수산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해수면양식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
- ⑤ 제1항의 동일 종류란 어류, 연체동물,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및 담수조류를 말하며 이하 같다.

제13조(어업권의 준용규정) 제12조에 따른 양식업은 「수산업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7조(어업권의 등록),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3조(공유자의 동의),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4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 승계), 제26조(어업권의 경매)를 준용한다.

제14조(양식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면양식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빌딩양식업 : 도시 또는 도시근교 빌딩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동일 또는 복수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 그 양식수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거나 레저관광에 활용하는 사업
3. 관상어양식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해수 및 담수 관상용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수산종자업 :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
5. 수산종묘업 : 일정하게 구획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양식업 등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양식물, 수산종자 및 수산종묘의 종류
2. 양식, 수산종자 및 종묘생산 시설기준

제15조(양식업 등의 신고) 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양식업 등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 등의 방법 및 신고의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면허 및 허가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식업 등의 면허 및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7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등의 면허 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식업 등의 면허,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등의 면허 및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 및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식업 등의 면허 및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면허 및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의 면허 및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양식업 등의 면허 및 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면허 및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① 제12조제1항제1호(연안양식업)·제7호(갯벌양식업) 및 연안양식업 대상수면에서 행하는 제12조제1항제5호(복합양식업) 및 제6호(혼합양식업)의 양식업의 면허를 최초로 하는 경우의 면허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양식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능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
2. 수산기술자로서 해당 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5.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각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한다.

② 제12조제1항제1호(연안양식업)·제7호(갯벌양식업) 및 연안양식업 대상수면에서 행하는 제12조제1항제5호(복합양식업) 및 제6호(혼합양식업)의 양식업의면허가 만료되어 새로이 면허하는 경우의 면허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양식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중 제19조의 양식업 심사·평가를 통과한 자
2. 해당 양식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능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
3. 수산기술자로서 해당 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자
4. 해당 양식업의 경험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6.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각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한다.

③ 제12조제1항제4호(내수면양식업) 및 내수면양식업 대상수면에서 행하는 제12조제1항제5호(복합양식업) 및 제6호(혼합양식업)의 면허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양식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양식업의 면허를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양식업 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각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한다.

④ 제12조제1항제3호(외해양식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행정관청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연안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연안양식업 면허를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5.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각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양식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양식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양식업 면허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식업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 ⑦ 협동양식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하고, 우선순위는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전·분할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의 순서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양식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양식업의 양식장에서 양식장관리 및 양식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양식업의 허가를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가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양식업 면허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식업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제20조(양식업 등 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제1항의 복합양식업 및 혼합양식업 중 사유수면 또는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행하는 양식업,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의 허가의 우선순위는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4항 및 제4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식장의 환경, 양식업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9조제8항,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이 법 제22조에 따른 양식업의 심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외에는 양식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총 유효기간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4조에 따른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양식업의 사회경제적 여건, 종자 보존 및 생산의 환경, 종묘생산 여건, 양식업 등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5조에 따른 신고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지방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2조(양식업의 심사·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양식장 관리 및 양식생산을 위하여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 심사·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식업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를 연장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양식업의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평가하거나, 제55조에 따른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심사·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양식장의 관리 실태
2. 투입 및 산출
3. 양식 생산 및 매출액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양식업의 심사·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한정양식업면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3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양식업 등이 제한된 구역이나 양식업 면허 및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허가기간 등을 정하여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이하 "한정양식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양식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면허, 허가의 변경·폐업 등) ① 제12조·제14조에 따라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2조·제14조에 따라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신고를 한 자가 그 업을 폐업하거나 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자 등은 그 양

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자 등이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 및 양식업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자 등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양식업자 등은 그 지정받은 양식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휴업 신고, 면허 및 허가 포기의 신고) ①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양식업 등을 정지한 기간 및 이법 제42조에 따른 양식장 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⑤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양식업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양식업 등의 개시 등) ①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및 수산종묘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휴업하여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이법 제42조에 따른 양식장 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29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양식업자 등은 다른 사람에게 그 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임대차의 금지) 양식업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장을 행사하는 경우

2. 인공적으로 조성한 개인 또는 법인소유의 해수면 및 내수면

제31조(면허·허가·신고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양식업자 등이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양식업자 등이 제2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양식업자 등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양식면허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양식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식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어촌계 등의 양식장관리)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수산업법」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8조(어장관리 규약) 및 제39조(어업권 행사의 제한)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34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되거나 양식업 등의 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중인 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물이나 양식중인 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중인 수산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시설물이나 양식중인 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이나 양식중인 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 ④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중인 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자 등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장,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을 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양식업 등 면허 또는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면허 또는 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
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

- 제38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양식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양식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양식장을 양식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해역(이하 "양식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의 수면 등 양식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양식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양식장환경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식장관리해역별로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양식장 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양식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양식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식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인(이하 "양식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양식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식장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시료의 채취
2. 시설물의 사용
3. 시설물의 제거

⑥ 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양식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양식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양식장휴식이나 새로운 양식업허가의 금지 등 양식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을 양식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양식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양식산업발전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면허·허가동시갱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양식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양식장관리해역 중 제19조제8항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장은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양식장관리해역 안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양식장이 제31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장이 양식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양식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양식장이 제31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양식장이 양식장관리특별
해역 안의 양식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양식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거나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
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면
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나 양식
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양식장휴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
은 양식장이 있는 양식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양식장휴식에 관한 계
획(이하 "양식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
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양식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에 따라 양식장휴식을 실시하는
양식장의 휴식기간 중에 양식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 중에 양식장
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하여는 그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양식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장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양식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양식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양식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식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양식장면적 및 양식장위치를 조정하여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양식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양식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양식장의 관리의무) ①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양식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양식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청소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양식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양식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양식장청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양식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48조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양식업자의 양식장관리 의무) ①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양식 활동 중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식업자 등이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양식업자 등이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양식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양식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양식장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양식장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양식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9조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49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양식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양식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49조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1조(양식장정화·정비업 영업의 승계) ①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양식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3조(양식산업 육성지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양식산업 육성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사업
2. 수산종자의 보존·육종·신품종 개발 및 보급사업
3. 수산종묘의 생산·육성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4. 양식수산물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양식시설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6. 양식사료, 양식수산질병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7. 외국으로부터의 양식산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8. 양식산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9.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① 정부는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양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식산업 동향 및 통계에 관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
2. 양식업 심사·평가업무 대행

3. 양식산업 실태조사
 4.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양식장의 개발 및 건설
 6. 양식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수출
 7. 새로운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양식경영의 컨설팅 및 교육·훈련·홍보
 9. 국내 양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교류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 및 제39조에 따라 양식기업의 육성과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기업의 집단화와 양식장 및 양식용 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양식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양식기업이 생산한 양식수산물의 가공·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 진출 양식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른 양식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양식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
3.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 징수 유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다음 해 육성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양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식산업 및 양식관련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8조(손실보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이 법,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 및 받은 양식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3조(청문) 행정관청은 제31조 및 제52조에 따른 면허, 허가·신고 및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45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4조 및 제4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4조 및 제49조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2. 제13조를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양식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사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 제30조를 위반하여 양식 허가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7. 제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한 자, 처리·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과실로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한 자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경영한 자

제68조(몰수) ① 제64조에서부터 제67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양식물·양식수산물·수산동식물·제품·어선·어구·양식시설물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업을 경영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상태로 둔 자
5. 제33조에 따른 양식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와 위반을 도운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식장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8. 제36조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선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51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및 제39조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③ 제1항에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3안(통합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통제되거나 선정된 수생생태 환경 하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 또는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산동식물을 번식하고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식산업"이란 제3호의 양식업, 제4호 수산종자업, 제5호의 수산종묘업 및 제6호의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하천·댐·호수·늪·저수지·인공적으로 조성한 담수나 기수(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종자업"이란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산종묘업"이란 일정하게 구획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산업으로서 양식장정화·정비업, 양식사료업, 수산질병관리업, 양식기자재업, 양식시설물설치업, 양식수산물 운반·가공·유통·판매업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7. "연안양식"이란 바닷가로부터 제8호 외해 내측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해양식"이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이하 "외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9. "육상해수면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0. "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1. "빌딩양식"이란 육상의 빌딩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양식수를 재활용하여 집약적으로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2. "관상어양식"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해수 및 담수 관상용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13. "양식장"이란 양식을 하는 해수면 및 내수면을 포함한 모든 장소를 말한다.
14.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15. "양식수산물"이란 양식을 통하여 생산된 식용·공업용·레저용·교육용 등 모든 수산물을 말한다.
16. "양식물"이란 양식장에서 양식중이거나 수산종묘생산시설에서 생산 중인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7. "양식업자 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식업자"라 한다), 제4호에 따른 수산종자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산종자업자"라 한다), 제5호에 따른 수산종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산종묘업자"라 한다)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18. "양식업종사자"란 제17호의 양식업자 등을 위하여 양식업, 수산종자업 또는 수산종묘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19. "양식기업"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이하 "양식업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법인을 말한다.
20. "양식관련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양식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4. "양식관련사업종사자"란 양식관련업자를 위하여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5. "갯벌"이란 연중 최고만조시(最高滿潮時)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연중 최저간조시(最低干潮時)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갯벌구역과 「수산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이내의 구역 중 제2호의 갯벌양식어업 대상품종의 양식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양식업의 면허, 허가, 보상 및 재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수산업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금지, 처리·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면
2. 양식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수면

제2장 양식산업 발전정책 등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식업자 등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전·이용, 양식산업의 규모화·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개선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식산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양식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국가 목표와 전략
3.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양식을 위한 양식장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양식산업 발전에 관한 연간 목표와 전략
2.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을 위한 양식장 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 개발지구 지정 및 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양식장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양식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양식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예산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양식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제5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또는 민간인 조사위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양식장·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출입·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그 토지·양식장·어장 등에 한시적으로 출입·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해수면 및 내수면을 양식장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식업 등의 면허, 허가 및 신고

제12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제3호 외해 양식업은 농림수산식품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연안양식업 : 연안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협동양식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외해양식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내수면양식업 :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 복합양식업 :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양식업 외의 양식업으로서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수면 및 내수면의 동일 양식장에서 2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6. 혼합양식업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 이외의 동식물과 결합하여 양식하는 사업
7. 갯벌양식업 : 법 제2조제25항의 갯벌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양식업의 종류와 협동양식업 양식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양식장의 수심,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수산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해수면양식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
 - ⑤ 제1항의 동일 종류란 어류, 연체동물,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및 담수조류를 말하며 이하 같다.

제13조(어업권의 준용규정) 제12조에 따른 양식업은 「수산업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17조(어업권의 등록),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3조(공유자의 동의),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24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 승계), 제26조(어업권의 경매)를 준용한다.

제14조(양식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면양식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동일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빌딩양식업 : 도시 또는 도시근교 빌딩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동일 또는 복수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 그 양식수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거나 레저관광에 활용하는 사업
3. 관상어양식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해수 및 담수 관상용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수산종자업 :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씨앗·포자·알·어미를 보존·육종·품종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
5. 수산종묘업 : 일정하게 구획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거나 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양식업 등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양식물, 수산종자 및 수산종묘의 종류
2. 양식, 수산종자 및 종묘생산 시설기준

- 제15조(양식업 등의 신고)** 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양식업 등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 등의 방법 및 신고의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면허 및 허가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식업 등의 면허 및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양식업 면허양식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 및 어류등양식업에만 해당한다)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7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등의 면허 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식업 등의 면허,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등의 면허 및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 및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식업 등의 면허 및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면허 및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의 면허 및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양식업 등의 면허 및 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면허 및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① 제12조제1항제1호(연안양식업)·제7호(갯벌양식업) 및 연안양식업 대상수면에서 행하는 제12조제1항제5호(복합양식업) 및 제6호(혼합양식업)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제41조에 따른 양식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이 법 제12조의 양식업 및 제14조의 양식업 등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제41조에 따른 양식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이 법 제12조의 양식업 및 수산종묘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제41조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양식업의 양식장에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양식업의 양식장에서 그 신청한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제41조에 따른 양식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양식업의 양식장에서 그 신청한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양식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자치구와 연결하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양식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양식업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양식업 면허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식업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양식업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협동양식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하고, 우선순위는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전·분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수협의 순서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양식업의 어장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양식업의 양식장에서 양식장관리 및 양식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양식업의 허가를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가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양식업 면허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식업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⑧ 제12조제1항제4호(내수면양식업) 및 내수면양식업 대상수면에서 행하는 제12조제1항제5호(복합양식업) 및 제6호(혼합양식업)의 면허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양식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양식업의 면허를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양식업 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⑨ 제12조제1항제3호(외해양식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행정관청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연안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연안양식업 면허를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제20조(양식업 등 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제1항의 복합양식업 및 혼합양식업 중 사유수면 또는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면에서 행하는 양식업,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의 허가의 우선순위는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면허, 허가 및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4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식장의 환경, 양식업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9조제8항,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양식업 면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면허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면허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양식업 면허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 ⑤ 제14조에 따른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양식업의 사회경제적 여건, 종자 보존 및 생산의 환경, 종묘생산 여건, 양식업 등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⑥ 제15조에 따른 신고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지방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2조(한정양식업면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3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양식업 등이 제한된 구역이나 양식업 면허 및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허가기간 등을 정하여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이하 "한정양식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양식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면허, 허가의 변경·폐업 등) ① 제12조·제14조에 따라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4조에 따라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업을 폐업하거나 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자 등은 그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자 등이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 및 양식업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자 등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양식업자 등은 그 지정받은 양식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 또는 월하장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휴업 신고, 면허 및 허가 포기의 신고) ①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양식업 등을 정지한 기간 및 이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⑤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양식업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양식업 등의 개시 등) ① 양식업, 수산종자업 및 수산종묘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및 수산종묘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휴업하여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이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양식업자 등은 다른 사람에게 그 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대차의 금지) 양식업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장을 행사하는 경우
2. 인공적으로 조성한 개인 또는 법인소유의 해수면 및 내수면

제30조(면허·허가·신고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양식업자 등이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양식업자 등이 제2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양식업자 등이 제29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양식면허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1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양식업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양식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식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어촌계 등의 양식장관리)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수산업법」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38조(어장관리 규약) 및 제39조(어업권 행사의 제한)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33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되거나 양식업 등의 시기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중인 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물이나 양식중인 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양식중인 수산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시설물이나 양식중인 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이나 양식중인 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중인 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자 등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식업 등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장,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을 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양식업 등 면허 또는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면허 또는 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
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양식장의 이용 및 관리

- 제37조(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양식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양식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양식장을 양식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해역(이하 "양식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의 수면 등 양식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양식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양식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양식장환경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식장관리해역별로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양식장 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양식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양식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식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인(이하 "양식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양식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식장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시료의 채취
2. 시설물의 사용
3. 시설물의 제거

⑥ 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양식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양식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양식장휴식이나 새로운 양식업허가의 금지 등 양식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을 양식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양식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양식산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양식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면허·허가동시갱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양식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양식장관리해역 중 제19조제8항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식장은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양식장관리해역 안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양식장이 제31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장이 양식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양식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양식장이 제31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양식장이 양식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양식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양식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거나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양식장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나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양식장휴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장이 있는 양식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양식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양식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양식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휴식계획에 따라 양식장휴식을 실시하는 양식장의 휴식기간 중에 양식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 중에 양식장 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하여는 그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양식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장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양식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⑥ 양식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양식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양식장면적의 조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식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양식장면적 및 양식장위치를 조정하여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양식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양식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양식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양식장의 관리의무) ①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양식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양식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청소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양식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양식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양식장청소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양식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47조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양식업자의 양식장관리 의무) ①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양식 활동 중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양식업자 등이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양식업자 등이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양식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양식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양식장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양식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양식장에 대하여 양식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양식장정화·정비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양식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4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양식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양식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48조에 따른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0조(양식장정화·정비업 영업의 승계) ①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양식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51조(양식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양식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양식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2조(양식산업 육성지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양식산업 육성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사업
 2. 수산종자의 보존·육종·신품종 개발 및 보급사업
 3. 수산종묘의 생산·육성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4. 양식수산물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양식시설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6. 양식사료, 양식수산질병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7. 외국으로부터의 양식산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8. 양식산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9.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① 정부는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양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양식산업 동향 및 통계에 관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
 - 2. 양식업 심사·평가업무 대행
 - 3. 양식산업 실태조사
 - 4.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5. 양식장의 개발 및 건설
 - 6. 양식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수출
 - 7. 새로운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
 - 8. 양식경영의 컨설팅 및 교육·훈련·홍보
 - 9. 국내 양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교류
 -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입금
 -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양식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기업의 집단화와 양식장 및 양식용 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양식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양식기업이 생산한 양식수산물의 가공·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 진출 양식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른 양식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양식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
3.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 징수 유예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다음 해 육성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양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식산업 및 양식관련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7조(손실보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8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이 법,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양식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같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2조(청문) 행정관청은 제30조 및 제51조에 따른 면허, 허가·신고 및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44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4조 및 제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 제14조 및 제48조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2. 제13조를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양식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사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 제29조를 위반하여 양식 허가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7. 제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한 자, 처리·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과실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 등을 양식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한 자
3.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경영한 자

제67조(몰수) ① 제63조에서부터 제66조까지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양식물·양식수산물·수산동식물·제품·어선·어구·양식시설물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에서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업을 경영한 자
2. 제2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상태로 둔 자
5. 제32조에 따른 양식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와 위반을 도운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식장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8. 제35조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선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9.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50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③ 제1항에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친환경 양식 도입 방안

제1절 사례 분석

1) EU

- 세계 친환경 양식의 중심은 유럽으로, 유럽에서는 특정어종을 중심으로 유기양식이 진행되고 있음
 - 대서양연어, 농어, 돔류 등을 중심의 유기수산양식이 진행되고 있음
- EU의 오가닉농업상무위원회는 친환경양식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결정함
 - 친환경 양식에 대한 규정 도입은 유럽 내에서의 친환경 수산물 시장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EU의 친환경양식 규정은 국제유기농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IFOAM)에서 발표한 기준안을 초안으로 삼고 있음
 - IFOAM은 유기 농축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2000년 유기수산양식의 기초적인 기준 초안을 발표하였음
 - 유기 양식수산물의 범위에서부터 어장환경, 생산방법, 나아가 가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항목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유기 양식수산물의 인증은 양식장의 위치·시설, 경영자의 교육, 증명능력 등을 심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표 5-1〉 IFOAM의 유기 양식수산물의 가이드라인

항 목	내 용
범 위	- 유기수산물의 정의, 인증대상
유기양식 전환	- 일반적인 양식에서 유기적인 양식으로의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이에 대한 고려, 오염원과의 거리 등을 포함
기초조건	- 양식방법, 어류 스트레스, 인공조명, 화학합성약품류의 제한
양식장 입지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에서 받는 영향, 오염정도의 측정
채취수역 장소	- 채취하는 수산물의 기준
건강과 복지	- 병충해 방제 방법과 수산용의약품의 사용 제한
품종 및 번식	- 양식어종·인공어종 선택
영 양	- 부영양화에 대한 배려, 환경에 대한 방출 제한, 사료의 내용과 첨가물
채취·수확	- 양식어류에 대한 배려, 스트레스 경감
수 송	- 수송상의 주의와 수질 등의 통제
도살법	- 스트레스 경감, 혈액제거방법

- 한편 EU의 친환경 양식 관련 법규의 제정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7월 : 규정(EEC)No2092/1991이 발효 중이었음. 관련 위원회에 의하여 유럽연합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 실행계획 시행
 - 2005년 12월 1~13일 : 해사 및 수산위원장이 유기수산양식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협의회를 부루셀에서 개최
 - 2005년 12월 21일 : 관련 위원회에서 규정(EEC)No2092/1991의 개정안 공포
 - 2007년 5월 : 유럽연합의회에서 위원회의 개정안 통과
 - 2007년 6월 28일 : 관련 평의회에서 새로운 유기생산과 그 표시 및 유기생산품에 관한 규정(EC)No834/2007을 승인 (2007년 7월 20일 EU관보에 게재)
 - 2007년 10월~2008년 5월 : 해사 및 수산위원장은 2007년 10월22~23일, 2008년 1월 22~24일, 2008년 5월28~29일 3회에 걸쳐 유기수산 관련 시행령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주관
 - 2008년 6월 25일 : 해사 및 수산위원장이 유기수산양식 관련 시행령을 공포
 - 2008년 9월 18일 : 새로운 유기 관련 시행령인 규정(EC)No889/2008을 EU관보에 게재했으며 이는 7월에 상설 유기농업위원회에서 승인

- 2009년 1월 1일 : 새로운 유기규정 (EC)No834/2007이 시행령과 함께 발효
 - 2009년 1월 27일 : 관련 위원회에서 유기수산양식 관련 시행령 초안 발표
 - 2009년 8월 6일 : 양식 시행령 규정(EC)No889/2009의 개정된 규정으로서 규정(EC)No710/2009가 6월 유기농업상설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후 EU관보에 게재
 - 2010년 7월 1일 : 유기수산양식 시행령 규정(EC)No710/2009 시행
- COMMISSION REGULATION(EC)No710/2009은 유기수산양식동물 및 해조류 생산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항목은 다음과 같음
- 본 규칙은 2013년까지 관련 규정의 재검토·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표 5-2〉 EU 유기수산물 규칙의 주요 내용

구분	규제항목	주요내용
해조류	수질관리	- 유기/비유기 분리 - 환경영향평가 실시 - 지속가능 관리계획 수립(매년 갱신) - 재생가능 에너지원/물질의 사용
	양식방법	- 양식밀도 적정화 - 시설장비 재사용
	부착생물 관리 등	- 부착생물 제거/관리 방법
어패류	수질관리	- 유기/비유기 분리 - 환경영향평가 실시 - 지속가능 관리계획 수립(매년 갱신) - 재생가능 에너지원/물질의 사용 - 배출수 관리
	비유기수산물과의 공동생산	- 명확한 생산시스템 구비 - 증빙서류 구비
	종묘	- 계통관리(기록보유)
	양식환경 및 양성	- 동물복지 요소 고려 - 어종별 사육밀도 설정 - 자연생태계 영향 감소 대책 구비 - 동물성의약품 사용 제한 - 사료요건 설정
	양식시설	- 폐쇄순환양식 시설 금지 - 시설형태별 요건 설정
	양식생물 처리	- 선별/처리 방법 - 인공조명/산소/도살방법
기타	양식품종별 특별 규정	

2) 일본

-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의 친환경(유기)수산물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민간인증기관에 의해 친환경 양식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JAS법³⁾을 통해 유기식품에 대한 규격기준 마련·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유기식품과 관련된 규격은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의해 마련되어 있음
 - 당 법에서는 유기식품에 대한 표시규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유기축산물의 4종으로, 수산물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의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의 농림규격 내에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으나, 원료에 대해 농산물과 축산물에 별도의 항목이 마련된데 비해 수산물에 대한 별도의 제도나 규정은 현 시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일본의 친환경 수산물 민간인증기관으로 JONA(JAPAN ORGANIC&NATURAL FOODS ASSOCIATION), 日本有機水産物認証協会(NPO법인) 등이 활동하고 있음
 - 이외에 일부 업체(이온그룹 등)가 민간협회, 해외기관의 인증기준 등을 참고로 자체기업의 기준을 설정하는 사례도 관찰되고 있음
- 참고로 일본 JONA의 친환경(유기) 수산물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원칙적으로 양식수산물이어야 하며, 인공증식, 생육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
 -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적어야 하는 만큼 어장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수나 투기를 해서는 안되며, 문제 방지를 위해 적정 처리시설을 보유하던지 자연환경 정화기능의 허용범위 내에서의 배수를 위해서는 자연정화능력에 대한 측정·평가가 있어야 함
 - 자연내에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화학적 합성된 성분이 중심인 수산용의약품의 사용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적정 사용방법 준수, 부하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3)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사료의 경우 자연내에서 생산되었으나 화학처리나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단, ‘지속적 생산’ 원칙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식품폐기물, 비식용 수산물 등을 활용해야 함
 - 가공은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되 신속한 처리, 적절한 온도관리, 물리적인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약품처리를 피하기 위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임
- 일본 민간기관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도 양식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3) 시사점

- 친환경 양식은 친환경 농업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됨
 - 농작물의 경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경작되는 것을 의미함
 - 수산물의 경우 농업의 경작·사육 개념에 근사한 양식수산물에 대해 친환경의 개념이 도입·검토되었음
 - 자연산 수산물의 경우 ‘자원의 지속적 생산’에 초점을 둔 에코라벨링(Ecolabelling) 제도의 규범화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친환경 양식은 그 기원으로 인해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 요건이 양성환경, 투입물 등으로 농업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
- 친환경 수산업, 수산물에 대한 범세계적 공통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IFOAM의 가이드라인이 기준 설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유럽, 일본의 경우 자국의 실정을 감안한 결과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 방식,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약간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인증기준의 경우 IFOAM이 발표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고 있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 또는 기관간에 친환경 수산물의 관리 항목은 유사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제2절 친환경양식 정책방향

1) 친환경 수산물인증제도

- 친환경 수산물인증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친환경 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물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의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함(법 제2조 ①항의 5)
 - “친환경 수산물등”이란 친환경 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함(법 제2조 ①항의 6)
-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기준은 양식장의 수질환경 기준, 종묘의 건전성 및 출처 관리에 대해 설정되어 있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양식장의 수질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수질기준에 근거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병이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
 - 종묘도입에서 출하시까지 양식과정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양식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친환경 수산가공품은 친환경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친환경적 방법으로 가공해야 함
 - 대상품목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인증기준도 법령에서 설정된 것 이외의 인증기준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4) 2012년 7월 22일 이후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과의 통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임

〈표 5-3〉 친환경 수산물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

구 분	세 부 사 항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 : 넙치, 무지개송어 · 패류 : 굴, 홍합 · 해조류 : 김, 미역, 톳 · 해조류가공품 :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 표면 등에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 · 친환경 수산물 표지 및 표시사항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자료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친환경 수산물의 사후관리는 생산과정과 시판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생산과정조사는 반기 1회씩 친환경수산물 인증품 생산·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판품조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조사(반기1회)가 이루어지는데,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출하기준 준수여부, 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의 혼합여부,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됨
- 2013년 6월 이후에는 법률 개정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⁵⁾될 예정임
 - 본 법률에서 친환경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수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법 제2조 1항)
 -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2항)

5) 2013년 6월 2일 시행 예정

- 유기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2) 정책방향

-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 농업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근거로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 친환경 어업(양식업)의 육성·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법령상 우리나라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은 여타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인증기준에 비해 수질환경, 종묘로 단순한 편임
 - 국내 인증은 현실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국제기준의 즉각적 도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향후 농축산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양식어업의 육성 및 양식수산물에 대한 통합 인증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어업 및 수산물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이 추진될 예정임
 - 법률에 의거해 친환경 어업에 대해서도 종합 육성계획이 마련되며, 지자체도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육성계획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시범단지 육성 방안, 제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국제협력 강화 방안, 자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친환경 농축수산업과 관련해 법률이 통합되면서 친환경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된 실정임
 - 농업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양식어업에 대해서도 계획의 수립이 가능케 됨

- 향후 육성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친환경 양식어업과 관련된 기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종합계획에서는 세계적인 친환경 수산물 가이드라인의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친환경 식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선진국가에 대한 국내 양식수산물의 수출 가능성 확대와 다양화하는 국내 소비자에 선호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임

제6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제1절 법안 비용추계제도의 의의

- 법안비용추계란 재정수반법안(Budget-related Bills)에 대해 당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비용, 연도별 소요비용, 부담주체별 소요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함
 -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을 대상으로 함
 - 직접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함
 -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추계함
 -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함

- 법안 비용추계와 비용편익분석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법안비용추계는 비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과 유사하나 다음의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먼저, 법안비용추계제도는 비용만을 추계대상으로 하는 반면,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분석의 범위에 포함시킴
 - 그리고 법안비용추계에서의 비용의 개념은 단순히 법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화폐적, 회계적 비용을 의미하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비용은 단순히 회계적인 비용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을 의미함
 - 또한, 법안비용추계는 사전적으로 정부소요재정을 산정하되 사후적 평가는 하지 않는 반면, 비용편익분석은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에 모두 활용할 수 있음

〈표 6-1〉 법안비용추계와 비용편익비용과의 비교

	비용추계	비용편익분석
분석대상	비용	비용과 편익
비용개념	회계학적 비용	경제학적 비용
분석시점	사전	사전, 사후
가격기준	경상가격, 시장가격	현재가치로 환산 잠재가격
의사결정기준	국가재정규모	비용과 편익
분석범위	국가/지자체/민간 등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에 한정	전체 사회적 차원의 비용/편익의 변화(단순한 경상이전은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 법안비용추계의 기능은 크게 미시적인 기능과 거시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자는 개별 법안의 심사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정부 전체 예산 혹은 분야별 예산 규모의 파악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법안비용추계의 거시적 기능은 국가 총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관련됨
 - 비용추계는 법으로 표현되는 정부활동의 각각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 국가활동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래 예정된 지출과 수입의 규모, 그리고 장래 국가활동을 조정할 경우 필요한 총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특정 입법활동이 정부 전체 및 분야별 예산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미시적으로 법안비용추계 정보는 위원회에서 개별 법안의 심사시 그 법안이 비용효과적인가,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됨
 - 판단 결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법안을 수정 내지 폐지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안비용추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짐
 - 법안비용추계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에 수권액 또는 지출상한선을 규정할 경우에는 입법에 의한 국가재정의 악화 자체뿐만 아니라, 예산에 의한 국가재정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음

- 비용추계 정보를 토대로 국가재정부담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법률안에 집중하거나,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입법행위를 방지하고 희소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을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함. 또한 비용추계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입법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입법을 방지하고,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소요비용을 과학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법률과 연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법안의 소요비용을 제대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 등을 정책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안내용을 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음

제2절 양식산업발전법안 비용추계

1) 재정수반요인

가. 제7조(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양식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양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국가 목표와 전략
3.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양식을 위한 양식장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는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8조(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양식산업 발전에 관한 연간 목표와 전략
 2.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을 위한 양식장 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양식산업 개발지구 지정 및 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양식장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 제10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제55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또는 민간인 조사위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양식장·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출입·조사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그 토지·양식장·어장 등에 한시적으로 출입·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제39조(양식장환경의 조사)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식장관리해역별로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양식장 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양식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양식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양식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식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인(이하 "양식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양식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양식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식장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시료의 채취
2. 시설물의 사용
3. 시설물의 제거

⑥ 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식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제53조(양식산업 육성지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양식산업 육성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바. 제54조(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사업
 2. 수산종자의 보존·육종·신품종 개발 및 보급사업
 3. 수산종묘의 생산·육성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4. 양식수산물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양식시설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6. 양식사료, 양식수산물질병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7. 외국으로부터의 양식산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8. 양식산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9.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제55조(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 ① 정부는 양식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양식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식산업 동향 및 통계에 관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
 2. 양식업 심사·평가업무 대행
 3. 양식산업 실태조사
 4.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양식장의 개발 및 건설
 6. 양식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수출
 7. 새로운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양식경영의 컨설팅 및 교육·훈련·홍보
 9. 국내 양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교류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제56조(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 및 제39조에 따라 양식기업의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②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기업의 집단화와 양식장 및 양식용 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양식기업의 원활한 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양식기업이 생산한 양식수산물의 가공·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 진출 양식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9조에 따른 양식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양식기업 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
 3.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 징수 유예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양식기업의 육성 및 지원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다음 해 육성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은 앞서 제시된 세 가지 양식산업발전법(안) 가운데 통합개혁안인 제2안을 근거로 추계함
- 이 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되어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양식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할 경우 2014년 약 612억.5억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2,91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6-2〉 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2014~2018년)

단위: 억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0	10	10	10	10	50
양식장환경의 조사	30	-	-	-	-	30
양식산업 육성지구	527	527	527	527	527	2,635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45.54	34.97	37.21	39.60	42.17	199.48
합 계	612.54	571.97	574.21	576.60	579.17	2,914.49

- 기관별로는 중앙정부에서 2,040.1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874.3억 원을 지원함

〈표 6-3〉 제정안에 따른 국가·지자체 재정소요(2014~2018년)

단위: 억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국고	428.78	400.38	401.95	403.62	405.42	2,040.1
지방	183.76	171.59	172.26	172.98	173.75	874.3
합계	612.54	571.97	574.21	576.60	579.17	2,914.5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지원: 50억 원

- 안 10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비용 추계는 이를 근거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함
 - 세부 항목을 보면 인건비 7억 8,520 만원, 자료조사비 2억 1,480만원으로 10억 원임

〈표 6-4〉 기초조사 비용 구성

	명	개월 또는 일수	단가(만원)	비용(억원)
연구원	20	12	223	5.35
연구보조원	50	100	5	2.50
인건비합계	7	-	-	7.85
자료조사비	-	-	-	2.14
소계	-	-	-	10.00

〈표 6-5〉 기초조사 실시 재정소요(2014~2018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국고	5	5	5	5	5	5
지방	5	5	5	5	5	5
합계	10	10	10	10	10	10

(2) 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54조)

-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사업에 매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며 5년간 총 10억 원이 소요됨
- 수산종자의 보존·육종 및 신품종 개발 및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25억 원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여 5년간 총 125억 원이 소요됨
- 수산종묘의 생산·육성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매년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며 5년간 총 100억 원이 소요됨
- 양식수산물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매년 200억 원이 소요되어 5년간 1,000억 원이 소요됨
- 양식사료, 양식수산질병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에 매년 200억 원이 소요되어 5년간 1,000억 원이 소요됨
- 외국으로부터의 양식산업에 관한 신규 기술도입 사업과 관련해 매년 30억 원이 소요되어 5년간 150억 원이 소요됨
- 양식산업 관련 기술의 산업화와 관련해 매년 50억 원이 소요되어 5년간 250억 원이 소요됨

〈표 6-6〉 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단위: 억 원

사업 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조사연구사업	2	2	2	2	2	10
수산종자의 보존육종신품종 개발 및 보급사업	25	25	25	25	25	125
수산종묘의 생산육성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0	20	20	20	20	100
양식수산물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200	200	200	200	200	1,000
양식사료, 양식수산질병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200	200	200	200	200	1,000
외국으로부터의 양식산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0	30	30	30	30	150
양식산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50	50	50	50	50	250
합 계	527	527	527	527	527	2,635

〈표 6-7〉 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재정소요

단위: 억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국고	368.9	368.9	368.9	368.9	368.9	1,844
지방	158.1	158.1	158.1	158.1	158.1	790
합계	527	527	527	527	527	2,635

(3)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제55조) : 195억 원

-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은 중앙 1개소 설립을 가정하였음
- 인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4개 본부 체제의 총 48명을 가정하였음
-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하여 경영기획, 연구본부, 조사본부,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2개 본부, 2실 체제로 구성하였음

〈표 6-8〉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의 업무 및 인력 분장

조 직	업 무	총원(명)
이사장 및 본부장	총괄(보조원 포함)	8
경영기획	양식업심사, 평가업무대행 등	5
연구본부	양식산업동향 통계에 관한 국내외조사 및 연구 등	10
조사본부	양식산업실태조사, 기본계획등수리을위한기초조사, 양식장개발및건설 등	20
교육 및 홍보	양식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홍보, 국내양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교류 등	5
합 계	-	48

- 인건비는 유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2012년 인건비 평균 단가를 적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기준선 전망’에 따라 인건비 상승률 7%를 적용한 결과 향후 5년간 약 9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경상운영비는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에 따라 정책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의 22% 수준을 적용한 결과 향후 5년간 2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자산취득비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용품 및 기타 물품과 연구 장비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법안비용 추계원리와 방법’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1인당 2,900만 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 2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단, 자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경우 2014년 한해에만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2차년도 부터는 연구 장비 등 12억을 4년간 투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 임차비의 경우 사무실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본 추계에서는 경기 지역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 유사 기관 등의 평균 사무 공간이 1인당 약 115.6㎡인 것을 고려하면 사무 공간은 5,548.8㎡으로 추정됨

- 이를 경기지역 사무실 월 임차료 50,928(3.3㎡당)를 적용하고 임차비 상승률 연 3.5%를 적용하면 향후 5년간 53.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6-9〉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의 설치 재정 소요: 2014~2018년

단위: 억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인건비	16.29	17.44	18.66	19.96	21.36	93.71
경상운영비	3.58	3.84	4.10	4.39	4.70	20.62
자산취득비	15.66	3.00	3.00	3.00	3.00	27.66
임차비	10.28	10.64	11.01	10.64	10.64	53.19
합 계	45.81	34.91	36.77	37.99	39.69	195.17

(4) 비용 추계의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지원, 양식산업발전 연구 및 기술개발,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등을 설립할 경우 2014년 약 613억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총 2,9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양식산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미래 생명경제시대에 각광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임
 - 그러나 기존의 양식관련 법체계를 보면 다수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고, 행정과 법률의 일치성이 없어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한계를 가져왔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체계를 분석함과 아울러 양식관련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여 단일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밝힘
- 새롭게 제정되어야 할 양식관련법의 제목은 「양식산업발전법(가칭)」으로 하였고, 개혁안, 통합개혁안 및 통합안 등 3개 안을 제시함
 - 공통사항으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제시 의무화, 양식산업 구조개선 및 전환의 촉진,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식산업의 범위 확대,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과 공단 설립 근거를 규정함
 - 개혁안 면허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우선순위 전면개정, 양식업 심사 평가제 도입 및 유효기간의 단축 등을 규정함
 - 통합개혁안에서는 면허제만을 유지하고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함
 - 통합안에서는 면허제, 우선순위제 및 유효기관을 종전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용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장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의 정의를 어업, 양식업, 수산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으로 개정하고, 동법중 양식업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
 - 내수면어업법은 양식업에 관한 사항은 전면 삭제하고,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 어장관리법은 양식어장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하고 어로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적용대상으로 함과 아울러 수산자원 생태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어장

및 수산자원 생태계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양식산업발전의 제정은 단순한 기존법률의 통폐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법 제정과 동시에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아울러 동법 제정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작성함과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마지막으로 동법 제정을 위한 민관학연 TF를 양식산업과 주관으로 구성·운영하고 법제정과 더불어 정부조직의 개편방안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현재 양식산업과, 어업정책과 및 자원환경과에 산재된 양식산업 관련 업무가 통합되어야 함
 - 또한 업무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가칭 양식산업국을 신설하고, 양식산업정책과,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과 등 3개 정도의 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수립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언중, “내수면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현대해양』, 2006. 7.
- 강종호 외,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 강종호 외, 『전북 세계일류상품화를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완도군, 2009. 11.
- 김대영 외, 『토속어류산업화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경상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2.
- 김대영,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산경영론집』, 제39권, 제3호, 2008. 12.
- 김대영외,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김정봉 외, 『고유가시대 수산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김정봉 외,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 산업화 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2.
- 김정봉 외, 『한국 수산업의 선진산업화 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12.
- 김진혁 외, “식품산업 : 새로운 가치와 도전”, 『CEO Information』, 제 72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10.
- 노섬 외, 『해수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 2006.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관상어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안)』, 2010. 11.
- 류정곤 외,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빌딩양식산업 도입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12.
- 류정곤 외,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12.

- 류정곤 외, 「양식어업의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6.
- 류정곤 외, 「우리나라 ITQ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04-22, 2004. 12.
- 류정곤 외, 「해양·수산규제개혁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협동연구총서 09-25-04, 2010. 1.
- 류정곤 외, 「해조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협동연구총서 09-06-41, 2009. 12.
- 박상우 외, 「바닷가 생물생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이티카운슬·부산대학교, 2006. 8.
- 박철원 외, 「발전소 온배수 확산해역의 해양목장화 기반연구」, 한국해양연구원, 1999.
- 박철원, 「온배수 이용 방안」, 한국해양연구원, 2010.
- 신영태 외, 「연안어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4.
- 신영태 외, 「우리나라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2.
- 이광남 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한국수산회·부경대학교, 2005.
- 이순길 외, 「원전 온배수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한국해양연구원, 2008.
- 이승우 외,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 임경희, “영국과 일본의 유기양식 수산물 인증에 대한 논의 동향”, 「월간 해양수산」, 2004.6.
- 정봉민 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부문 핵심과제와 추진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12.
- 정보영 외, 「친환경 수산물 품질기준 마련 연구」, 해양수산부, 2005.4.
- 조정희 외,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양식업 발전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2.
- 주문배 외, 「내수면 잠재력 조사 및 발전방안-3차년도」, 2007.

주문배 외,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최만중, “원자력발전과 온배수 영향”, 『원자력산업』, 113(6), 1993.

홍현표 외, 「한국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모형의 개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국외문헌]

European Commission, *Evaluating EU Expenditure Programmes : A Guide*, First Edition, January 1997.

Olivier, K., *FAO/Globefish Research Programme*, Vol. 67,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Rome, Italy, 2001.

(社)日本釣用品工業会, 釣用品の国内需要動向調査報告書, 2011. 1.

王长工, “新编垂钓全书”, 上海科学技术出版社, 2009.

徐先玲, “新版钓鱼指南”, 延边人民出版社, 2002.

[온라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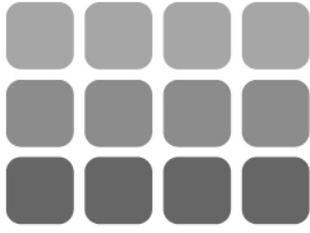
CITES 홈페이지(www.cites.org)

FAO 홈페이지(www.fao.org)

ITAT 홈페이지(www.itat.org)

OFI 홈페이지(www.ornamental-fish-int.org)

OIE 홈페이지(www.oie.int)



부 록 1



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

Act of September 26, 1980, Public Law 96-362, 94 Stat. 1198, 16 U.S.C. 2801, et seq.

To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That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1)

FINDINGS, PURPOSE, AND POLICY

SEC. 2. (a) FINDINGS.--Congress finds the following:

- (1) The harvest of certain species of fish and shellfish exceeds levels of optimum sustainable yield, thereby making it more difficul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aquatic food.
- (2) To satisfy the domestic market for aquatic food, the United States imports more than 50 per centum of its fish and shellfish, but this dependence on imports adversely affects the national balance of payments and contributes to the uncertainty of supplies.
- (3) Although aquaculture currently contributes approximately 13 percent of world seafood production, less than 6 percent of current United States seafood production results from aquaculture. Domestic aquaculture production, therefore, has the potential for significant growth.(2)
- (4) Aquacultural production of aquatic plants can provide sources of food, industrial materials, pharmaceuticals, and energy, and can assist in the control and abatement of pollution.
- (5) The rehabilitation and enhancement of fish and shellfish resources are desirable applications of aquacultural technology.
- (6)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must rest with the private sector.

(7) Despite its potential,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hibited by many scientific, economic, legal, and production factors, such as inadequate credit, diffused legal jurisdiction, the lack of management information, the lack of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and the lack of reliable supplies of seed stock.(3)

(8) Many areas of the United States are suitable for aquaculture, but are subject to land-use or water-use management policies that do not adequately consider the potential for aquaculture and may inhibit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b) PURPOSE.--It is the purpose of the Act to promote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by-

(1) declaring a national aquaculture policy;

(2)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national aquaculture development plan;(4)

(3) establishing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s the lead Federal agency with respect to the coordination and dissemination of national aquaculture information by designating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as the permanent chairman of the coordinating group and by establishing a National Aquaculture Information Center with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4) encouraging aquaculture activities and program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the economy; that will result in increased aquacultural production, the coordination of domestic aquaculture efforts, the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of aquatic resources,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and job opportunities, and other national benefits.

(c) POLICY.--Congress declares that aquaculture has the potential for reducing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in fisheries products,(5) for augmenting existing commercial and recreational fisheries and for producing other renewable resources, thereby assisting the United States in meeting its future food needs and contributing to the solution of world resource problems. It is, therefore, in the national interest, and it is the national policy,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DEFINITIONS

SEC. 3.(6)As used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1) The term "aquaculture" means the propagation and rearing of aquatic species in controlled or selected environ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cean ranching (except private ocean ranching of Pacific salmon for profit in those States where such ranching is prohibited by law).

(2) The term "aquaculture facility" means any land, structure, or other appurtenance that is used for aquaculture and is located in any State. Such term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y laboratory, hatchery, rearing pond, raceway, pen, incubator, or other equipment used in aquaculture.

(3) The term "aquatic species" means any species of finfish, mollusk, crustacean,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 amphibian, reptile, or aquatic plant.

(4) The term "coordinating group" means the interagency aquaculture coordinating group established by section 6.

(5) The term "person" means any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State, any Indian tribe, any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d any corporation, partnership, association or other ent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producer cooperative, or fishermen's cooperative) organized or existing under the laws of any State.

(6) The term "Plan" means the National Aquaculture Development Plan required to be established under section 4.

(7) The term "Secretaries" mean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the Secretary of Commerce, and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8) The term "Secretary" means the Secretary of Agriculture.(7)

(9) The term "State" means any of the several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merican Samoa, the 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 Guam,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or any other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NATIONAL AQUACULTURE DEVELOPMENT PLAN

SEC.

4.(8)(a) IN GENERAL.--(1) Within eighteen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the National Aquaculture Development Plan.

(2) In developing the Plan, and revisions thereto under subsection (d), beginning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shall consult with the Secretary of Commerce and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other appropriate Federal officers, States,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 established under section 302 of the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 (16 U.S.C. 1852), and representatives of the aquaculture industry. In addition, the Secretary shall give interes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an opportunity to comment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Plan. (11)

(b) CONTENTS OF PLAN.--The plan shall--

(1) identify aquatic species that the Secretaries determine to have significant potential for culturing on a commercial or other basis;

(2) recommend actions to be taken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 demonstration, extension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that are necessary to achieve such potential;

(3) address,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status of aquaculture regarding the aquatic species concerned--

(A) aquaculture facility design and operation,

(B) water quality management,

(C) use of waste products (including thermal effluents),

(D) nutrition and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 feeds, including natural food sources,

(E) life history, genetics, physiology, pathology, and disease control (including research regarding organisms that may not be harmful to fish and shellfish, but are injurious to humans),

- (F) processing and market development,
- (G) production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and
- (H) the development of adequate supplies of seed stock;
- (4) include, where appropriate, research programs on the effect of aquaculture on estuarine and other water areas and on the management of such areas for aquaculture;
- (5) include, where appropriate, programs to analyze, and formulate proposed resolutions of, the legal or regulatory constraints that may affect aquaculture; and
- (6) include such o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 demonstration, extens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s the Secretary deems(13) necessary or appropriate to carry out this Act.

In formulating the Plan, the Secretary(14)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take into account any significant action that (i) has been, or is proposed to be, undertaken by any other Federal department or agency, any State agency, or any person, and (ii)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c) ACTIONS AND IMPLEMENTATION.--The Plan shall specify--

- (1) with respect to those actions that the Secretary determines(15) should be undertaken, the period of time within which each such action should be comple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Plan; and
- (2) with respect to each such action which of the Secretaries, acting individually, jointly, or collectively, has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the action.

The specifications of Secretarial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2) for implementing actions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 (A) the responsibilities conferred on the respective Secretaries by law or by any executive action having the effect of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organization Plan Numbered 4 of 1970);(16)
- (B) the experience, expertise, and other appropriate resources that the department of each such Secretary may have with respect to the action required under the activity concerned; and(17)

(C) the concurrence of the Secretaries.(18)

(d) REVISION OF PLAN.--The Secretaries shall undertake periodic reviews of th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Plan. If as a result of any such review, or the aquaculture assessment required under subsection (e), the Secretaries determine that-

(1) any aquatic species not currently identified in the Plan has significant potential for aquaculture;

(2) any action specified in the Plan is not being accomplished on a successful and timely basis; or

(3) any action specified in the Plan should be terminated because its objectives have been achieved or its projected benefits do not warrant further support; the Secretaries shall appropriately amend the Plan.

(e) CONTINUING AQUACULTURE ASSESSMENT.--The Secretaries, through the coordinating group, shall undertake a continuing assessment of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on a continuing basis--

(1) a complete profile of the aquacultural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incidence, size, and status of commercial aquacultural enterprises;

(2) the identifica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volved in aquacultural research, extension, credit, and market development;

(3) the identification of the various aquatic species being cultured and a description of the status of commercial development of each of those species;

(4)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identification of aquacultural production regions, species, and markets that have significant potential for development;

(5) a catalog describing all Federal programs and activitie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encourage, support, or assist aquaculture; and

(6) the identification of the economic, physical, legal, institutional, and social constraints that inhibit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FUNCTIONS AND POWERS OF SECRETARIES

SEC.

5.(19)(a)MANDATORYFUNCTIONS.--InimplementingthePlan,theSecretariesshall--

(1) provide advisory, educational, and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training) with respect to aquaculture to interested persons, and in providing such assistance,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avoid duplication of similar assistance provided by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by State agencies;

(2) consult and cooperate with interested persons,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State agencies, and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 established under section 302 of the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 (16 U.S.C. 1852);

(3)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aquacultural technology in the rehabilitation and enhancement of publicly owned fish and shellfish stocks (including rehabilitation and enhancement by private nonprofit enterprises), and in the development of private commercial aquacultural enterprises; and

(4) prescribe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lan.

(b) DISCRETIONARY FUNCTIONS.--In implementing the Plan, the Secretaries may--

(1) for the purposes of assessing the biological,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any aquacultural system--

(A) conduct tests of the system, and, if necessary to demonstrate its feasibility, construct, operate, and maintain developmental aquaculture facilities for testing laboratory results, and

(B) conduct such other tests or analyses as may be necessary;

(2) develop methods to enhance seed stocks of aquatic species; and

(3) conduct such other tests or analyses or take such other actions as the Secretaries deem necessary or appropriate.

(c)(20) INFORMATION SERVICES.--(1) In addition to performing such other mandatory functions under this Act--

(A) the Secretaries shall collect and analyze scientific, technical, leg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lating to aquaculture, including acreages, water use, production, marketing, culture techniques, and other relevant matters;

(B) the Secretary shall--

(i) establish, with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 National Aquaculture Information Center that shall serve as a repository for the information generated under subparagraph (A) and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and shall, on a request basis, make that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i) arrange with foreign nation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aquaculture and support a translation service, and

(iii) conduct a study of the ext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aquaculture industry has access to relevant Federal programs which assist the agricultural sector and report to Congress on the findings of such study by December 31, 1986;

(C)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conduct a study, and report to Congress thereon by December 31, 1987, to determine whether existing capture fisheries could be adversely affected by competition from products produced by commercial aquacultural enterprises and include in such study an assessment of any adverse effect, by species and by geographical region, on such fisheries and recommend measures to ameliorate any such effect; and

(D)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undertake a study, and report to Congress thereon by December 31, 1987, to identify exotic species introduced into the United States waters as a result of aquaculture activities, and to determine the potential benefits and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exotic species.

(2) Any production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Secretaries under paragraph (1)(A) shall be confidential and may only be disclosed if required under court order. The Secretaries shall preserve such confidentiality. The Secretaries may

release or make public any information in any aggregate or summary form that does not directly or indirectly disclose the identity, business transactions, or trade secrets of any person who submits such information.

(d) BIENNIAL REPORT.--The Secretary(21), through the coordinating group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Commerce and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22) shall prepare on a biennial basis, and submit to Congress, a report on the status of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Such(23) report shall contain a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actions undertaken with respect to the Plan during the reporting period, an explanation of any revisions made to the Plan during the reporting period, and such other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as the Secretary deems appropriate. The report required by this subsec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Congress not later than February 1, 1988.(24)

COORDINATION OF NATIONAL ACTIVITIES REGARDING AQUACULTURE SEC.

6.(25)(a) ESTABLISHMENT.--There is established within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 interagency aquaculture coordinating group that shall, subject to subsection (f), operate as a Joint Subcommittee on Aquaculture of the Federal Coordinating Council o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herein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Federal Council") established by Executive Order 12039, dated February 24, 1978. The coordinating group shall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members or their designees:

- (1)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who shall be the permanent chairman of the coordinating group.(26)
- (2) The Secretary of Commerce.
- (3)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 (4) The Secretary of Energy.
- (5)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6) The Administrator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7) The Chief of Engineers.
- (8) The Administrator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9) The Administrator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0) The Chairman of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11)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2) The Governor of the Farm Credit Administration.

(13) The heads of such other Federal agencies as are deemed appropriate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erein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Directo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ordinating group.

(b) PURPOSE AND FUNCTIONS.--The purpose of the coordinating group is to increase the overall effectiveness and productivity of Federal aquaculture research, transfer, and assistance programs. In fulfilling this purpose the coordinating group shall--

(1) review the national needs for aquaculture research, transfer, and assistance;

(2)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adequacy of Federal efforts to meet those national needs;

(3) undertake planning,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Federal agencies engaged in th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of aquaculture;

(4) collect, compil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aquaculture;

(5) encourage joint programs among Federal agencie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6) recommend to the Federal Council specific actions on issues, problems, plans, and programs in aquaculture.

(c) REPORTS.--The coordinating group shall regularly report to the chairman of the Federal Coordinating Council on the coordinating group's activities and on recommendations concerning Federal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aquaculture.(27)

(d) FEDERAL CONSISTENCY.--Each Federal department and agency that has functions or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aquaculture or has jurisdiction over any activity that affects, or that may affect,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and policy of this A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coordinating group an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perform such function, responsibility, or activity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policy of this Act.

(e) FUNCTIONS IF FEDERAL COUNCIL TERMINATED.--If at any time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functions of the Federal Council are by executive action terminated or transferred to an agency other than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coordinating group shall carry out its purpose under the direction of the Director. In that ev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ordinating group referred to in subsection (b)(6) and the reports required under subsection (c)(28) shall be made to the Director.

CONTRACTS AND GRANTS

SEC.

7.(29)(a) IN GENERAL.--The Secretaries may each carry out any action that such Secretary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under the Plan through grants to, or contracts with, any person, any other Federal department or agency, any State agency, or any regional commission.

(b) TERMS AND CONDITIONS.--Any contract entered into, or any grant made, under subsection (a) shall contai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Secretary concerned shall by regulation prescribe as being necessary or appropriat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No contract may be entered into, and no grant may be made under subsection (a), for any purpose that is in violation of any applicable State or local law.

(c) LIMITATION.--The amount of any grant made under subsection (a) may not exceed an amount equal to one-half the estimated cost of the project for which the grant is made.

(d) AUDIT.--Each recipient of a grant or contract under this section shall make available to the Secretary concerned and to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audit and examination, any book, document, paper, or record that is pertinent to the funds received under such grant or contract.

CAPITAL REQUIREMENTS FOR AQUACULTURE

SEC.

8.(30)(a)CAPITALREQUIREMENTSSTUDY.--TheSecretaries,throughthecoordinating group,shallconductwithintwelvemonthsafterthedateofenactmentofthisAct,astudyofthecapitalrequirementsoftheUnitedStatesaquacultureindustry.Thestudyshall--

- (1) document and analyze any capital constraint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 (2) evaluate the role that appropriat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does or could play in filling gaps in the normal credit market with respect to aquaculture.

The study will identify the capital needs of the United States aquaculture industry, with emphasis on the needs that are not being filled either in normal credit channels or through government programs for direct loans, loan guarantees, disaster loans, and insurance. Upon its completion, the Secretaries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study to Congress.

(b) CAPITAL REQUIREMENTS PLAN.--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pital Requirement Study conducted under subsection (a), and within six months of the completion of the study, the Secretaries shall formulate a plan for acting on the study's findings. The plan shall include: (1) those Federal actions, if any, found to be necessary to meet financial needs unmet through normal credit channels and existing Federal programs; and (2) recommendations, if any, for legislative actions. Upon completion, the plan shall be submitted to Congress.

REGULATORY CONSTRAINTS ON AQUACULTURE

SEC.

9.(31)(a)REGULATORYCONSTRAINTSSTUDY.--TheSecretaries,throughthecoordinatinggroup,shallconduct,withintwelvemonthsafterthedateofenactmentofthisAct,astudyoftheStateandFederalregulatoryrestrictionstoaaquaculturedevelopmentintheUnitedStates.Thestudyshall--

- (1) include a literature review and a descriptive list identifying the parameters of the issue;

- (2) identify and list relevant current and pending Federal regulations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quaculture operations;
- (3) identify and list relevant current State regulations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quaculture operations in five States selected randomly in five separate geographic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 (4) conduct case studies of ten commercial aquaculture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a wide range of marine and fresh water species to determine the practical effects of regulatory restrictions on aquaculture; and
- (5) develop a flow-chart time line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by means of paragraphs (1) through (4) to identify thos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hat could have the most detrimental effect in establishing commercial aquaculture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Upon completion of the study, the Secretaries shall submit its results to Congress.

(b) REGULATORY CONSTRAINTS PLAN.--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ulatory Constraints Study conducted under subsection (a), and within six months of the study's completion, the Secretaries shall formulate a plan for acting on the study's findings. The plan will contain specific steps the Federal Government can take to remove unnecessarily burdensome regulatory barriers to the initiation and operation of commercial aquaculture ventures. Upon its completion, the Secretaries shall submit the plan to Congress.

AUTHORIZATIONS FOR APPROPRIATIONS

SEC.

10.(32)ForpurposesofcarryingouttheprovisionsofthisAct,thereareauthorizedtobeappropriated(33)

- (1) to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1,000,000 for each of fiscal years 1991 through 2002(34);
- (2) to the Department of Commerce, \$1,000,000 for each of fiscal years 1991 through 2002; and
- (3) to the Department of(35) Interior, \$1,000,000 for each of fiscal years 1991

미국 양식법 (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

Act of September 26, 1980, Public Law 96-362, 94 Stat. 1198, 16 U.S.C. 2801, et seq

이 법안은 미국 양식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미의회 상하원 의원들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미국 양식법” (National Aquaculture Act of 1980)이라 불린다.

연구결과, 목적 및 정책

제 2절 (a) 연구결과 -미의회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1) 특정 어류와 갑각류의 수확이 최적 지속적 생산량(optimum sustainable yield) 수준을 넘어서면서, 증가하고 있는 해양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2) 미국은 국내 해양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류 및 갑각류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국내 경장수지가 악화되고 해양수산물 공급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 (3) 현재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13%가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수산물 양식생산은 6%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의 양식생산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 (4) 양식으로 생산된 해양식품은 식품, 산업재료, 제약산업의 원료 및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환경오염규제 및 감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
- (5) 양식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으로 어류 및 갑각류 등의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증가할 수 있다.
- (6) 미국의 양식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무한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양식업은 신용의 부재, 법적 관할권 문제, 경영 정보의 부재, 미흡한 정부지원 정책 및 불안정적인 종묘공급 등 다수의 과학적, 경제적, 법적, 생산성 문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어왔다.

(8) 미국의 많은 지역 양식업에 적합하지만, 양식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토지이용 및 수산관리정책으로 인해 이들 지역의 양식업 발전이 억제되어 왔다.

(b) 목적 -미국양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양식법의 제정 목적이다. 이를 위해

(1) 미국양식산업정책을 공표한다.

(2) 미국양식산업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3) 미국양식업에 대한 정보의 통합 및 보급을 위해 미국 농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농무부 장관을 양식업 발전운영위원회의 상임회장으로 지명하고 농무부 산하에 국립양식정보센터를 설립한다.

(4)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식업활동 및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어류 양식생산량 증가, 미국양식업발전을 위한 통합된 노력, 해양수산자원의 보존 및 강화, 새로운 양식산업의 창출, 고용증대 및 기타 국익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c) 정책 - 양식업 발전으로 미국 수산물 생산의 무역적자가 해소되고 기존의 상업적 혹은 유어낚시인구를 증가시키며 기타 재생가능자원의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이 미래식품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하고 세계자원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미 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양식업 발전을 장려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국가 차원의 정책이어야 한다.

양식업의 정의

제 3 절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식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1) 양식업이라 함은 해양 동식물을 통제되고 선택된 환경에서 증식하고 배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다목장도 양식업에 포함된다 (다만, 바다목장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주(States)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 연어를 양식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양식시설” 이라 함은 미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양식업에 이용되는 토지, 구조물, 혹은 부속물을 포함한다. 또한 실험실, 부화장, 양성지, 수로식 양식장, 우리, 부화기 및 기타 양식업에 사용되는 장비도 양식시설에 포함된다.
- (3) “양식어종” 이라 함은 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 및 해양 무척추동물, 양서류, 파충류 및 해양식물로 정의한다.
- (4) “운영위원회” 라 함은 제 6절에 의거한 부처간 양식업 운영조직을 의미한다.
- (5) “사람” 이라 함은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 인디안 원주민, 전문기관 및 각 주(State) 법에 따라 조직되어 현존하는 기업, 파트너쉽, 협회 및 기타 단체(지역사회발전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 등)를 일컫는다
- (6) “계획” 이라 함은 미국의 양식산업발전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 4조에 준하여 마련되었다.
- (7) “장관들” 이라 함은 “농무부장관, 상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지칭한다.
- (8) “장관”이라 함은 “농무부 장관” 을 지칭한다.
- (9) “주” 라고 함은 미국 50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사모아, 버진제도, 괌, 북마리아나, TTPI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및 미국령에 속하는 영토를 일컫는다.

미국 양식업 발전계획

제 4 절 - (a) 개요.--(1) 양식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부처 장관들은 미국양식업발전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발전계획안은 양식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농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기타 연방공무원, 주(States) 및 지역어업관리위원회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 (16 U.S.C. 1852) 제 302절에 따라

설립) 및 양식산업 대표단과 협의해야 한다.

(b) 양식업발전계획의 내용 - 발전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업적 및 기타 기준에 의거, 양식생산을 할 경우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종을 각 부처 장관들의 결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한다.

(2) 성장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연구 및 개발, 기술적 지원, 모의 실험, 시민교육, 연수활동 등이 포함된다.)

(3) 양식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A) 양식어장 시설의 설계 및 운영

(B) 수질관리

(C) 폐기물 처리 (온배수 등)

(D) 영양상태유지 및 경제적인 먹이사료의 개발 (자연식품재료)

(E) 생활사, 유전학, 생리학, 병리학 및 어병 통제 (어류 및 갑각류 등에는 해롭지 않으면서 인간에게는 해로운 생물체에 대한 연구 등)

(F) 가공처리 및 시장개발

(G) 생산관리 및 품질통제

(H) 충분한 종묘 공급처 확보

(4) 양식업이 하구 및 기타 해양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관리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5) 양식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혹은 규제성 제약에 대한 해결방안의 분석 및 마련을 포함한다.

(6) 기타 연구 및 개발, 기술지원, 모의시험, 시민 교육, 연수활동 등 농무부 장관이 양식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포함한다.

양식업발전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농무부 장관은 연방 부서, 정부 기관 및 한 개인이 제안해 온, 혹은 제안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 중에서 양식업발전계획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

(c) 행동지침 마련 및 실행. -양식업발전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 농무부 장관이 실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행동지침들, 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각 행동방침이 완수되어야 하는 기간

(2) 각 관련부처 장관들이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또는 연대하여 실행해야 하는 행동지침들

행동지침의 실행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들의 구체적 의무사항은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다.

(A) 법률 혹은 법률적 효력을 지닌 행정조치(Reorganization Plan Numbered 4 of 1970 등)에 의해 부여된 각 부처 장관들의 의무사항

(B) 행정조치의 실행과 관련한 각 부처 장관들의 경험, 숙련도 및 적합한 자원

(C) 관련 부처 장관들의 동의

(d) 양식업발전계획의 수정. -각 부처 장관들은 계획의 실행 및 효율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그 검토 및 양식업 평가에 따라, 장관들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현재 발전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양식 어종이 상당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발전계획에 명시된 활동이 성공적으로 혹은 시기 적절하게 성취되지 않고 있다. 혹은,

(3) 행동지침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의 실행으로 예상되었던 양식업 활동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행동지침의 실행은 종료되어야 하며 각 부처 장관들은 계획의 수정에 착수해야 한다.

(e) 양식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각 부처 장관들은 미국 양식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1) 양식산업 개관 -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업 회사의 생성, 규모 및 현황

(2) 양식업 연구, 교육, 신용 및 시장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및 공공 기관과 관련 조직의 확인

(3) 현재 양식중인 어종 확인 및 이들의 상업적 발전 현황에 대한 설명

(4)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식업 생산 지역, 양식 어종 및 성장성 있는 잠재 시장의 확인

(5) 양식업을 직, 간접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및 활동 목록

(6) 미국 양식업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적, 물리적, 법적, 제도적, 사회적 제약

장관의 역할과 지배력

제 5 절 - (a) 의무적 역할 -양식업발전계획 실행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다음의 내용을 인지하여야 한다.

(1) 장관들은 양식업에 대한 자문 지원 및 이해당사자에게 교육적, 기술적 지원 (연수교육도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타 연방 부서나 관련부처에서 지원되는 내용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장관들은 이해 당사자, 연방 부서 및 기관, 주정부기관 및 지역어업관리위원회(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 (16 U.S.C.) 제 302절에 따라 설립)와 협의하고 공조해야 한다.

(3) 공공자원인 어류 및 갑각류의 생산량 증대 및 상업적 목적을 지닌 민간양식업회사 발전을 위한 양식기술활용의 장려

(4) 미국양식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규정 마련

(b) 재량적 역할. -양식업발전계획 실행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재량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양식업 시스템의 생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A) 장관들은 양식업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스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험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양식시설을 건설,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다

(B) 필요할 경우, 유사한 테스트와 분석실시도 가능하다.

(2) 양식어종의 종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이와 유사한 테스트나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관들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 정보서비스.--(1) 장관들은 전술한 양식법에 따른 의무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A) 에이커, 물이용, 생산, 마케팅, 양식기술 등 양식업과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법적, 그리고 경제적 정보 및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B) 농무부 장관은 --

(i) (A)호 및 양식법 조항에 따라 생성된 정보의 보고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농무부 산하 국립양식업정보센터(National Aquaculture Information Center)를 마련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의 공개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ii) 양식업정보 교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및 번역 서비스 지원

(iii) 미국양식산업의 농업분야 연방지원프로그램에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후 그 연구 결과를 1986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C) 상무부 장관은 기존의 잡는어업 (capture fisheries)이 상업성 양식 어종과의 경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1987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에는 양식 어종 및 지리구가 잡는 어업에 미치는 역효과를 평가하여 그 역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D) 내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양식업 활동으로 미국영해에 유입된 외래 어종의 식별 및 이들의 잠재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 1987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제 (1)항 (A)호에 따라 장관들에게 제출된 생산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며 필요한 경우 법원명령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다. 장관들은 기밀 유지의 의무가 있다. 장관들은 정보제공자의 신원, 사업거래 혹은 영업비밀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 혹은 요약된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d) 격년 보고서- 농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및 내무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미국 양식업 현황에 대한 격년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양식업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착수된 행동지침에 대한 설명과 평가, 발전 계획 개정의 근거 및

농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견해나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늦어도 1988년 2월 1일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미국양식업 활동의 통합

제 6 절 (a) 설립.--각 부처간 양식업운영위원회는 미국과학기술국 산하기관으로 1978년 2월 24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039)에 의해 설립된 과학, 공학 및 기술을 위한 연방양식업통합위원회(Federal Coordinating Council o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후술에서는 연방위원회라 칭함)의 공동분과위원회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양식업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미국 농무부 장관, 운영위원회의 상임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 미국 상무부 장관
- (3) 미국 내무부 장관
- (4) 미국 에너지부 장관
- (5)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 (6) 미국 환경보호청장
- (7) 공병감 (The Chief of Engineers)
- (8) 중소기업청장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9) 국제개발처장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10) 테네시 계곡 개발청장 (Tennessee Valley Authority)
- (11) 국립과학재단이사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12) 농업신용국장 (Farm Credit Administration.)
- (13) 기타 연방 부처의 수장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미국과학기술국장 (Director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국장으로 후술하겠음)에 의해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b) 목적과 기능- 운영위원회는 양식업에 대한 연구, 이전 및 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1) 양식업 연구, 이전 및 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요 검토

- (2) 수요 충족을 위한 연방지원의 효율성과 적합성 평가
- (3) 계획수립, 조정 및 양식업과 관련된 과학, 공학 및 기술 관련 연방 부처간 소통
- (4) 양식업에 대한 자료 수집, 작성 및 보급
- (5) 상호이익을 위한 연방부처간 합작 프로그램 장려
- (6) 양식업 관련 쟁점, 문제점,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활동방안을 연방의회에 제안

(c) 보고-운영위원회는 연방위원회(Federal Coordinating Council)에 의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양식업 관련 연방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d) 일치성의 원칙- 양식업과 관련한 역할과 책임이 있거나 양식법의 목적과 정책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부서 및 기관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역할, 책임 및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양식법의 목적 및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e) 연방위원회 기능상실 -양식법 제정 후, 행정조치로 인한 연방위원회의 역할이 상실되거나 그 역할이 미국과학기술국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위원회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의 제안(제 (b)조 (6)항)과 보고(제 (c)조)도 국장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 및 보조금

제 7 절 - (a) 개요.-- 관련부처 장관들은 양식업발전계획에 따라 개인, 연방부서 및 기관, 주정부 기관이나 지역위원회에 보조금 지급 및 계약을 통해 본인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 조건 -- 제 (a) 조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농무부장관이 미국의 국익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이거나 적절하다고 규정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연방법이나 주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목적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c) 제약- 제 (a)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d) 감사-제 7절에 따른 보조금 수령자 및 계약 당사자는 관련 장관 및 미국 감사원장(Con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에 자진 출두해 감사 및 조사, 관련 서적, 문서, 서류, 및 계약 및 보조금 수령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양식업 필요자본량

제 8 절. - (a) 필요자본량에 대한 연구.-각 부처 장관들은 양식법을 제정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양식업 필요자본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이 연구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미국 양식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확충 제약요소를 기록하고 분석한다.

(2) 양식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신용대출시장에서 연방차원의 금융지원이 자본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미국 양식산업에 소요되는 필요자본량을 확인하고, 일반신용대출 시장이나 직접대출, 대출담보, 재난대출금 및 보험 등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충되지 못한 자본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가 종료되면, 각 부처 장관들은 그 연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 필요자본량계획(CAPITAL REQUIREMENTS PLAN).- 제(a)조에 따라 실시된

필요자본량연구 (Capital Requirement Study)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들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적인 신용대출시장 및 기존의 연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마련되지 못한 자본금 확충을 위한 연방차원의 행동지침. (2) 적절한 입법조치를 위한 제안. 이 계획은 수립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양식업 규제

제 9 절 - (a) 규제성 제약에 대한 연구 - 관련부처 장관들은 양식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State) 및 연방정부의 규제가 미국양식업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이 연구의 다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1) 문헌검토 및 규제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세목록을 포함한다.
 - (2) 상업적인 양식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및 계류 중인 연방법령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 (3)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미국 5개 지역에서 무작위로 5개 주(States)를 선정, 선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성 양식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 규정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 (4) 다양한 해수 및 담수 어종을 포괄하는 10개 양식업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양식업에 대한 규제가 양식업활동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 (5) 제1항에서 제 4항의 방법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도(flow-chart time line)를 개발함으로써 미국에서 상업적인 양식산업발전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및 법률상의 제약을 확인한다. 사례연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부처 장관들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b) 규제성 제약에 대한 행동지침계획 --제 (a)조에 따라 진행된 규제성 제약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 장관들은 연구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행동지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연방정부가 상업적 양식산업의 개발 및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성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동지침계획이 완료되는 즉시 각 부처 장관들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산편성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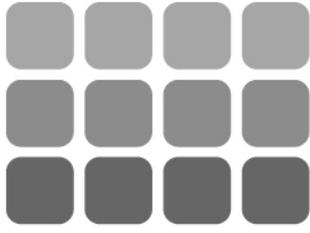
제 10 절 - 양식법 조항의 준수를 위해 각 부처별로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

- (1) 미국 농무부에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매 회계 년도마다 1백만 달러 편성
- (2) 미국 상무부에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매 회계 년도마다 1백만 달러 편성
- (3) 미국 내무부에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매 회계 년도마다 1백만 달러 편성

제 10절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다른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과는 별도로 취급된다.

면책조항

제 11절 -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내용도 연방기관 공무원, 연방부서 및 기관이 그들의 역할, 책임 및 다른 법률조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수정, 폐지하거나 보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부 록 2



노르웨이 양식법

개요

1. 양식법 제정 배경	289
2. 양식법의 주요 내용	290
3. 양식산업의 현황	292
4. 면허할당	298
5. 양식면허의 양도, 담보 및 등록	305
6. 양식업관련법 (Act of 17 June 2005 no.79)	310

도입

본 문서에는 새로운 양식법과 그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이 다루어져 있으며, 양식법은 2006년 1월부로 발효될 것이다.

또한 양식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일부 양식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문서가 노르웨이 의회(Odelsting)에 제출된 안건을 단순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1. 양식법의 제정 배경

어장법(Fish Farming Act)이 도입되었던 20년 전에는 기존의 양식회사를 면허제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업 활동이 보다 책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새로운 양식법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양식법 개정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현재까지는 양식법 개정이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985년 이래, 양식업은 대대적인 발전을 해왔다. 양식업은 상당한 성장력을 과시해 왔으며 그 소유권/구조, 규모, 생산 기술, 지역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문제들은 세월과 함께 그 중요성이 희석된 반면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 되기도 했다.

해양산업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양식업은 미개척의 생산기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개념으로 변화할 것이다. 더불어, 식품 안전성, 건강, 수산자원의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생산 활동, 연안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고찰, 시장 접근성이 추후 양식업을 다루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어장법이 도입된 이래 양식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정치목표나 관점이 변화되어 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장법만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양식업의 가치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낙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미래 지향적인 양식업 발전 및 공공행정활동을 위한 보다 현대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수산연안부 (Ministry of Fisheries and Coastal Affairs)는 다음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양식법을 제정했다.

- 1 양식산업의 성장과 혁신 - 노르웨이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양식업의 수익성 증대 및 혁신
- 2 양식산업 및 공공행정업무의 단순화 - 효율성 극대화 및 사용자 편의성 추구
- 3 환경 - 현대적이고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제도
- 4 연안지역에서 타 토지이용자와의 이해관계 - 토지이용의 효율화

2. 양식법의 주요 내용

새로 제정될 양식법은 어장법 (Fish Farming Act) 및 바다목장관련법(Sea-Rancing Act)을 대체하게 된다. 이들 두 법의 주요 목적은 유지하면서,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신규 양식법은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틀 안에서 양식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연안지역에서의 양식업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식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수익성 있는 활동을 통해 양식업자들의 가치창출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양식법은 연안지역의 환경 및 토지이용과 같은 국익을 책임있게 관리함으로써 양식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목적이 달성될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이익 또한 실현될 수 있다.

수익성 창출이 연안지역 양식업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발전의 기반이 되며, 이는 양식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양식회사를 소유하나’ 에서 ‘양식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로 초점이 이동할 것이다.

즉, 수산연안부의 양식업 소유권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반면, 양식업 운영에 광범위한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양식산업이 가치 창출을 위한 최적의 산업구조를 모색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양식업이 연안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연안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양식업에 적절한 자연조건을 가진 수익성 있는 회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수산연안부가 연어와 송어에 대한 면허할당을 규제하고 면허의 지역할당을 규정하는 조항은 양식법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야만 할당정책에 지역이 고려될 수 있다.

새로 개정될 양식법에는 면허의 양도와 담보권이 도입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소유권 폐지는 면허의 양도 및 담보와 더불어 양식업을 다른 산업에

비해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식업이 미래에 닥칠 난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에는 모든 형태의 양식업을 설립하기 위한 신청 과정이 단순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관련 당국과 지방자체당국 간의 효율성 향상과 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신청 절차에 따르는 시간도 규정에 의해 제약하고 있다.

현재 전통적인 신청자 경쟁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어 및 송어 양식에 대한 면허할당이 양식법에 따라 보다 자원소모가 적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신,

자격검증을 받은 신청자간 추첨이나 입찰을 통해 신청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신청자들간 우선순위를 가리는 과정이 생략되고, 동시에 면허할당을 받기 위한 신청인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식산업 및 관련 행정부서는 신청과정에 소모되는 불필요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면허가격은 미리 정해진 금액이나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을 통해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규정될 수 있다.

양식법에는 연안지역 해양 환경문제와 기타 토지 사용 및 사용자들간 이해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존의 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방안이 새로운 양식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환경보호규정으로 인해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의무사항 및 행동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양식활동이 연안지역의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양식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토지 이용 및 사용자간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이런 환경보호 및 토지 사용에 대한 조항으로 인해 양식산업은 기타 사회적 관심과 적절히 공존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3 양식산업의 현황

양식업이란?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해안해상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오랜 기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안선, 우수한 접근성 및 수질은 양식 생산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전제조건이다.

지난 40년간 노르웨이 양식업 역사는 팽창적이고 역동적인 노르웨이 수출산업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양식업은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가장 세계적인 산업분야 중 하나로 대부분의 해안지역을 따라 자연스런 양식업의 지역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양식산업은 어류, 연체류, 극피동물, 갑각류 및 기타 해양 동식물 생산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체들은 일차적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되지만, 화장품이나 제약산업에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 유기체의 개체수, 중량 및 품질의 향상,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이 양식업을 하는 주요 목적이다. 이는 적극적인 어류 급식, 어병 치료나 자연 서식지에서 이들 유기체의 선별과 보관을 통해 가능하다. 양식업 회사들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생산에서 시작해 명백한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규모 생산설비를 발전시켜왔다.

1960년대 말 양식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노르웨이 양식산업은 발전을 거듭하며 생산어종과 그 형태에 다각화되어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식을 어류양식(Fish Farming)과 바다목장(sea ranching)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해왔다. 어류양식은 육상, 우리/울타리, 고정된 시설 위에 설치된 수조나 해수 및 담수에 설치된 구조물에 어류를 수용하여 기르는 방식이다. 반면, 바다목장은 인공적인 설치물 없이 수산자원을 해저에 방류 및 재포획하면서 양식하는 형태이다. 현재까지는 바다목장 양식업이 움직이지 않는 종을 생산하기 방식으로만 허용되어 왔다.

양식업은 유기생물체 생애주기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알의 추출 및 수정란의 부화에서부터 다음 과정을 위한 유기물의 수용까지 진행되고 있다. 양식업자가 유기생물체 양식활동의 어느 단계에 개입하고 있는냐에 따라, 즉 친어 및 부화장 생산에서부터 식용어 생산 과정 등의 양식단계에 따라 양식업을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양식업자들은 연어 및 송어 양식, 혹은 혼합양식 등 양식 어종의 이름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는 어류의 생애 주기 및 어종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이 양식업계 및 관련행정부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식업은 기술의 사용, 양식어장 운영구조 및 상업적 발전단계의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반면, 가리비와 바닷가재의 바다목장은 초기의 실험단계라는 특성이 있다. 노르웨이는 연어 및 무지개 송어 양식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다. 양식산업의 미래 상업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연어 및 송어 양식업자들은 오랫동안 상당한 수익을 누려왔다.

가치창출의 잠재성

해양수산물 수출 증가는 세계인구성장, 각국의 구매력 향상, 해양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관심 증대, 가공수산물 및 기타 수산물의 무역량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천연수산자원, 시장, 경쟁력 및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양식업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창출은 시장 상황 및 원료이용기술과 일차적인 관련이 있다.

노르웨이 양식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낮은 수익률이 일차적 목적인 원자재 공급산업에서부터 보다 다각화되고 경쟁적이며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양식산업이 성장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양식업에서 다양한 잠재성장 시나리오가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원재료의 킬로당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 생산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혁신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양식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양식산업의 성장이 저 마진 시장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원료공급자 중심의 산업으로부터 보다 다각화되고

경쟁적이며 수익성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노르웨이 양식업의 잠재 성장을 위해 언급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원료의 킬로당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 생산개발, 시장 등을 통한 혁신에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연어와 송어의 수출액은 NOK 123.6억원 이었으며 신규 양식어종의 수출액은 NOK 9,350만원이었다. 지난 20년간 연어와 송어를 제외한 어종을 생산하는 양식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향후 20년에 걸쳐 대구, 넙치, 갑각류와 같은 새로운 양식어종에 대한 연구 결과와 상업적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연어 및 송어의 생산과 더불어 양식업이 그 잠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류의 1차적인 식품으로써의 기능 이상의 제품 개발 및 기타 어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수산어종을 양식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경쟁력

노르웨이 양식업은 세계 시장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들어 세계 수산물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수산물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국가간 어업기술 이전 또한 이러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양식업의 기술 경쟁력이 사라지고 연어 및 송어에 대한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 또한 최근 들어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주요 시장에 대한 무역 장벽 또한 노르웨이 양식업에 불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경쟁국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EU 가입국이다. 칠레 및 페로제도와 같은 경쟁국은 미국 및 EU와 같은 주요 수산물 시장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을 맺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쟁국에서 양식업에 허용하는 상업적 자율성 및 양식업에 최적화된 산업구조가 노르웨이 양식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르웨이 양식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대부분 경쟁국에 비해 시장적응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노르웨이 양식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른 산업참여자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때, 노르웨이 양식업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비용절감, 우수한 시장 접근성 및 적절한 상업적 자유의 보장을 통해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환경상황

노르웨이 양식업을 관할하는 행정부처는 양식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규제 및 양식업계 자체 노력의 결과, 노르웨이 양식업은 다른 식품 산업군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환경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새로운 환경상태 측정법이 다수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유식 가두리 양식시설 설치 기술 표준의 의무화, 환경상태 평가 및 내부감시체계의 확립으로 양식업의 환경적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최근 양식업 성장세에서 보여주듯이, 현재 양식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중요한 환경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양식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양식업은 영양염 등의 배출로 주변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양식업의 생산성 또한 오염된 주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이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생태계를 상당한 정도로 오염

시키거나 파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양식산업 또한 우수한 생산환경을 보장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개별적 기업차원에서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양염 및 유기물의 배출이 일반적으로는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는 양식업 회사들의 지역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식업이 과거에 비해 보다 분산된 형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수용상태 및 지지력이 우수하고 자체정화능력이 뛰어난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도한 양식업 행위는 각종 배출물 침전 및 확산과 부패로 인해 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에 적합한 장소에서 양식업의 지역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염 및 유기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적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는 양식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양식업자 및 관련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현재 양식업은 다수의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연어 양식업의 경우, 관련 정부 부처 및 양식업자들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두고 있는 것은 바다로 탈출하는 연어를 감소시키고 연어 이 (salmon lice)를 박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식업자들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왔다.

노르웨이 수산당국은 양식어장 설치 기술 표준화를 위한 규칙과 의무사항을 공표했다. 이는 신규 어장 및 기존의 어장에 대해 적용되며, 신규 양식어장시설에 대해서는 수산물 인증제 (product certification)를, 기존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격증(capability certificates)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표준화를 도입하게 된 일차적 목적은 양식어장에서 탈출하는 어류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어류탈출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능력인증제 (Special competence requirements)도 도입되었다. 게다가 2005년 발효된 내부통제규정의 도입으로 관련 규칙들의 준수를 확고히 함으로써 어류탈출 및 사고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연어 이 (salmon lice) 문제는 연어 이(salmon lice) 퇴치를 위한 국가사업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특별운영방침 및 효과적인 치료제의 도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앞서 언급한 양식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37개 노르웨이 최초의 연어수로와 21개 연어 피오르 마련에 대한 노르웨이 국회(Storting) 결의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Recommendation no. 134 to the Storting (2002-2003). 이 결의안 완성과 관련된 정부의 제안이 2005년 가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양식업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도 동시에 마련 중이다. 야생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식어종의 탈출이 야생연어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노르웨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별 양식시설에서의 최대생물량 및 어밀도 유지에 대한 의무화, 시설 간 최소거리유지, 어류도살 및 어병발생 후 어장휴장을 통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바다목장과 관련해서 수산당국은 양식지역 환경상태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연안 생산지역의 필요성

오늘날 양식업 생산은 연안지역 인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예상 가능한 양식적합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식업의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자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토지 이용자 및 연안지역사회의 이익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해안지역의 많은 곳이 산업활동, 자연보존구역 및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양식업 목적으로 사용 승인된 지역은 2,800군데에 달한다. 양식업 생산에 적합한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양식업 적합 지역이 이미 고갈된 상태다. 따라서 이런 접근성이 차후 양식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희소 가치를 가진 요소가 될 것이다.

양식적합지역으로의 접근성과 이들 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식산업은 다른 토지이용자 및 해양환경보존이라는 이해관계와 적절한 공존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양식가능지역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양식업으로 최대한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양식업은 해당 지역의 환경상태, 기타 관련된 양식생산 및 토지 이용자와 환경에 대한 이해관계를 평가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양식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기존 토지이용과 해양환경보호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양식업 활동은 일반적으로는 기타 토지이용자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양식시스템에 따라, 교통, 여가활동 및 전통적 어업활동이 양식지역 인근에서 동시에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지역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경우, 이들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양식업의 중요성

양식업은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양식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가족 소유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양식업은 지난 20년에 걸친 급격한 성장을 통해 소수의 어종에 대한 실험적인 단계의 양식업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화된 산업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생산형태 및 생산 어종의 다양화와 상업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폭넓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양식업은 소규모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던 산업 초창기 시절부터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양식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연안지역 양식업 발전에 최대한 기여하려는 수산당국의 적응노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양식업자들의 양식어장 운영 통합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양식 생산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전 해안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양식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해안지역이 양식업 생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정책은 양식업의 수익성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익성이 향상되면, 양식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역동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용창출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양식업은 공급업, 연구, 행정 및 관리와 관련된 형태의 고용창출에도 과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Part II 양식법의 세부 내용

4 면허할당 (Allocation of licenses)

면허의 의무화

현재 어장법(Fish Farming Act)과 바다목장법 (Sea Ranching Act)에 따르면, 양식업 및 바다목장업에 종사하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무면허 양식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 금지 행위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허는 행정적 결정사항이다. 면허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식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과 더불어 실제로 행정적 결정에 명시될 것이다. 면허 보유자는 면허가 허용하는 양식 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은 실제 면허와 관련된 부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면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수산당국이 면허를 할당하는 것은, 일종의 공권력 행사이다. 따라서 수산당국은 면허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별 양식업자들의 역할은 그 면허를 승낙하거나 거절하는 데 국한될 뿐이다.

양식업 면허제는 새로 제정되는 양식법이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연어와 송어 양식 면허의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제한적인 면허할당이 연어와 송어 양식면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수산부는 개인면허제도가 일반적 규정과 결합되어 양식업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요건을 예상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개별 양식업 회사와 연관된 특수 상황은 개별 면허에 세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양식업 면허는 면허 보유자에 대한 일련의 의무와 권리를 말한다. 면허의 주요 내용은

양식법의 첫 단락인 제 5절에서 시작되며,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어종을 정해진 양만큼 생산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양식 어종에 대한 생산 면허는 하나의 동일한 의사결정을 통해 할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면허가 다른 시간에 두 개 이상의 다른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할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법에 따라 면허의 일부 내용에 대한 불복 기간도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의 면허로 취급되는데, 그 이유는 특정어종이 특정장소에서만 생산될 수 있을 때 양식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식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면허취득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양식업자 개별적으로는 더욱 보장하기 어려운 사회적 제반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수산당국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양환경보호와 연안지역의 적합한 사용이야말로 양식업 시설의 설치, 운영 및 폐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요소이다. 환경 및 지역문제 관련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이 면허를 의무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와 더불어, 면허의무제가 요구되는 것은 면허의 분포와 희소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어 및 송어 양식업 면허할당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장법 첫 단락 제 6절 참고) 만약 양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어업인이 있는 반면, 할당되는 면허수는 제한되어 있다면, 면허 취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업인들간 경쟁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면허를 할당하는 한가지 방법은 수산당국이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는 평가에 가장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양식면허를 의무화함으로써 양식활동이 일반규정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는 것보다 유연하게 양식활동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면허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식산업이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면허 취득 시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식업자들은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항상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산연안부는 연어와 송어 양식면허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면허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취득하는 면허 수를 국한하려는 정치적 결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면허할당권 조정

양식면허신청절차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면허 신청자는 수산당국에 신청서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수산당국이 그 신청서를 다른 관련 당국에 전달하게 된다. 수산당국은 노르웨이 카운티지사 (환경당국),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Norwegian Food Safety Authority) 및 노르웨이 연안국 (Norwegian National Coastal Administration)과 등 다양한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당국의 의견 및 결정도 확실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부화장 생산과 같이 수로침식의 결과를 초래하는 육상양식업면허는 노르웨이 수자원 및 에너지 관리청 (Norwegian Water Resources and Energy Directorate(NVE))의 평가가 수반된 후에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허신청절차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면허 신청자가 하나의 주무부처와 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주무부처가 관련당국과 면허절차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01년 이후 양식업 관련 부서간 면허신청절차의 통합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 시도 중에 있다. 이는 “Trndelag Model” 라는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카운티 지사(오염통제법),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Norwegian Food Safety Authority, 식품안전법) 및 노르웨이 국립연안국 (Norwegian National Coastal Administration, 노르웨이 항만법)에서 파견된 당국책임자들이 어업위원회 (Directorate of Fisheries) Trndelag 지역사무소에 파견되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대안에 대한 최종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식업계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상업무의 행정처리기간이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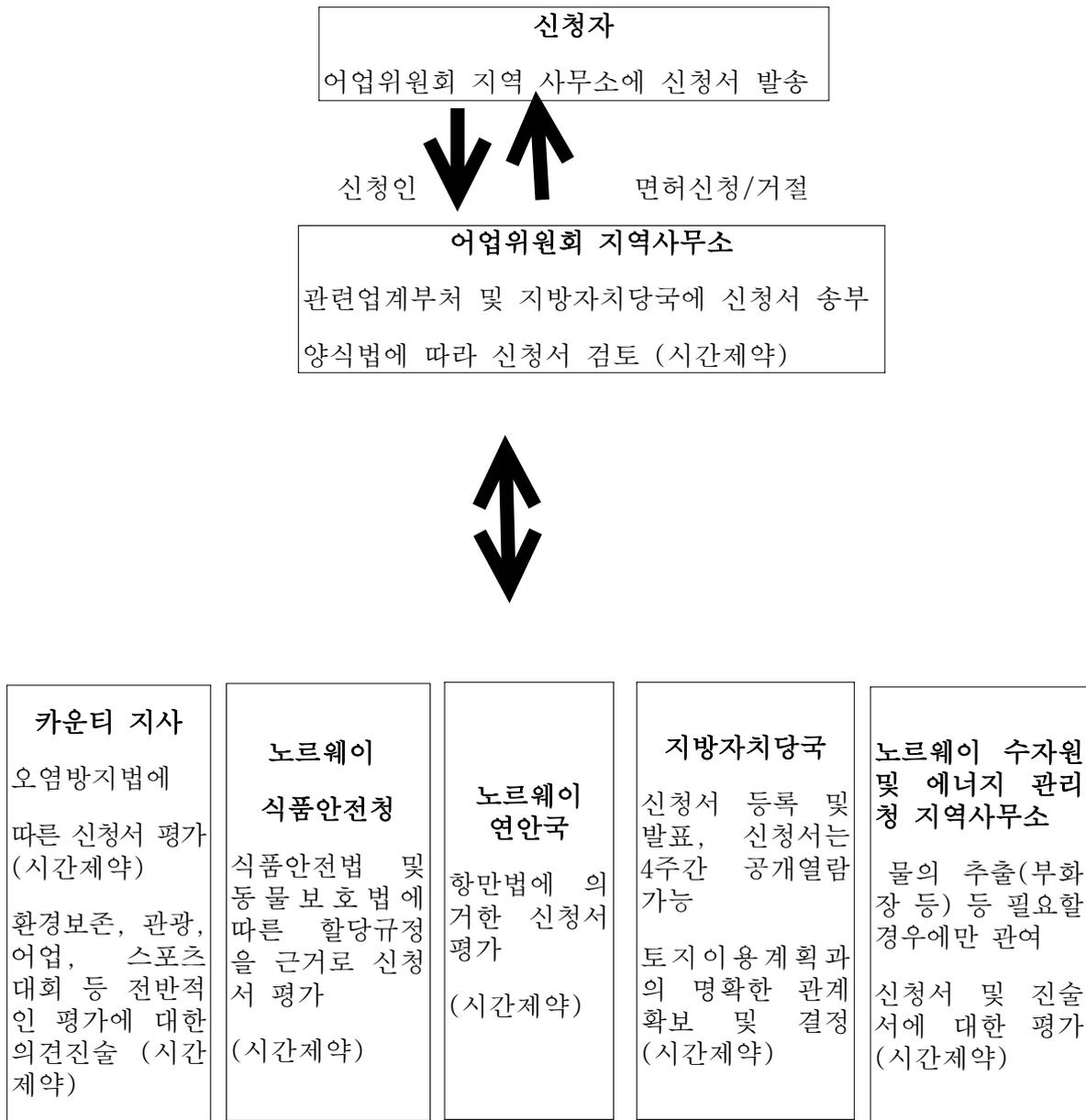
수산연안부는 수산당국 (양식법에 따라)과 관련부처간의 통합 및 지방자치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관계 주장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양식법안은 2가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1 어장법 및 바다목장법에 따라 과거 수산당국의 업무였던 어류 및 인류건강에 대한 평가를 식품안전법 (Food Safety Act)에 따라 규정하자는 제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으로 개별법과 관리감독당국 간 보다 확실한 권한분배가 가능해질 것이다.
- 2 수산당국은 양식신청절차의 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제권한 등 면허할당절차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무와 권한을 부여 받았다.

수산당국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면허신청절차가 최적의 상태로 통합되면 양식업자들은 가능한 하나의 주무부서와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수산연안부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안의 개정에 따라 모든 관련 행정당국과 지방자치당국은 효율적인 면허신청절차 확립을 위한 의무를 지게 되며 수산당국은 효율적 면허신청절차 확립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관련당국의 의사결정이나 성명서 발표에 소요되는 행정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모든 행정업무처리가 일괄적으로 혹은 적절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조정될 것이다. 관련당국이 수산당국에 자체 평가 및 의사결정을 전달하면, 수산당국은 정해진 시간 내에 평가 및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림 <부록 2-1>의 행정업무처리 모델 참고



〈부록 2-1〉 양식면허처리과정

연어 및 송어 면허할당의 원칙

양식법은 노르웨이 수산연안부에 양식업 면허 부여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면허 할당의 대상에 대한 결정과 면허의 범위는 수산연안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면허할당의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쿼터할당면허를 부여할 지, 쿼터 제한이 없는 영구적인 면허를 부여할지에 대해 명백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구면허는 현재 어장법 제 6절에 따라 연어와 송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양식업에 할당되고 있는 주요 형태이다. 하지만, 영구면허가 바다목장면허에 할당된 적도 있다.

바다목장면허는 바다목장법(Sea Ranching Act)에 따라 영구할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르웨이 수산연안부는 양식업의 신중한 발전을 위해 면허할당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연어와 송어에 대한 양식면허는 ‘할당라운드’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부여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수의 연어 및 송어 면허가 어업인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특정 기준이 제시될 것이다. 연어 및 송어 면허에 대한 관심이 실제 할당될 면허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면허 신청자들은 할당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수산당국은 전통적으로 지원자 경쟁에 기반해서 면허를 할당해왔다. 이는 면허할당기준에 가장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자들만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부터는 면허 취득 시 면허가격을 지불해오고 있다.

초기의 연어와 송어 할당라운드 경험(1998년 면허 재할당라운드와 2002년-2003년의 할당라운드)에 비추어볼 때, 전통적인 지원자경쟁 방식은 다양한 면허 신청인 간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요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할당’이라고 하는 양식산업의 정책목표 달성에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 사용된 방법은 전통적인 지원자 경쟁방식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자원이 요구된다. 이것은 양식산업 및 관련 기관 모두에게 막대한 자원 소요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원칙이

사용될 수 있으며 ‘할당’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

양식법에 의해 전통적인 지원자 경쟁방식을 통한 할당 및 쿼터 면허할당 시 보다 단순한 절차에 의해 신청자들 간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

수산연안부는 경쟁 지원자들간 비교가 지원자들의 면허할당목표 실현에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들간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은 다음 단계다. 새로운 할당제도의 핵심원칙은 자격검증시스템인데, 이 제도를 통해 수산연안부는 이미 자격검증을 받은 신청자들 중 누구에게 면허가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자격만 있으면 당연히 면허할당 대상자가 된다. 다음단계로 자격검증을 받은 신청자들간 추첨이나 기타 방법을 통한 선정작업이 수반된다. 여기서 경매 혹은 입찰 진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면허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2002년과 2003년에는 면허가격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경매라고 후술하게 될, 비공개 혹은 공개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은 그 대안이 된다.

수산연안부는 면허할당의 필수원칙이 신청자에 대한 최소요구사항의 충족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뿐이며, 전통적인 지원자 경쟁방식 혹은 단순화된 절차 등 면허할당방법과는 무관하다고 믿고 있다.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양식업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간의 우선화 작업이 진행된다. 만약 전통적인 신청자 경쟁을 통한 자격 우선화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1 면허가격이 지불되지 않거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면, 신청자들간 우선순위는 자격검증을 받은 지원자 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진다.

2 만약 면허의 시장가격이 결정되면,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을 통해 신청자 우선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면허가 할당되는 것이다.

신청자 우선순위는 2단계 추첨을 통해 정해질 수 있다.

* 처음 단계에서 신청자가 평가 받게 되는 것은 할당을 받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다. 이 기준에는 대표적으로 자금조달능력, 실행방안, 전문성 등이 포함된다. 만약 신청자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2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 두 번째 단계에서, 신청자는 사실상 추첨이나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한가지 안은, 동일한 신청자 집단으로부터 지정신청인을 추첨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신청자들을 특정 카테고리 분류하는 것이다. 만약 입찰을 통해서도 면허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면허할당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면허할당과정을 단순화하자는 제안의 핵심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청자평가작업 및 그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처리에 공공자원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가치창출극대화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위해서는 가치창출 실현과는 실질적으로 무

관한 기준을 통해 신청자들을 우선순위화 함으로써, 수산당국을 ‘할당’ 의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다양한 분류에 속해있는 신청자들 간에 정확한 추첨을 실행하는 것은 신청자들간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준다. 추첨을 통해 면허를 할당함으로써 수산당국에 대한 불만 및 그로 인한 소송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단순화된 할당작업을 통한 효율성 증대, 자원사용의 감소 및 불편사항 및 소송과 관련된 행정업무의 감소로 인해 수산당국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산업활동 촉진 및 단순화라고 하는 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하게 된다.

지불 - 고정가격 또는 입찰

2001년 6월 12 일 입법개정으로, 어장법의 제 6항이 개정됨으로써 관련 수산당국은 신규할당 시 면허가격지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무료 면허 발급이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양도되는 불상사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면허가격을 미리 고정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2002년과 2003년 입찰에서 마르카 화페로 공시된 면허가 그 예이다. 2002년 면허를 할당 받는 신청자들이 고정가격 지불을 거절했다. 2003년에 핀마르크주에는 면허 신청자가 전무했다. 이와 같은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Nord-Troms와 핀마르크 지역의 건당 면허가격은 NOK 4 백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NOK 5백만원으로 유지되었다.

공개 혹은 비공개 입찰은 연어시장상황 변동이 신규 면허가격 지불 능력과 지불의지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면허가격은 면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양식업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 가격은 시장가치에 비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면허가 시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될지는 양식업자들의 판단이 될 것이다

5 양식업 면허의 양도, 담보 및 등록

도입

양식법은 새 양식법령에 양식면허의 법적 양도 및 담보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식면허 등기부도 마련될 것이다.

어장법과 바다목장법의 법적상황

어장법에 따르면, 면허가 제 3의 법적 실체에 양도되면, 면허 양수인은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왔다. (제 3절과 제 4절 참고) 게다가 바다목장면허는 양도가 불가능했다. (바다목장법 제 8절 참고)

그러나 수산당국은 양도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에 의해 양식면허양도를 허용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새로운 법적 실체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어장법의 의무조항에 따라 수산당국은 면허할당이 소유자변화에 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청을 통해 면허의 재할당이 가능하도록 관행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제는 다른 면허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들이 새로운 면허보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면허양수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재할당이 성립된다. 관련수산업계는 면허 소유자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면허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면허의 양도가 아니라 면허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면허의 재할당이다.

바다목장면허는 제 8절에 의거하여 담보물로 이용될 수 있다.

어장법에 따라 면허의 담보권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된 적이 없다. 그러나 현 규정에 따라 담보권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에 대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면허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통제권을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담보 및 저당법 제 4-1절, 제 4-2절, 운영규정 제 27절 참고).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함으로써 담보권자는

회사의 자기소유지분을 통해 면허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지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는 면허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보장받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양식면허가 유상양도될 경우, 그 양식업 회사가 양도가격을 가져갈 것이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

양도 및 담보권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면허 양도는 공식적인 승인이나 허가 절차 없는 개인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즉, 면허할당을 받기만 하면 누가 면허보유자가 될 수 있는지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면허 할당 시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었다면, 면허감독기관이 면허의 이용을 감독 통제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식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면허가 양도될 경우, 면허와 관련된 규정조건 또한 양수인에게 양도되며 이것은 어장법에 따른 재할당 관행과도 부합하게 된다.

면허양도 및 담보를 허용하는 것은 양식 지역에서 양식활동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면 사회적 이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다. 면허가 양도되었을 때, 새로운 면허 양수인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양식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다른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양식업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양식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면허의 담보권이라 함은 면허가 담보 채권자의 선취특권 행사를 위한 담보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담보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및 채권추심과정에서 선취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보호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면허담보는 공적 승인이나 허가 절차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담보권자는 압류자산의 매각을 통해 그의 권리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및 저당법 제 1-1절 참고) 따라서 무담보 채권자는 담보채권자가 변제 받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 담보권이 있으면 면허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감으로써 이행강제금의 지불, 벌금 납부 및 원상회복의무 실행을 강제할 수 있다. 선취특권은 법에 의해 즉시 파생되는 법적담보물권으로 별도의 등록, 담보권의 포기 및 기타 법적보호장치 없이도 발생 즉시 전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양식법에 따라 법적 담보권에 최우선 순위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다른 담보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권과 담보권을 도입하게 된 목적은 양식업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업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질서정연하고 예상 가능한 규범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수산연안부는 면허의 양도 및 담보권 도입으로 양식업계가 더욱 예측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자본 접근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더불어, 일상적인 상업거래를 유연하게 영위하기 위한 양식업계의 요구가 보다 폭넓은 제도 안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담보권으로 인해 양식업 회사의 신용도가 향상되고 자본차입이 용이해지며 대출 조건도 완화될 것이다. 대출약정 기간 또한 단기에서 장기로 늘어날 수 있다.

양식업 회사가 파산할 경우 면허의 가치가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도 면허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이 자사의 선취특권 행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산연안부는, 면허양도권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의지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자산 매각이 더욱 용이해지고 투자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식산업의 자본 접근성과 관련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적용될 것이다. 면허양도가 허용되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보다 확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수산당국의 행정지배 기회와의 관계

양식업 면허 보유자는 제한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특정어종을 생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왔다. 양식활동의 법적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양식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의 내용과 적용조항이다. 따라서 양식면허는 규정의 변화에 전적인 적용을 받게 되며 면허할당 후 변화된 규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면허의 양도 및 담보권은 면허보유자의 법적 소유권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양식지역에 대한 소유자의 실질적 사용권을 증가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면허보유자의 양식지역 처분은 전적으로 양식법에 의거한 공공면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사유재산법과는 무관하다.

수산연안부는 면허의 양도 및 담보권으로 인해 수산당국의 관리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들 양도 및 담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면허의 가치변화에 중요할 수도 있는 면허 취소 및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당국의 지배력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도 및 담보권은 면허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그 이상의 다른 권리가 파생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양수인이라도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던 권리 이상의 것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기업합병규제에 대한 경쟁법(Competition Act) 법령에 따라, 산업참여자가 기업합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 (경쟁법 제 5장 참고)

양식등기부의 세부내용

면허의 양도 및 담보권과 관련하여, 양식등기부 등재를 통한 등기부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면허담보권이 도입될 경우 등기부 제도를 통해 면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 및 면허 관련 채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 제도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목적성의 등기부를 등재하는 것이다. 등기부는 담보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등기부가 담보권에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제도로 보다 용이하고 측량 가능한 면허의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면허 등기부의 기능과 관리가 동산담보등기부 및 유류 등기부 등 현존하는 등기부 제도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르웨이 어업위원회는 현재 양식등기부를 통해 양식면허보유자를 파악 중에 있다. 이 등기부는 공개 열람이 가능하다.

등기부에는 개별 면허에 고유의 숫자가 부여되어 있다. 면허보유자, 면허의 상업성 등 양식 목적에 따른 분류, 식용어 등 양식활동, 양식규모, 양식어종 및 양식시설의 설립일 등 면허에 대한 세부 정보 또한 기록되어 있다. 면허가 허용하는 지리적 범위 및 이들 양식어장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 또한 기록되어 있다.

수산연안부의 면허등기부는 등록정보가 법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갱신될 것이다. 하지만, 등록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등록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결정될 것이다. (양식법 제 18절)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공신력을 확보하게 될 지, 혹은 어떤 정보가 공신력을 가지게 될 지의 여부는 등기부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공표된 후에 평가되어야 한다. 어업위원회가(Directorate of Fisheries)이 등기부를 관리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식면허 등기부를 BRC(Bronnoysund Register Center)와 같은 중앙등기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등기부는 기존 양식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등기부를 갱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등기부에 면허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를 갱신함으로써 양식면허의 양도 및 담보와 관련된 제도의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등기부에는 면허와 관련된 채무관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양식등기부는 유류등기부와 그 기능이 유사하며 등록단위는 양식면허가 될 것이다. 면허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가 기록보관소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면허의

법률적 권리(담보율, 양도 및 법률적 제한)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갱신된다면, 이는 아주 실용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재산권등록법 (Property Rights Registration Act) 제 12절에 따라 양식등기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다. “양식면허권의 발생, 수정, 양도, 담보, 승인 및 취소”

면허등록과 관련된 법적 권리는 면허의 양도, 면허담보 시 금전적인 채무관계 및 면허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

양식면허등기부는 토지등기부 및 담보물권등기부와 마찬가지로 공개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다. 더불어 현재 양식등기부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정보의 일부는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등기부는 양식업체, 금융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도구이다.

Part III 양식법 (Act of 17 June 2005 no. 79)

6 양식업 관련법 (Act of 17 June 2005 no.79)

제 1장 목적과 범위

§ 1 목적

동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양식업의 수익성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연안지역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 2 대상 범위

양식법은 수중유기물 생산과 관련된다. 수중 유기물이라 함은 수중, 수면 혹은 해안가에 서식하는 해양 동식물을 일컫는다. 이러한 수중 생물의 중량, 크기, 개체 수, 특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양식업으로 규정한다. 양식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경우, 수산연안부가 자체 의사결정 및 규정에 의거하여 양식업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다.

양식법 제 12절과 이 법의 제 6장에서 제 8장까지는 양식업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르웨이 연안수산부는 규정에 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양식활동들이 이 법 전체 혹은 일부에 의해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양식을 목적으로 한 소하성 연어와 담수어류 생산은 연어 및 담수어 등에 관한 법 (Act of 15 May 1992 no. 47)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 3 지리적 범위

양식법의 적용범위:

- a) 육상영토 및 영해
- b) 노르웨이 경제수역 관련법 (Act of 17 December 1976 no.91)에 따른 관할지역

c) 대륙붕

이 법은 스발바르 제도 및 얀마웬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왕은 이 법의 전부 혹은 일부가 스발바르제도 및 얀마웬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양식법 적용 조항과는 차별화된 지역사정을 고려한 세부 조항도 마련할 수 있다.

제 2장 양식면허

§ 4 양식면허의 의무화

수산연안부는 제 6절과 제 7절에 따라 양식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9절에 의거하여, 양도에 의한 면허취득도 가능하다. 양식면허등기부에 면허등록절차 없이는 양식업에 종사할 없다. (제 18절 참고)

§ 5 양식업 면허의 내용

양식면허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어종의 생산을 허용하며 이 장소는 면허의 범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수산연안부는 행정적 의사결정 및 규정에 의거하여 면허의 범위 및 기간 등 면허의 내용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 6 면허할당을 위한 일반적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산연안부는 신청자에 한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 a)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 있는 양식활동
- b)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보호방안 관련 (제 15절) 요구 사항의 충족여부
- c) 제 16절에 따라 토지이용 이해관계를 고려
- d) 아래 법과 관련한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 식품생산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법 (Act of 19 December 2003 no. 124)

- *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련법 (Act of 13 March 1981 no. 6)
- * 항만 및 항로 관련법 (Act of 8 June 1984 no. 51)
- * 수로 및 지하수 관련법 (Act of 24 November 2000 no. 82)

수산연안부는 규정에 따라 면허신청의 자격요건 및 면허발급기준 등 면허할당과 관련된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7 연어, 송어 및 무지개 송어 양식면허

연어, 송어 및 무지개 송어 생산을 위한 면허할당을 위해, 연안수산부는 다음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 a) 할당 면허 수
- b) 면허의 지리적 배분
- c) 우선순위 설정 기준
- d)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 자격인 선정

e) 면허할당가격

노르웨이 국왕은 연어, 송어 및 무지개 송어 생산 적합성 관련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8 양식업관련 업무의 조정

양식법에 따른 수산당국(제 6절에 명시된 양식법)과 지방자치당국(기획 및 건설국)은 효율적이고 통합된 면허신청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산연안부는 면허신청절차의 시간제약에 대한 규정 등 신청절차의 조정 및 통합과 관련된 세부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 9 양식면허의 수정 및 취소

수산연안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양식면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a) 환경보호를 위한 면허의 수정 및 취소
- b) 실질적인 면허소유권의 변동
- c) 양식법 관련 규정에 대한 중과실의 혹은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 d) 면허가 사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경우
- e) 제 6절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한 하나 이상의 면허가 소멸되었을 경우

면허의 수정 및 취소는 시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수한 환경상황의 개선여부에 따른다.

수산연안부는 양식면허의 수정 및 취소와 관련된 세부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 3장 환경문제 고려

§ 10 환경 기준

양식어장 시설은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설치, 운영, 폐장되어야 한다. 수산연안부는 자체 의사결정과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물질 방류 금지 등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양식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 11. 환경감시체계

수산연안부는 자체 의사결정과 규정에 의거, 양식면허보유자 혹은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평가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양식어장 시설을 설치, 운영, 폐장하는 시점에 양식지역에 대한 환경 상태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2 양식어장의 설치 및 장비 의무화

양식법에 따라 양식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올바른 설계, 정확한 작동이 요구

되며, 사용자는 사용상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수산연안부는 규정에 의거하여, 양식시설의 설치, 사용 및 기능과 관련한 의무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면허제도 포함된다.

§ 13 원상회복 및 재포획 의무

양식업종사자는 수중 유기물과 양식어장시설 및 장비의 제거 등 양식업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될 경우, 해당양식지역 및 인근 지역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수산연안부는 행정적 의사결정 및 규정에 의거하여, 양식업 종사자는 방류된 어류를 재포획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수산연안부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단락과 관련된 원상회복 및 재포획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수산연안부는 과세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상회복과 재포획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규정된 세금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징수될 수 있다.

§ 14 특정지역의 보호

수산연안부는 수중 유기물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양식업을 금지하거나 양식업 활동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 4장 토지이용

§ 15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호방안과의 관계

양식면허는 아래 내용과 배치될 경우 발급이 금지될 수 있다.

a)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법(Act of 14 June 1985 no. 77)에 따라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배치될 경우

b) 자연보호관련법 (Act of 19 June 1970 no. 63)에 따라 해양환경보존방안이 확정되었을 경우

c) 문화유산보존관련법 (Act of 9 June 1978 no. 50)에 따른 해양환경보존방안이 확정되었을 경우

위와 같은 면허발급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 기획관리청 및 환경당국이 동의할 경우 면허발급은 가능하다.

§ 16 토지의 양식업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 고려

수산연안부는 양식업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a) 양식업 생산을 위한 토지이용 시 의무사항
- b) 다른 양식활동을 위한 토지이용
- c) 양식지역의 기타 이용방안
- d) 제 15절에서 제외된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관계

수산연안부는 토지이용 및 양식활동의 지역화와 관련된 세부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 17 양식지역의 이용

양식면허보유자는 양식지역에서 방류된 어종의 제거 및 재포획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수산연안부는 해수어업 관련법 (Act of 3 June 1983 no.40) 조항과 무관하게, 자체 행정적 결정 및 규정에 따라 양식지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제거 및 재포획을 규제할 수 있다.

수산연안부는 규정에 의거하여 본 양식활동에 필요할 경우 방류된 어종 외 다른 어종을 낚시하는 등 양식 지역이나 양식 인근 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 5장 양식면허의 등록, 양도 및 담보

§ 18 양식면허의 등록

양식면허는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개별면허는 등기부에 독립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법적 권리가 저널에 기록되어야 한다.

수산연안부는 등록기관, 보상제도 및 저널보관 등 등기부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재산권등록 관련법 (Act of 7 June 1935 no. 2), 제 2장, 제 3장 및 제 35절과 관련된 규칙도 양식법 조항이 허용하는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시에 적용된다.

§ 19 양식업 면허의 양도

양식업 면허는 양도 가능하다. 면허가 양도되더라도 수산당국이 양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양식업 면허 임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수산연안부는 임대 금지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기도 한다.

수산연안부는 규정에 의거하여 양식면허양도와 관련된 세부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 20 양식면허의 담보

양식면허는 담보물이 될 수 있다.

담보권은 양식등기부 면허 기록부에 기재되는 즉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양식면허의 담보를 허용하더라도 수산당국이 양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르웨이 주정부가 담보권을 확보할 경우, 이행강제금(제 28절), 실행비용의 변제(제 29절), 및 위반 시 벌금(제 30절) 등 면허에 대한 모든 채무관계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수산연안부는 규정에 의거하여 제 4절에 따른 담보액의 제한 등 면허 담보에 관한 세부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 6장 일반적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

§ 21 관리감독

노르웨이 수산연안부는 양식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관리감독기관은 양식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 22 전문성

양식법이 포괄하고 있는 양식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수산연안부는 이러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 23 체계화된 관리 방안

양식법에 따른 의무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연안부는 양식업자의 체계화된 관리방안 마련 및 실행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둘 수 있다.

§ 24 정보 공개 및 조사 의무

관리감독기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양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필요할 경우 정보, 문서, 샘플 및 기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감독기관이 양식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관리감독기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양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감독기관이 양식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수산연안부는 규정에 따라 양식업자의 정기적 의무 수행 등 정보 공개 및 조사의무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 25 협조의무

양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양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식지역, 시설 및 관련 장비를 관리감독기관에 공개함으로써 감독기관이 양식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양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관리감독 수행을 위한 양어장, 자료, 양식어류 및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 26 비용발생

연안수산부는 양식법에 따라 면허신청과정 및 관리감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발생 비용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징수될 수 있다.

제 7장 위반 시 제재

§ 27 행정조치명령 (Orders to execute measures)

양식법에 규정된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위반상황의 개선 및 종료를 위한 행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간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 28 이행강제금

양식법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은 귀책 사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도 있으며 제 27절에 따른 행정조치명령이 있을 경우 일괄적으로 혹은 차후에 부과할 수도 있다.

이행강제금은 귀책사유자가 감독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 기간을 초과할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효력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귀책사유자의 능력을 벗어난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하는 다수의 귀책사유자가 있을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징수될 수 있다.

수산연안부는 이행강제금액, 지불기한, 이행강제금의 규정 및 미지불된 이행강제금의 포기 등 세부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 29 행정조치실행

제 27절에 따른 행정명령집행 마감기한이 초과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제 27절에 따른 명령 없이도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실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정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불법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다.

관리감독기관은 행정조치실행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귀책 사유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수의 귀책 사유자가 존재할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혹은 개별적으로 발생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비용상환 청구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수산연안부는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을 포함한 행정조치 실행과 관련된 세부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 30 위반 시 벌금

관리감독기관은 양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귀책 사유자가 관련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조치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관리감독기관에 발생한 비용도 벌금 부과 시 고려대상이 된다.

벌금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수산연안부는 귀책사유자가 벌금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추가벌금 등 벌금관련 세부 조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 31 형사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양식법에 규정된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러한 위반행위는 보다 심각한 벌칙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중처벌은 위반행위가 보다 심각한 벌칙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조 및 교사 그리고 미수의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양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제 8장 부칙

§ 32 법안의 발효

양식법은 2006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 33 경과조항

어류 및 갑각류 양식 관련법 (Act of 14 June 1985 no. 68) 및 바다목장관련법 (Act of 21 December 2000 no. 118)에 따라 명시하고 있는 행정적 의사결정 및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34 식용어 양식소유권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유지

어류 및 갑각류 양식관련법(Act of 14 June 1985 no. 68)에 따른 법당국은 폐지되지만, 연어 및 송어 해수양식면허를 취득한 기업의 소유권 규제에 대한 법안(22 December 2004 no. 1800)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